

목차 CONTENTS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17
1. 추진배경	17
2. 실시 시기 및 지역	17
3. 단계별 운영 방안	17
I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9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19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20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31
III.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9
<서식 1> 성실 이행협약서	43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4
<서식 3> 상담일정 통보서	45
<서식 4>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46
<서식 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47
<서식 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48
<서식 7> 사전단계 평가표	49

제1장 참여대상자 선정

Ⅰ.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참여대상자	55
1.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저소득층)	55
1.1. 생계급여수급자	55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56
1.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7
1.4. 북한이탈주민	57
1.5. 신용회복지원자	57
1.6.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58
1.7. 위기청소년	60
1.8. 니트족(NEET)	60
1.9. 여성가장	61
1.10. 국가유공자	61
1.11.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62
1.12. 건설일용직	63
1.13. 장애인	63
1.14. FTA 피해 실직자	63
1.15. 맞춤 특기병	63
1.16. 미혼모·한부모	63
1.17. 기초연금수급자	64
2.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청·장년층)	66
2.1. 청년층(만18~34세 이하)	66

2.2.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68
II.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70
1. 참여대상자 모집 및 추천	70
1.1. 기본 방향	70
1.2. 모집 및 홍보방법	70
1.3.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절차	72
2.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	73
2.1. 개 요	73
2.2. 참가신청서 접수	73
2.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73
2.4. 참여대상자 공통기준 및 제외기준 확인	75
2.5. 관련서류 확인	83
2.6.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88
2.7.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8

제2장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I.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93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93
1.1. 의 의	93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93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94
2.1. 운영 원칙	94
2.2. 운영 기간	95

2.3. 상담내역 기록	96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96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96
3.2.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99
3.3.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104
3.4.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107
3.5. 전문심리상담서비스(EAP)와의 연계	110
3.6.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112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14
4. 참여수당 지급	115
4.1. 의 의	115
4.2. 지급대상 및 요건	115
4.3. 지급 금액	115
4.4.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117
4.5. 유의사항	119
5.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1단계 운영 특례	120
5.1. 1단계 운영 기본 원칙	120
5.2. 1단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121
<참고 1> 고용복지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128
<참고 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130
<참고 3> 과제이행 맞춤 상담	146
<참고 4> 롤모델(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151
<참고 5>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165
<참고 6> 강점진단	167
<참고 7> 심리정서상태진단·상담	174

<참고 8> 생활패턴진단·상담	186
------------------------	-----

II.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192

1. 의 의 192

2. 직업훈련과의 연계 193

2.1. 기본 원칙 193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195

2.3. 폴리텍대학 훈련 204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205

2.5.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 205

2.6. 청년취업아카데미 206

2.7.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적극 안내 207

3. 장년인턴 등 연계 207

4.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207

5. 창업 지원 연계 208

5.1. 개 요 208

5.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209

5.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209

6.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209

6.1.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의의 209

6.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210

6.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213

6.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213

6.5.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214

6.6.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214

6.7.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215

6.8.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217
7.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219
7.1. 2016년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지침 적용	219
7.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219
7.3.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219
7.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219
Ⅲ.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220
1. 3단계 연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20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220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220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220
1.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222
1.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223
1.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225
1.7. 취업알선 기간 중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급 ...	225
1.8.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226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227
1.10. 장년인턴 제도 연계	227
2.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228
2.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228
2.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228
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28
2.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236
2.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238
2.6.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	238

2.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239
3. 3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239
3.1.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239
3.2. 이월 참여자에 대한 적용	240
3.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240
3.4.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240
3.5.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	241
3.6. 취업성공수당 환수	241
3.7. 고교 재학생의 취업마감 처리	242
4.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협업을 통한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	242
4.1.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 사업	242
4.2. 청년희망재단: 청년면접비용 지원 사업	243
4.3. 향후 협업 계획	244
IV. 제4단계: 사후관리	245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45
1.1. 사후관리의 개념	245
1.2. 사후관리의 의의	245
2. 사후관리의 제공	245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	247
1. 취업지원 종료	247
1.1. 취업지원 종로의 의의	247
1.2. 취업지원 종료사유	247

1.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248
1.4. 취업지원 종료의 효과	248
1.5.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	250
2. 취업지원 중단	251
2.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251
2.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251
2.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251
2.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253
2.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254
3. 취업지원 유예	254
3.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254
3.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255
3.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256
3.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256
3.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256
4. 취업지원 이관	257
4.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257
4.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257
4.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257
4.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257
4.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258
5. 행정사항	259
V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260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260

1.1. 부정수급의 개념	260
1.2. 부정수급 유형	260
2.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조치	261
2.1. 부정수급액 반환	261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261
2.3.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261
2.4. 부정수급 규정 적용	261

3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지침

I.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265
1. 추진배경	265
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265
3. 참여대상	265
II.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266
<참고 1> 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270
<참고 2> 참여방식에 따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흐름도	274
III. 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	276

I. 민간위탁사업 기본운영 지침	281
1. 2017년 민간위탁사업 개관	281
1.1. 민간위탁 추진 규모 및 유형	281
1.2. 위탁기관 추가 선정 규모	281
1.3. 협업형 위탁사업자 선정	281
1.4. 분사무소 개소	282
1.5. 위탁사업 실시 지역 및 장소 변경	283
1.6.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284
1.7. 이월된 위탁자에 대한 지침 적용	284
2. 위탁대상자 및 위탁수수료	285
2.1. 참여자 모집	285
2.2. 참여자 배정 원칙 및 절차	285
2.3. 고용센터 역할	286
2.4.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 설정	286
2.5. 위탁사업비	287
2.6. 위탁수수료 신청	289
2.7. 위탁수수료 반환 및 회수	290
2.8.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291
II. 위탁업무 처리절차	292
1. 위탁절차 개요	292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92
2.1. 기본원칙	292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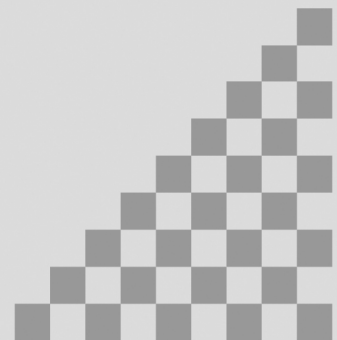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293
3.1. 기본원칙	293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293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294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96
5. 참여자 수당 지급	296
6. 취업지원 종료·이관·중단 등	296
6.1. 기본원칙	296
6.2.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297
6.3. 취업지원 이관	297
6.4. 취업지원 중단	298
7.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298
7.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298
7.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299
7.3. 위탁사업 추진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299
8.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299
8.1. 기본원칙	299
8.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청년내일참여공제 지원 대상 ..	300
8.3. 청년내일참여공제 참여 신청	301
8.4. 청년내일참여공제 자격심사 및 안내	302
8.5. 청년내일참여공제 참여기업의 신청절차	302
Ⅲ. 민간위탁기관 관리	303
1. 위탁기관(사업자) 기본 요건	303
1.1. 자격요건	303

1.2. 시설요건	304
1.3. 인적요건	306
1.4. 프로그램 요건	307
1.5.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	307
2.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308
2.1. 추진상황 모니터링	308
2.2. 위탁약정 해지	308
3.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309
 IV.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314
1. 추진 개요	314
2. 점검 추진계획 수립	315
2.1. 점검 주기	315
2.2. 점검방법	315
2.3. 점검 절차(정기점검)	315
3. 중점 점검 사항	316
4. 점검결과 조치 및 기준	316
 V. 민간위탁사업 평가	 318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I '17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목표 및 예산

- 취성패 I 유형(저소득층) : 121,000명 (97,955백만원)
- 취성패 II 유형(청년층) : 160,000명 (187,285백만원)
- 취성패 II 유형(중장년층) : 35,000명 (42,052백만원)

〈2〉 사업 추진 방향

1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가. 1단계 상담·진단 질 제고

- 상담사가 취성패 참여자의 상황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담·진단 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1단계 도구·자료 가이드 별책 배포)

* 취업 눈높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취업의욕 제고가 필요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각 상황별 상담·진단 툴 개발

- 참여자용 도구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상담자용 가이드를 같이 개발하고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상담사 교육 실시

- 청·중장년층의 프로파일링을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취업역량평가 지표 개선 추진('17.上 연구용역)

*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청·중장년층 특성에 맞는 프로파일링 설문문항 개발, 크림 스키밍의 측정 및 예방하기 위한 취업역량평가 지표 개선 등

나. 훈련·일경험 등 2단계 프로그램 연계 다양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년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1~3단계와 연계

* (사업 구분에 따른 연계 단계 예시) ①취업상담 → 1·2단계, [②직업교육·훈련, ③일경험, ④창업지원] → 2단계, [⑤고용보조금, ⑥재정지원직접일자리] → 3단계

- 일경험, 해외취업(청년희망재단 등), 창업지원(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분야도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연계

○ 청년에 대해서는 현재 내일배움카드 등 일부 과정에만 지급하는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당 미지원 훈련과정에 28.4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참여수당 지급

다. 취업알선 등 3단계·사후관리 내실화

○ 인천시 협업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취성패 3단계 및 사후관리 시 **취업지원비용 지원** 추진

○ 워크넷 뿐 아니라 **자체적인 알선 취업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기관평가 시 반영
(現 취업알선 가점 : 워크넷 3점, 자체알선 1.5점)

②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가. 역량있는 신규기관의 진입 확대 및 선발의 공정성 제고

○ '16년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기관 중 역량미흡 기관에 대해 사업참여 배제**

* '17년 참여제한 기관 11개소

○ 위탁기관 평가등급 상위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선발하되, 하위기관 및 신규 신청기관은 PT심사 등 심층적 평가 통해 선발

-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선발 후 **인적·물적요건 완비까지 유예기간 ('17.3.31 한)을 부여**하여 신규기관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선정단계에서 균질화된 심사 및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지청을 묶어서 공동심사(현행 지청별 심사) 및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대학·지자체 내 분사무소의 **인적·시설 요건을 강화**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연간 분사무소 **설치 계획서**를 미리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

* 상주하는 업무 전담자 1인 이상 배치(인적요건), 대학 내 분사무소의 경우도 전용면적 15㎡ 이상 사무실 확보(시설요건)

나. 성과지향 사업 관리 체계 구축

- 성과금 지급기준을 근속인센티브 체계에서 **임금에 연동한 인센티브 체계**로 개편하여 보다 좋은 일자리로 취업연계 유도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단가 개편 내용 >

현행				개편				
구분	나은 일자리 (1개월)	근속인센티브		구분	임금 연동 인센티브			
		3개월	6개월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취업	30	30	40	6월이내취업	60	80	100	150
12월이내취업	30	20	30	12월이내취업	40	60	80	130
15월이내취업	30	10	20	15월이내취업	20	40	60	100

- 취업성공패키지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검토품의 **위탁단가**(기본금, 성공금) **합리적 조정안 마련**(‘18년 예산에 반영)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익성 분석 및 적정 위탁단가 분석」 진행 중

- 위탁기관 자체 모집인원은 해당 위탁기관에 **배정**하되,
 - 고용센터 모집인원은 위탁기관 기관평가 등급, 위탁기관 위치, 전담상담사 수 등 기본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여 **배정의 공정성 제고**

다. 크립 스키밍 방지

- 기본금을 서비스 기간과 연동하여 2회 분할 지급하여 기본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참여자를 선별적으로 모집하는 행위 방지
 - * (현재) IAP 수립시 기본금 40만원 전액 지급 → (개편) IAP 수립시 1회차 30만원 지급, 초기상담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참여자에 대한 2회차 10만원 지급
- 의료, 간호, 약학분야와 같이 대학 입학과 동시 취업진로가 결정되는 일부 학과 재학생의 경우 취성패 참여를 제한
 - * 단, 졸업 예정년도 1.1일(또는 7.1) 부터는 참여 허용
- 취업역량평가에 대한 연구용역('17.上)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역량평가 시 위탁 기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문항 및 방식 개선('17.下)
 - * 개선방안(안) : 상담사 재량점수 축소(現 10점), 참여자가 평가결과를 직접 입력(現 상담사 입력) 등
- 위탁기관이 역량이 우수한 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 중 취업역량평가 점수 58점 이하 참여자의 최소비율(30%) 설정
 -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18년도 위탁기관 선정시 '17년도 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PT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③ 상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가. 상담사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 위탁기관 선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상담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 등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상담인력 처우개선 계획 실천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추진 및 기관평가 반영
 - * 인적자원투자계획 심사(총 20점 : 임금지급수준 12점, 교육투자 6점, 처우개선계획 2점)
- 상담인력 교육관련 관련 연구(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설계, '16.9월) 결과를 토대로 분야·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계

- 아울러, 한고원과 협의를 통해 **교육인원을 최대한 확대**

* 現 수준·분야 구분없이 1개 과정만 운영 → 改 분야·수준별 과정 차등(예시, 위탁기관 상담원 심화·전문가 과정 개설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교육체계 >

수준 \ 분야	고 용 센 터		위 탁 기 관
	I 유형 담당자	위탁기관 담당자	II 유형 담당자
신규담당자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이해, 각 담당 분야 특성파악 등		
2~3년차	상담·진단역량, 취업지원역량, 사례관리 이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탁기관 점검·관리 방안	청·중장년 대상자 이해, 상담·진단역량, 취업지원역량 등
4~5년차	복합애로 해결법, 홍보전략, 노동시장 이해, case study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노동시장 이해, 홍보 전략, case study 등	훈련·인턴 등 연계, 노동시장 이해, 홍보전략, case study 등
팀장급	조직관리 등 리더십 과정, 성과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심		

나. 전문성 제고 분위기 조성

○ 취업성공패키지 우수 상담사례가 다른 상담사에게 전파되고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가칭)취업성공패키지 사례관리 컨퍼런스*」 개최

* (주요내용) 유형별(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단계별(1·2·3단계) 분과를 구분하여 우수사례 공유, (추진전략) 한고원 및 직업상담 관련 학회 등과 공동 추진하여 발표된 사례가 학술적인 강평을 겸할 수 있도록 진행

○ 우수 사례에 대해선 담당 상담사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병행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

II

대상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요

구 분	사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후 관리
생 계 급 여 수 급 자 (패 키 지 I)	고용센터 접근성 높은 지역	취업가능자	최소 2주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6주+예외적 4주 연장 단기문제해결·롤모델상담 직업·심리검사 (자존감·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척도, 일반정신건강척도 등) EAP 연계 강화 취업애로요인 (양육, 돌봄, 주거, 건강 등)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 센터·자치단체 사례관리 회의 - 취업애로요인별 특화 프로 파일링 실시 집단상담프로그램 원칙 취업애로요인 해소방안 포함 IAP 수립	6개월+2개월 내일배움카드 우선 발급 청·장년 인턴 우선 연계 일학습 병행제 지원 확대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3개월 알선 서비스 연장 지원 동행면접 원칙 구직기술·이력서 컨설팅 모의면접 강화 지역일자리센터 연계 구인 발굴 지역내 틈새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인 1조 밀착관리 → 주1회 대면상담 필수(1단계),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과 MOU 등 지청(센터)별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 민간자원(종교단체, 기타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탐색 및 연계 ▲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1단계 기간 연장(4주) 및 참여 유예 활성화			
		근로능력 미약자 → 자치단체 이관(자활근로 배치)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 → 취업가능자 프로세스 동일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직접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고용센터 접근성 낮은 지역 사전단계 미실시	자치단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전담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기초훈련 상담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 일자리 인턴지원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알선 동행면접 실시
	고용센터	1단계 서비스 현황 공유 집단상담 지원 수당지급, 행정 업무 지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알선 및 동행면접 지원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일 저 소 득 중 특 정 계 층 (패 키 지 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청·장년인턴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동행면접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중·장년 (패 키 지 I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장년인턴,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청년 (청년 취업성공 패 키 지)	자가진단 취업지원 유형에 대해 자가진단 (On-Off line)	1주(상담 2회이상)~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청년인턴, 해외취업, 창업지원	3개월+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III

'16년 대비 '17년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분		'16년	'17년
공통사항(Ⅰ·Ⅱ 유형 모두 적용)			
참여연령		▪ 64세 이하	▪ 69세 이하('16. 11. 21부터 기 시행)
참여대상		▪ 맞춤형특기병 - 만17~24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의 비진학자	▪ 맞춤형특기병 대상 확대 - 만18~24세의 고졸 이하자 (대학중퇴자 포함), 폴리텍 · 학점은행 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 (재학, 졸업생) 중 비진학자
1 단 계	취업 역량 평가	▪ IAP수립 직전 실시	▪ <u>초기상담일 실시</u>
	운영 기간	▪ 최장 2개월 이내	▪ 최장 2개월 이내 다만, 성실한 참여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상담진행 필요시 상담자 재량으로 2개월 이상 운영 가능
	프로 그램	▪ 단기집단,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 단기집단,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 중소기업탐방,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도 1단계에서 운영가능하고 참여수당도 지급 ▪ 1단계 도구 · 자료 가이드북 배포(별책)
2 단 계	운영 기간	▪ 최장 8개월(훈련은 6개월)내 2단계 운영 - 운영기간 도과시 취성패 중단 후 해당 프로그램 수강	▪ 청년층(만 34세 미만), 장년층(만 65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 2단계 기간 탄력적 적용 -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 그램(훈련, 일경험 등)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가능
	인정 프로 그램	▪ 고용부 인증 훈련기관의 미인정 훈련과정, 자비부담 학원 수강 등은 2단계 프로그램에 미포함	▪ 2단계 인정 프로그램 확대 - 중앙부처 ·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고용부 인증 훈련기관의 미인정 훈련과정, 자비부담 학원 수강 포함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은 모두 2단계 과정으로 인정
	훈련 참여 수당 (만 34세 미만 해당)	▪ 내일배움카드 훈련 중심 지급 - 인증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직종 계좌적합훈련 참여자만 지원(비인정 과정 훈련생 지원불가) ▪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생 훈련참여지원 수당 미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범위 확대 - 인증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직종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직업훈련(미인정 훈련과정) 참여자에게 훈련참여수당 지급 * 최대 284,000원 6개월 한도 ▪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생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예정(최대 116,000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별도지침 송부 예정

구분		'16년					'17년									
2 단 계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자비 부담	▪ I 유형: 면제 ▪ II 유형: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0~30%					▪ I 유형: 최대 10% (직종별 취업률 35% 이상 과정) ▪ II 유형: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5~50%									
		구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별 지원				구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별 지원								
			취업률 70~100%	취업률 69~50%	취업률 49~35%	취업률 35% 미만		취업률 70% 이상	취업률 70~55% 이상	취업률 55~45% 이상	취업률 44~35% 이상	취업률 35% 미만				
		일반 실업자	80%	70%	60%	50%	일반 실업자	95%~90%		70%	50%	20%				
		II 유형	90%	85%	80%	70%	II 유형			80%	70%	50%				
I 유형	100%				I 유형	100%			90%							
3 단 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취성패 참여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 2년 근속시 1,200만원 + a의 자산형성 지원									
	고용 촉진 지원금	▪ 취성패 참여자가 취업시 모두 적용					▪ I 유형 참여자에 대해서만 적용 * II 유형 참여자는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 다만, '16년도 II유형 참여자 중 '17.6.30까지 취업한 경우 '17년 지침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구직 활동 지원						▪ 청년희망재단 및 인천시 등 지자체 협업을 통한 구직활동지원 추진 * 광역교통비, 숙박비, 정장대여, 사진촬영 등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물량/ 예산		145,000명 / 133,040백만원					121,000명 / 97,955백만원									
가구원 중위 소득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중위 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 인정액 (B= A×0.6)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08	소득 인정액 (B= A×0.6)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B× 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보험료 (B× 0.0306)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 (예 : 8인가구: 7,773,241원)									

구분	'16년	'17년
참여 대상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참여 제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참여 허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 청소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화물자운전자, ②덤프트럭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택배·퀵서비스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확대 ⑦신용카드모집인, ⑧대리운전원, ⑨대출 모집인
		만65세~69세 장년층 중 기초연금수급자 추가
	장애인은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진행 - 다만,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전단계 진행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패키지 부적응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즉시 재참여 기회 부여	운영 폐지
취업 성공 수당	- 전체 100만원 * 1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	- 전체 150만원 * <u>3개월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u>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청년)		
물량/예산	150,000명 / 163,105백만원	160,000명 / 187,288백만원
참여 대상	마지막 학년 재학생 모두 참여	- 마지막학년 재학생 중 ①약학, ②간호, ③의료 분야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예정 연도 1.1(또는 7.1) 부터 참여허용 -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 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구분		'16년							'17년								
중 · 장년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중 · 장년)																	
물량/ 예산		45,000명 / 49,840백만원							35,000명 / 42,052백만원								
가구원 중위 소득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중위 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 인정액 (B= A×1)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 인정액 (B= A×1)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B× 0.0306)	49,720	84,659	109,518	134,378	159,238	184,098	208,958	보험료 (B× 0.0306)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 8인가구: 7,773,241원)								
참여 대상									▪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포함 -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제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의 실직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								
전달체계 : 민간위탁사업																	
공모 방식		▪ 평가등급 우수기관 자동계약연장							▪ 모든 위탁기관 신규 공모 * 단, 위탁기관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은 PT심사 면제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사								
위탁 기간		▪ 2016.1.1. ~ 2016.12.31							▪ 2017.2.1. ~ 2018. 1. 31								
위탁 기관 선정	심사 방식	▪ 지청별 심사위원회 운영							▪ 권역별(2~3개 지청 단위)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기준 변경	▪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연계, 협력 가능성 (20점)							▪ 상당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교육투자 계획 심사(20점) * 임금지급수준 12점, 교육투자 6점, 처우개선 계획 2점								

구분		'16년	'17년																																																				
위탁사업비	기본금	▪ IAP수립 후 40만원 일괄 지급	▪ <u>서비스 기간에 따라 2회 분할 지급</u> - IAP 수립시 <u>1회차 기본금 30만원</u> , 초기 상담일 이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도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u>6개월 시점에서 2회차 기본금 나머지 10만원 지급</u> (총 40만원 한도)																																																				
	취업인센티브	▪ 조기취업, 근속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취업인센티브</th></tr><tr><th>소계</th><th>나은일자리 인센티브</th><th colspan="2">근속인센티브</th></tr><tr><th></th><th></th><th></th><th>3개월</th><th>6개월</th></tr><tr><td>6월이내* 취업</td><td>100</td><td>30</td><td>30</td><td>40</td></tr><tr><td>12월 이내* 취업</td><td>80</td><td>30</td><td>20</td><td>30</td></tr><tr><td>15월 이내* 취업</td><td>60</td><td>30</td><td>10</td><td>20</td></tr></table> * 초기상담일 기준	구분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6월이내* 취업	100	30	30	40	12월 이내* 취업	80	30	20	30	15월 이내* 취업	60	30	10	20	▪ 조기취업, <u>임금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u>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취업인센티브</th></tr><tr><th>~140 미만</th><th>~180 미만</th><th>~230 미만</th><th>230이상 ~</th></tr><tr><td>6월이내* 취업</td><td>60</td><td>80</td><td>100</td><td>150</td></tr><tr><td>12월이내* 취업</td><td>40</td><td>60</td><td>80</td><td>130</td></tr><tr><td>15월이내* 취업</td><td>20</td><td>40</td><td>60</td><td>100</td></tr></table> * 초기상담일 기준, 3개월 근속시 지급	구분	취업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이상 ~	6월이내* 취업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20	40	60
구분	취업인센티브																																																						
	소계	나은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3개월	6개월																																																			
6월이내* 취업	100	30	30	40																																																			
12월 이내* 취업	80	30	20	30																																																			
15월 이내* 취업	60	30	10	20																																																			
구분	취업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이상 ~																																																			
6월이내* 취업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20	40	60	100																																																			
위탁기관 운영	사업영역	▪ 관할 고용센터 내	▪ <u>관할 고용노동지청</u> 내																																																				
	분사무소 설치	▪ 연중 설치 가능 - 단,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승인 필요	▪ <u>분사무소 설치 시기 설정</u> - 2017년 공모신청서를 제출시 <u>분사무소 설치계획 제출</u> → 설치 희망 고용센터의 사전승인 후 설치 (<u>상반기 중 설치완료</u>)																																																				
	대학내 분사무소	▪ 시설 규정 없음	▪ <u>전용면적 15㎡ 이상 사무실 확보</u> - 다만,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과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은 시설요건 적용제외																																																				
	업무전담자 겸직	▪ 주사무소 · 분사무소 간 겸직 가능	▪ <u>주사무소 · 분사무소 간 겸직 불가</u> - 분사무소의 경우도 <u>업무전담자 1인 이상 배치 필수</u>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없음	▪ <u>(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자에 대한 가입지원, 적립금 관리 등 운영지원</u> * 내일채움공제 관리에 따라 1인당 1회차 당 위탁비 6만원 지원(최대 5회, 총 30만원)																																																				
지도점검 방법		▪ 위탁대상자의 일부(5% 내외 무작위 표본추출)를 선정하여 Spot Check하는 방식으로 실시	▪ 위탁대상자의 일부(<u>3% 내외</u> 무작위 표본추출)를 선정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																																																				
취성패 별칭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u>취업성공패키지 별칭 · 로고 공동사용</u> (2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2. 실시 시기 및 지역

- '14.5월부터 전국 85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
-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 중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에도 '15.7월부터 사전단계 적용
- * 고용센터(출장센터 제외)가 설치된 전체 지역(광역시의 경우 관할 '구'를 모두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용센터 소재 시·군에서 시행)

3. 단계별 운영 방안

-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우선 의뢰 대상)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는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
 -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대상에서 제외
단, 조건부과제외 사유 및 조건제시 유예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실시
- 개인·가구 여건 등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는 데 있어 예외사유 불인정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 사전단계를 2주(초기상담일 기준)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초기상담,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자활경로 설정
 - * 참여자의 기초 여건 진단,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자활경로 설정
- ▲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1단계 2주 진행
-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단계 특화 프로그램 6주 제공, 예외적 4주 연장가능
- ▲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애로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 후 지자체 재의뢰 시 재의뢰사유, 그간의 상담이력, 진단회의 결과 등을 함께 지자체로 송부
 - * 지자체는 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I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자치단체 기초 상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시 서비스 진행 내용, 사전단계 불참 시 제재사항, 사전단계 종료 후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내용(개인·가구여건 파악, 그간 자활사업 참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공유
- (고용센터 우선 의뢰)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후 고용센터 의뢰 실시
 - * 우선 의뢰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활역량평가 불필요
 - ** 행복e음 시스템 상에는 자활역량평가란에 “0”점 처리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가급적 고용센터 오리엔테이션 당일 수급자와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고용센터 의뢰자 조건 이행 여부 처리 방안

(Q) 자치단체의 고용센터 의뢰일(전산의뢰)과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일 간의 차이(gap)가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처리 방법은?

- * (예시) 4월 25일에 지자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가 5월 6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4월 생계급여 처리 방안

(A) 원칙적으로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조건이행 여부 판단 후 생계급여 지급 처리

- 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등 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조건이행으로 처리

②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거나, 연락 두절로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용센터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철저히 업무 전산망에 입력·관리

* 오리엔테이션 참여 시점마다 업무 전산망에 입력하되, 매월말(늦어도 익월 5일까지) 해당 월 참여자에 대한 일제 정리 필수

○ **(의뢰 취소)** 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였으나, 실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의뢰취소’로 처리

- 고용센터는 2회 이상 사전단계 참석 요청 통보 후, 미참여자에 대해 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산망 상 참여자 ‘보류’에 등재한 이후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게 의뢰취소 요청자 정보 공유 필수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 토대로 행복e음 전산에서 의뢰취소 처리

- 의뢰취소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의뢰한 것으로 보되, 실제 사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는 ‘의뢰취소자’의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뢰취소 결과에 따라 조건불이행 처리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① 사전단계 운영 원칙

○ **(운영 기간)** 원칙적으로 초기상담일 이후 2주간 운영

- 초기상담일 이후 2주 내에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 완료

* 사전단계 운영 기간 산정에 오리엔테이션일은 포함되지 않음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이후 「초기상담」,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필수

* 오리엔테이션 포함 최소 3회 서비스 제공 필수

①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을 통해 1차 자활경로 설정

- i)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ii)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② 1차 자활경로 설정 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상담*(직업 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참여자의 개인·가구 여건 등에 따라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검사(S형)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

- 사전단계 상담·서비스는 3~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는 사전단계 상담내용·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사전단계 진행 상황 등 공유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도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기초상담 내용 및 서비스 진행 관련 의견 제시, 고용센터와 공유

②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결과에 따라 1차 자활경로 설정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 의사가 있는 자는 취업준비도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즉시 취업성공패키지 배치자 판단 기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가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이 미비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기초 여건 진단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참고

기초 여건 진단 평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파악
- 기초 여건 진단표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기초 여건을 진단하여, 평가점수가 18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 기초 여건 진단표 >

항 목	양 호	의 심	부 족
1. 수리능력	3	2	1
2. 인지능력	3	2	1
3. 대인관계	3	2	1
4. 의사소통·표현능력	3	2	1
5. 외모·위생	3	2	1
6. 문해력	3	2	1
7. 일상생활 능력	3	2	1
8. 사회생활 능력	3	2	1
9. 감정·정서표출	3	2	1

기초 여건 진단 평가 점수

점

- (최종 자활경로 설정)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 검사 상담(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 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취업준비도 평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최종 상담을 실시하면서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가 취업준비도 평가 실시

* 취업준비도 평가는 '구직욕구(45점)', '건강상태(30점)', '가구여건(25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 활용

-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아래의 기준을 적절히 활용
- 평가 점수 활용법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가능자로 평가 가능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3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밀착 사례 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평가 가능
 - * 다만, ① 건강상태 항목 점수가 12점 이하인 경우 또는 ② 가구여건 항목 점수가 5점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참고

취업준비도 평가 지표

① 구직욕구 : 45점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는 것 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2.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3.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4.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1	2	3	4	5
5. 취업관련 행사나 채용박람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6.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취업하겠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② 건강상태 : 30점

항 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2	4	6	8	10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2	4	6	8	10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2	4	6	8	10

③ 가구여건 : 25점

세부기준	평가점수
1. 취업애로요인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5
2. 취업애로요인이 있으나 개선을 통하여 6개월 내 취업이 가능한 사람	15
3. 취업애로요인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5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합계	점

■ 취업준비도 평가 시 유의 사항

- 취업준비도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 경로 설정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파일링 기준 등에 활용되므로 가급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구직욕구 항목) 전담자가 직접 참여자를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상태 항목)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평가 시 알콜(약물) 중독, 우울증, 심리불안, 감정 조절 장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 필요시 기초 여건 진단 평가 도구 활용
- (가구여건 항목)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가구여건이 단기간(6개월)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애로요인 개선 여부 판단
 - * 주요 취업애로요인 : 가구원의 질병 · 부상, 양육 · 부양 등으로 인하여 보육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 **(진단회의 등을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진단회의 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도 참석

■ 진단 회의 절차

○ 개최 시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7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구성

- 고용센터소장(취업성공패키지과장)(위원장),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 * 직제상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과장이 없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지, 참여기간 중 제공한 서비스 내용, 상담 내용, 취업애로요인 해소사항, 직업선호도검사 해석결과 등을 진단회의에 제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의견,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센터내 사례관리협의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활경로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진단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같음

- **(최종 자활경로 설정 결과)** ① 취업가능자, ②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③ 자치단체 이관자의 3가지 유형으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①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 사전단계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서비스를 생계급여수급자가 사전단계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③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애로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자치단체 이관자 사유는 ①취업의사 없음, ②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가구여건, ④기타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사유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입력

- (결과 입력) 자활경로 설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영

* 종합의견란에 판정결과, 이관 사유, 필요한 서비스, 기타 의견 등을 상세하게 입력 (고용센터 담당자 및 자치단체 담당자 공동 기재)

** 자활경로 설정 결과 통보 시 판단에 활용된 자료(취업준비도 평가표, 서비스 제공내역 등) 및 그간의 상담이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

3] 사전단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3-1. 오리엔테이션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자치단체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목적과 참여자 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간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시 '내일을 위한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는 재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도 재작성 불필요)
- 향후 추진일정,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내용 등 설명

3-2. '사전단계' 서비스 참여 통지

- 오리엔테이션 당일 최초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
 - 오리엔테이션 실시 당일 1차 상담일정 통보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최초 상담(초기상담)은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
- 상담완료 후에는 다음 상담일을 정하고, 상담일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제공
- 지정된 일자에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촉구 통보서를 발송
- 통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환수)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울러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 안내

※ (문자 메시지 예시) 000님 고용센터의 11/15일 상담 불참에 따른 1차 통보서 발송
 - 11/30까지 상담(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홍길동

- 1회차 불참시에는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참여자 방문 또는 면담 실시 요청
- 참여자가 상담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사실을 기록하여 참여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매 상담일에 불출석한 경우 기록)

③-3. 초기상담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가족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애로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3-4.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 초기상담 이후, 2회차 심층상담(1회 60분 이상)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의욕·역량 및 취업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등을 중점 파악
- 심층상담(2회차 상담)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진단하여 1차 자활경로 설정 가능
 -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 2회차 심층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 사전단계 기간 동안 추가 상담 가능(상담 횟수 및 시간 별도 제한 없음)

3-5.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를 활용한 상담 실시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취업의욕 및 동기 제고를 위한 상담 제공
 - * 직업선호도검사(S형)는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20분 소요)
 - ↳ 직업흥미 육각형의 모형이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흥미육각형 모형의 모양이 일관도와 변별도가 높을수록 안정된 진로선택 및 직무적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가능
-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강점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상담 진행

4 서비스 중단 및 참여 제한, 수당 지급

4-1. 중단

-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통지 및 자치단체 이관
 - ①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상담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②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중단조치 할 수 있음을 통지한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단 처리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됨과 아울러 중단 처리시 수급권 중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중단 처리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건 불이행으로 보아 급여 중지 처리(근거자료는 고용센터 서비스 중단 통지로 같음)
- 중단 처리시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긴밀히 협의
 - * 중단 처리 시 자치단체에 중단 사실 통보와 함께 그 간의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이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단체와 공유

4-2. 취업 종료

- 사전단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종료 처리
- 취업으로 종료된 자는 취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사전단계 재참여 제한. 단, 취업 후 1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는 재참여 허용

4-3. 참여제한

- 자치단체 이관자·중단자는 이관일·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센터로 재의뢰 금지
 - 다만, 취업애로요인이 해소되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협의 후 참여 조치 가능

4-4.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 사전단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 사전단계 운영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포함)이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석한 날도 수당지급일수에 포함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자도 참여수당 지급
- 참여수당은 사전단계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단계 서비스 종료 후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중도탈락자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4-5.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수립일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5 사업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부·복지부) 매월 고용센터 의뢰 현황(조건부수급자 규모 대비 의뢰율 현황 등) 및 지자체 재의뢰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및 지자체 자활사업 참여 실적 등을 토대로 정기 점검회의 개최
 -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 지속
 - (지자체) 개별 수급자에 대해 고용센터 의뢰현황, 기존 자활사업 참여 유형, 지자체 재의뢰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 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복지부 보고, 복지부는 고용부와 추진실적 공유·공동 관리

- (고용센터)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상담 이력 등 사전단계 진행 현황을 해당 지자체와 공유,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에 대한 집중 취업지원 실시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① 추진배경

-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상황
-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중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직접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 완결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

② 운영 지역 : 9개 시군(사전단계 미실시 지역 중 자립상담사 배치지역)

- 강원권(철원군), 경남권(합천군), 경북권(청도군), 전북권(임실군), 충남권(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충북권(영동군)

※ 수요파악을 통해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접 운영지역 확대 추진(3월 중 실시 예정)

③ 세부 운영방안

- ❖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서비스 제공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우선 전담
 - * 전담 업무량을 감안, 고유업무(자활역량평가 및 자활경로 설정 등) 조정
- ❖ 수당 지급,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행정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지원

- (대상자 발굴) 생계급여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취업대상자 발굴 및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II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계

- (자립지원 상담사) 생계급여수급자 등 해당 참여자의 신청서 접수(관할 고용센터로 Fax 등으로 송부), 구직표 전산등록, 일정안내 등

- (고용센터 담당자) 신청서 접수 → 전산 등록 후 배정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주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단계: 상담)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전담 제공 및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진행

* (고용센터 담당자)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단계별 상담도구 등 운영 노하우 공유(직업심리검사 결과 접수 및 해석 등), 집단 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취업수당 지급

- (2단계: 훈련) 기초 훈련 상담, 고용센터 직업훈련과 연계 및 자치 단체 실시 훈련 · 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지원

* (고용센터 담당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안내 및 카드 발급, 훈련 성실참여에 대한 월별 과정 관리(유선 및 출석상담) 등

- (3단계: 취업알선)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고용센터 담당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만남의 날 등 정보 제공,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 단계별·담당자별 세부 내용 〉

구분	근무지원 시·군(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단계 상담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제공 ·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중심	· 1단계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 집단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2단계 훈련	· 기초적인 훈련 상담은 자치단체에서 수행 후, 고용센터 연계 ·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의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실시
3단계 알선	· 워크넷 및 지역일자리지원센터등과 연계한 취업알선(동행 면접 지원) 및 사후관리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지원

○ 기타사항

- 자활대상자 불이행 통보 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중단처리 절차 준수 및 지자체에 불이행 관련 문서 통보는 고용센터에서 수행

- 세부 전산 활용방법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구별 조건부 수급자 수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방안 조정 가능

- 기타 기본적인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매뉴얼 준용

참고1

취성패 사전단계 실시지역 및 자립상담사 취성패 운영 지역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서울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	서초구
	서울강남	강남구
	서울동부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울서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강서	강서구
	서울북부	노원구, 성북구, 종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인천	인천	남동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인천북부	계양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경기	부천	부천시
	김포	김포시
	의정부	의정부시
	구리	구리시
	남양주	남양주시
	동두천	동두천시
	고양	고양시
	파주	파주시
	수원	수원시
	용인	용인시
	화성	화성시
	성남	성남시
	경기광주	광주시
	이천	이천시
	안양	안양시
	광명	광명시
	안산	안산시
	시흥	시흥시
	평택	평택시
	오산	오산시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강원	춘천	춘천시
	강릉	강릉시
	속초	속초시
	원주	원주시
	태백	태백시
	삼척	삼척시
	영월	영월군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연제구
	부산동부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경남 울산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 (구.마산시)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김해	김해시
	밀양출장	밀양시
	양산	양산시
	진주	진주시
	통영	통영시
	거제	거제시
대구 경북	대구	수성구, 중구
	대구강북	북구
	대구동부	동구
	경산	경산시
	대구서부	서구, 달서구, 남구
	대구달성	달성군
	칠곡	칠곡군
	포항	포항시
	경주	경주시
	구미	구미시
	김천	김천시
	영주	영주시
	문경	문경시
	안동	안동시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광주 전북 전남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광산	광산구
	전주	전주시
	정읍	정읍시
	남원	남원시 (17년)
	익산	익산시
	김제	김제시
	군산	군산시
	목포	목포시, 무안군
	해남	해남군
	순천	순천시
	여수	여수시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공주	공주시
	세종	세종시 (17년)
	청주	청주시 (구.청원군 포함)
	천안	천안시
	충주	충주시
	제천	제천시
	음성	음성군
	보령	보령시
	서산	서산시
	87개 고용센터	134개 시군구

참고2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통보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활근로 참여기간 기준 통보

1. 2016년 자활지침에 따르면 '1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활근로 참여 기간 기준을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적일자리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보건복지콜센터장, 중앙자활센터원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립지원과장 2015. 11. 3.

협조자

시행 자립지원과-792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3079 팩스번호 044-202-3950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 기준

1. (공통) 원칙적으로 최대 36개월, 자활근로 유형 변경 시 최대 60개월 참여 가능

<유형변경 산정 방법>

- ◆ 유형변경은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상호 간 유형이 변경된**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형인 A 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인 B사업단으로 이동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동일한 사업단(A)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단(A)이 매출액 증대로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가 인턴도우미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 **인턴도우미 형 간의 이동은 유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상호 간 이동은 인턴도우미 형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유형변경이 아님

2. (공통)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최대 참여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다만, 최대 참여기간 종료 후 통장 가입기간 미도래로 지속 참여하는 경우에도 통장 종료해지 하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종료

<통장 가입자의 자활근로 참여기간 산정 예시>

- ◆ A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13.10월부터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음. 이 경우 A씨는 '16.10월까지 통장유지와 함께 자활근로 참여 가능하며, 통장 만료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자활근로 종료됨
- ◆ B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내일키움통장 만료기간이 2년이 남아 '16년에도 자활근로 참여. 그러나 '16년 자활근로 참여도중 개인사정으로 통장 해지. 이 경우 B씨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하게 됨

3.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 참여**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 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인해 **지자체로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 기간 재산정**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로 취성패 사전단계로 의뢰하게 되는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 의뢰
 - * 참여기간 종료된 경우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4.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 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역량평가 재 실시**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 재배치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참여기간 관리
 - (유형 다변화)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기능 다변화) 인천 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III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 ◆ 취업가능자는 일반 저소득층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한 자 등은 **밀착 사례 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① 생계급여수급자 전담반 운영

- 생계급여수급자 밀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연간 관리인원 상한을 100명(신규참여자 기준)으로 제한
- 사전단계 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본단계까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의 효율성 및 수용성 제고

② 생계급여수급자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특화 서비스 제공

<1> 운 영

- 수급자 1인에 대해 **고용센터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총괄담당은 고용센터)
 - 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 사전단계 → 본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고용분야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원이 제공,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등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서비스는 자치단체 담당자와 역할분담
 -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시군구 사회복지서비스, 자치단체 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계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참여자가 취성패 진행 중 단기적 취업애로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분류하여 특화 프로그램 제공 가능

<2> 단계별 서비스

□ 1단계 : 고용·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취업지원계획 수립

- (운영원칙) 1단계는 개인의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단기문제해결상담, 롤모델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상담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 (운영기간) 최소 6주 ~ 최장 10주까지 운영가능
 - 주 1회 이상 대면상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가구여건 등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1단계 중 참여 유예 가능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 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 (고용센터+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 그간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 참여 이력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로를 파악하여 복합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상담내역 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전산 입력
- (1단계 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 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2단계 : 직업능력개발 및 직장적응력 증진

- 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훈련 뿐 아니라 자치단체 및 타부처 훈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청·장년 인턴 연계 활성화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알선시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 지원 가능
 - * 취업알선 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3>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청(센터)별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 기관과 MOU 체결 등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
 - * 종교단체, 기타 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민간자원 탐색 및 연계 활성화
-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구인 발굴 및 지역 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 복지 네트워크 예시(부산시)

- (건강)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건강센터,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의료) 이랜드 복지재단, 부산의료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 (아동 양육·학습)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 센터
- (청소년 자녀지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방송통신고 등
- (신용회복 관련) 광역자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사, 생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등

참고

2인1조 밀착관리 서비스 가이드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 의뢰	- 고용센터 우선 의뢰자 기초상담 자료 공유 - 우선의뢰 예외자 사유 및 현황 공동 관리	- 생계급여수급자 초기상담(개인·가구여건 파악 / 자활사업 참여 이력 / 복지서비스 수혜 등) - 취업가능자 및 애로요인자 등 고용센터 우선 의뢰
	- 고용센터 OT 참여 공동연락 체계 → OT 불참자, 연락두절자 등 공동 관리 (고용센터) OT불참자 참여 통지 → (자치단체) 불성실 참여자 조건 불이행 및 급여중지 조치	
사전단계	- 초기상담 : 자치단체 초기상담자료 활용 - 심층상담 통해 취업가능자 및 자치단체 초기 이관자 일차적 판단 - 직업심리-선호도 검사 실시 -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의뢰 현황 등 공유 - 생활문제 파악 및 취업가능성 진단	- 고용센터 상담내용 공유 및 일차적 판단 의견 제시 - 참여자 애로요인별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 이행특례 등 자립지원 제도 안내(영상) - 자치단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및 지속 관리
	2주내 1) 취업가능자 / 2)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 3) 근로미약자(자치단체 이관) 구분 - 고용센터 전담자 및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협의 판정에 기초하여 결정	
패키지 <1단계>	-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EAP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취업애로요인 진단(개인 및 가구진단)	- 복지요구 진단 및 설계 -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복지 자원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등 연계 협업)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주1회 이상 대면상담(센터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필수 제공 - 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센터 전담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 EAP 상담사) 및 IAP 수립	
<2단계>	- 카드발급 / 훈련참여 - 월 1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 -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패키지 참여 유예 적용 - 애로요인 해소 관련 자치단체 연계 - 민간사회복지자원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자치단체 및 민간 훈련 발굴·협업 - 고용센터 대면상담 지원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패키지 진행 중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자 및 참여 유예자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적극 연계
<3단계>	- 생계급여수급자 알선강화(동행면접 원칙) - 구직기술 및 이력서 컨설팅 - 구인발굴 - 모의면접 - 지역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 탈수급 현황 관리 확인	- 지역일자리센터 연계한 알선 적극 지원 - 필요시 생계급여수급자 직접 알선 지원 - 구인발굴 - 중단자 등 불성실 참여자 제재 확행 (조건 불이행 및 급여 중지 조치) - 고용복지연계 업무 내역 고용센터 보고 - 탈수급 현황 관리 및 자립지원제도 안내

서식1

성실 이행협약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성 실 이 행 협 약 서

참여자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매회 진행되는 상담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중단조치'될 경우 시·군·구청으로 통보되어 '생계 급여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6. 프로그램 참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또는 '변경')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고용센터 상담자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 충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3

상담일정 통보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일정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상담일정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상담’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중단자로 시·군·구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4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상담일정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상 담 장 소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에도 지정된 상담일에 불참하였기에 참여를 촉구합니다. 2. 위 지정된 상담일시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시·군·구청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최초상담일	20 년 월 일		
중단일	20 년 월 일		
중단사유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지원을 ‘중단’ 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중단일’부터 향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 중단자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며, 생계급여 중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서식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전단계 참여기간	최초 상담일		20 년 월 일			
		출석일수		일			
		진단평가일		20 년 월 일			
	⑥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접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재	담당		과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7

사전단계 평가표

1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평가표					
참여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사전단계 참여현황	참여기간	20 . . . ~ 20 . . . (일)		
		평가일	20 년 월 일		
최종 평가결과					
☐ 취업가능자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 자치단체 이관자		자치단체 이관 사유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 ☐ 취업의사 없음 ☐ 본인의 건강상 이유 ☐ 가구여건 ☐ 기타()			
종합의견					
※ 사전단계를 통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역, 가구상황, 건강, 취업애로 요인, 취업의지, 취업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 자치단체 이관자에 대해서는 이관 사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록 - 관련 상담자료, 평가내용,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 첨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 ○○○에 대해 위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경로를 설정 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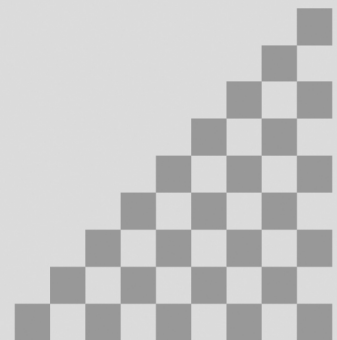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참여대상자 선정



I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참여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저소득층)

-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대상자는 “만 18~6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 1.1. 또는 7.1.부터 참여 가능(최종 2개 학기 재학중인자 참여 가능, 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FTA 피해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1.1. 생계급여수급자

- ①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허용

- * ①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②대학생, ③ 장애인, ④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⑤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조건부과제외자의 조건부수급자 전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1.9.8)으로 월 60만원 미만 소득, 주 22시간 미만 근로 등 불안정 취업으로 인해 조건부과제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가능('12.1.1 시행)
- 따라서, 자치단체(자립 상담사)와 협조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노력할 필요

- ②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불가. 다만,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허용

* 패키지 참여대상자가 아님에도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경우 또는 일반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참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수급자의 취업의사와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여 참여여부 결정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제외자, 자활특례자, 취창업수급자 등

- ③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 여성 등 보장시설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 보장시설기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추천을 받아 참여



전산의뢰수급자 이외의 참여자 등록

⇒ 조건부수급자로 전산의뢰 되지 않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전산 등록시 “**비의뢰수급자**”로 등록 관리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근로무능력자의 참여 제한

⇒ 생계급여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를 의뢰·추천을 받아 참여시 취업의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미참여 조치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 인정액 (B=A×0.6)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B×0.0306)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 8인가구: 7,773,241원)

1.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1.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이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1.5.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1.6.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확인방법 :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체류자격 확인
-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1 관련 내용

26. 방문동거(F-1)

-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7. 거주(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의3. 영주(F-5)

-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 따라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평가기준」에 준하여 ‘자기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기초 대화’를 질문하여 답변할 능력이 있는지 전담자가 질의하여 판단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
- 다만,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패키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어능력 함양 등과 같은 다른 연계 서비스 수료 후 참여하도록 안내 → 유예제도 적극 활용

〈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평가기준

등급		평 가 기 준
초급	1급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급		평 가 기 준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있는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1.7.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검정고시 학력인정자나 고교 조기 졸업자로서 만 15~18세의 비진학 청년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제적증명서 또는 자퇴서 등의 증명서 제출시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참여 허용 가능

1.8. 니트족(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만 18~34세 이하)
 -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부록 5)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1.9.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만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법상 3급 이내 장애인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1.10.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음의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1.11.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①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저소득층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 임대사업자는 취업의사가 없거나 단순히 직업훈련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작용이 많아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임대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다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의 영세 자영업자 요건(연매출 8,0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함
 - * 사업참여자 유형 등록시 차차상위 이하자로 등록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연속, 비연속 불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중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⑦ 신용카드모집인 ⑧ 대리운전원 ⑨ 대출모집인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참여 불가

1.12.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13. 장애인

- 2017년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단으로 우선 연계
 - 다만, 장애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한 I 유형 또는 II 유형에 해당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I 유형) 또는 위탁기관(II 유형)에서 진행 가능
 - * 예) I 유형 참여대상인 여성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우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계 하되, 참여자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진행 가능
 - 또한, 자치단체에서 의뢰되는 조건부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단계 진행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조치

1.14.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1.15.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만 18~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대학중퇴자 포함), 폴리텍대학·학점은행 등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 재학 또는 졸업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1.16.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1.17. 기초연금수급자

- 65세~69세 장년층 중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로
-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통해 참여자격 확인

〈 참고자료 〉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 사업 개요

- **(목적)**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4,010원**을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자

* 선정기준액('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times (\text{근로소득} - 60\text{만원})\}^{\text{①}} + \text{기타소득}^{\text{②}}$
 - 재산 소득환산액: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text{④}}) + (\text{금융재산} - 2\text{천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text{연}4\%) \div 12\text{개월}] + P^{\text{③}}$
- ① 근로소득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② 기타 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③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④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수급액)** 월 최대 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청·장년층)

2.1. 청년층(만18~34세 이하)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17년 2월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17.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② 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 고등학교·대학(원) 등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 1. 1일 또는 7. 1일 부터 참여 가능(최종 2개 학기 재학중인자 참여 가능, 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중단으로 종료처리
 -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1일(또는 7.1일)부터 참여 허용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 허용
 - * 주간대학 휴학생은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③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하되, '17년 2월말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17.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 기타 사항은 패키지 I의 영세자영업자 유형의 기준을 준용(비영리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I 유형으로만 참여가능)

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⑥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만 18~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대학중퇴자 포함), 폴리텍대학·학점은행 등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 재학 또는 졸업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참고자료 〉

맞춤형특기병 제도 개요

□ 개 요

- 병무청 맞춤특기병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통해 입영전 기술훈련 후 특기병으로 선발하고, 제대 후 취업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연령) 만18~24세 이하('93.1.1 ~ '99.12.31. 출생)자
- (학력) 고졸 이하자(대학 중퇴 포함), 폴리텍 대학·학점은행 등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재학 또는 졸업자)
- (신체) 신체등위 1~3급 현역입영대상
- (기술훈련) 기술훈련 이수율 희망하거나 기수료자(재학생 포함)

□ 지원내용

- 직업훈련 이수자는 특기병으로 선발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혜택 제공
- 당장 취업을 원하는 훈련이수자는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 부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대 후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제대 후 3개월내 취업성공시 저소득층인 I 유형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2.2.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인정액 (B=A×1)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B×0.0306)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 8인가구: 7,773,241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06(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①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기타 사항은 패키지 I의 영세자영업자 유형의 기준을 준용

③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④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기업활력법에 따른 실직자의 참여 신청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까지 참여 허용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명단은 추후 별도 통보

Ⅱ 참여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1. 참여대상자 모집 및 추천

1.1. 기본 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I 은 고용센터, II는 민간위탁기관 전담
- 민간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고, 위탁기관이 모집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배정이 원칙
 - * 위탁기관이 모집한 참여자는 위탁기관 담당자가 워크넷에 직접 입력하되, 고용센터에서는 자격요건 등 확인 후 승인하고 해당 위탁기관에 배정
- 자치단체 ·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자 적극 모집 유도

➡ 고용센터에서는 유관기관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를 적극 모집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위탁기관이 참여자 모집을 조건으로 고교 · 대학(원), 훈련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약정해지 등 강력 조치(약정서상 약정해지 사유에 명시)

1.2. 모집 및 홍보방법

- 유관기관 추천 활성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 개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자치단체 복지 및 일자리 관련 담당자와 월 1회 정례 간담회 개최
 -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유관기관과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 유형별 대상자 추천 기관 예시 〉

- ▶ 조건부수급자 : 자치단체(복지업무담당)
- ▶ 차차상위계층 이하 : 자치단체(일자리업무담당)
- ▶ 비주택거주자 :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등
- ▶ 북한이탈주민 : 자치단체(거주지보호담당관)
- ▶ 결혼이민자 : 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공사, 한마음금융 등
- ▶ 위기청소년 : 청소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상담센터, 쉼터
- ▶ 여성가장 : 여성단체, 새일센터

○ 지역·참여대상 특성을 고려한 홍보

- 지역·참여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청별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실시
 - ※ 청년층은 온라인 중심, 중장년층은 오프라인 중심 홍보 실시
- 자치단체, 대학, 훈련기관 등 유관기관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추천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포스터 배포
- 지역신문 등에 (지)청장 또는 센터소장 명의로 기고하거나, 취업성공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 예시 〉

- ▶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신문기획기사 및 칼럼, 잡지, 무가지 등 활용
- ▶ 다중매체 활용 홍보: 버스, 지하철, 센터홍보전광판, 유선방송 등
- ▶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배너광고(취업포털사이트), SMS·이메일·뉴스레터 발송, 플래시 애니메이션·홍보동영상 제작 활용 등, 실직·구직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
- ▶ 현수막, 공고문 등 홍보물 게재: 다중이용장소, 관공서, 광고물 게시대, 집합건물 게시판 등, 구직자와 취업애로계층이 많은 지역과 공간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집중 홍보 실시
- ▶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다중집합행사 활용 홍보: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집합행사시 안내홍보장 마련 후 직접 홍보 실시

1.3.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절차

①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선별 : 추천기관

- 유형별 요건에 따라 참여대상자를 추천기관 내에서 선별한 후 추천대상자와 유선 등을 통해 근로능력 및 참여의사 등 확인

② 추천서 작성·통보 : 추천기관 → 고용센터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추천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통보 (팩스·우편·전자문서 등 이용)

※ [서식 3] 참여대상자 추천서(추천기관용) 양식 참고

③ 추천서 접수 및 대상자 연락: 고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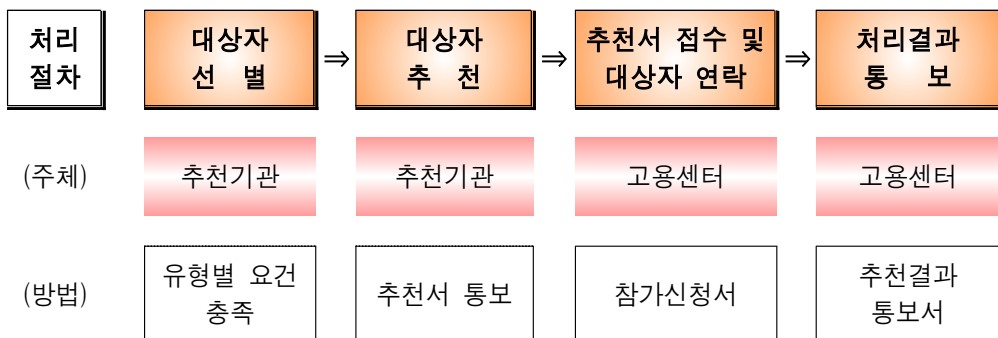
- 추천서 접수 후 추천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자세히 안내하고, 초기 상담일 지정

④ 추천 처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추천기관

- 지정된 초기 상담일 이후 최종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추천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

※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양식 참고

〈 유관기관의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 절차 〉



2.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

2.1. 개 요

- 참여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내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참가신청서 접수 시, 관련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판단하여 참여대상자에게 7일 이내 통지

2.2. 참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패키지 전산망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On-Line) 유선으로 참여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 초기상담 일정과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
 - ※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도 초기상담 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처리
 - (Off-Line) 참가신청서(서식 1)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관련 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기 보다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 받아 신청서를 보완한 후 접수 처리
 - ※ 접수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서류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 기재사항은 즉시 보완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도 작성토록 안내

2.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 신청인에게 패키지 주요 내용과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취업지원 일정 등을 안내
- (직업훈련) 신청자 중 직업훈련 희망자가 많고, 훈련수료 후 다시 패키지에 참여하는 자가 많으므로 신청서 접수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① 이미 일반 내일배움카드(200만원 한도, 자부담 5~50%)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좌 전환 가능*

* HRD-Net에서 처리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시스템 담당) 공문 조치 요청

- 이 경우 기 발급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1년) 내에서 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200~300만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용 가능

※ (예시) 먼저 일반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한 A가 패키지에 참여시 잔여 8개월간 250만원 사용 가능

- ② 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훈련이 종료(수강포기 포함)된 경우 전환

- ③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도 추후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계좌중지' 처리됨에 유의 →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적용

- ④ 패키지 사업 대상자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중단,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처리되었을 경우 계좌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일반 계좌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일반 계좌 한도(200만원) 내에서 사용 가능

-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횟수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최대 2년(생계급여수급자) 또는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참여할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

※ 참여횟수별 재참여 제한 기준: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편) 참조

2.4. 참여대상자 공통기준 및 제외기준 확인

□ 참여자 공통기준 확인

- ① **(연령)**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저소득층 : 만 18세 ~ 69세 이하
 - ※ 위기청소년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으로 구분하며, 만 15세 이상 ~ 24세까지 참여 가능
 - 청년층 : 만 18세 ~ 34세
 -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나이 무관
 - 중장년층 : 만 35세 ~ 69세 이하
- ② **(소득)** 저소득층·장년층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고, 청년층은 소득요건 확인 불요
 - 저소득층(I)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 : 소득요건 없음
 - 장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③ **(가구원 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포함 또는 제외

포 함	❶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❷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반장 확인서 등) 제출
제 외	❶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❷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❸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❹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❺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❻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기재된 이외의 자

- ④ **(건강보험료 납입액)**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참여대상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3.06%)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에게도 준용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등 적용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B×0.0306)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B×0.0306)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 8인가구: 7,773,241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06(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 가구당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동일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참여도 가능



8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826,465원씩을 더하여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상한액 산정

① 패키지 I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Rightarrow [7,773,241(6,946,776+826,465) * 0.6] * 0.0306 = 142,717\text{원}$$

② 패키지 II 지역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Rightarrow [7,773,241(6,946,776+826,465) * 1] * 0.0306 * 1.2(\text{조정계수}) = 285,433\text{원}$$

③ 패키지 II 직장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Rightarrow [7,773,241(6,946,776+826,465) * 1] * 0.0306 = 237,861\text{원}$$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입상한액 초과여부 결정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 ⇒ 패키지 II 신청자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존재할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참가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 신청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장가입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 ⇒ 당해 가구에 지역가입자 내지 또 다른 직장가입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의 산정기간

- ⇒ 참가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기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확인 기준

- ⇒ 참여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동일 세대의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 *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만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제출
- ⇒ 이혼가정의 부 또는 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가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 자녀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참여 신청시 자녀를 가구원수에는 포함 하되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제외
 - *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의 참여 신청시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 보험료 납부영수증(부과통지서) 제출여부

-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

- ☞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참조(부록 1)
-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부록 2)
- ☞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참조(부록 3)

- ⇒ 무급휴직 중인 자는 재직자의 신분으로 참여 불가
 - 다만, 실업자인 신청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0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로 참여 결정

□ 기관 추천에 의한 참여대상자 선정기준 특례

- 자치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패키지에 참여

- 다만,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해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추천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예) 희망근로 참여 종료자, 한부모가정패키지 참여(대상)자 등

* 자치단체에서 추천자 명단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 전체명단을 무작위로 보낸 경우는 추천이라 할 수 없음

- 기타 기관 추천자는 참여대상자 추천 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

□ 참여대상자 제외 기준

①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참여횟수별 참여 유예기간 설정

-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판단은 패키지 신청시점 당시의 신분으로 판단

* 1회차 참여시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으로 참여하여 기간만료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였고, 2회차에는 차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하려 한다면 2회차 신청시의 신분인 차차상위 계층으로 재참여제한 기간은 1년임

- 직전회차 취업성과의 기준

* 1회차 참여시 중도탈락하고 그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중도탈락을 기준으로 재참여 제한기간 산정

- 자치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 생계급여수급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참여횟수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	9월	6월	3월
3회	1년6월	1년	9월	6월
4회 이상	2년	1년6월	1년	9월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생계급여수급자 외 일반 참여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참여횟수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6월	1년	9월	6월
3회	2년	1년6월	1년	9월
4회 이상	2년6월	2년	1년6월	1년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에 한하며, 취업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으로 산정, 퇴사일은 사업 참여를 통한 최초 취·창업의 이직일
-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자(일반 취업자)의 경우 기간만료자로 간주하며 기간만료 산정기준일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로 함
- * 폐업일은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확인

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시 고용노동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 제한)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단,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중단·미수료자는 참여 가능(개정 2012.4.2.)
- 참여 신청시 중복참여 제한 사실을 사전 반드시 안내하고 상담,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타 사업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되, 전산상 참여여부가 실시간으로 조회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시 수시 확인
- 패키지 참여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이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③ **(취업자)** 취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되, 다만 사업참여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중 참여자의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처리

* 1단계 참여수당은 실비성격이므로 전액 지급하고,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일용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않는 날에 한해서만 지급

-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재참여제한 기준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15년 업무매뉴얼(p.18)에 따른 재참여제한 기간 적용을 위한 “직전 회차의 취업성과 여부”에서 취업이란 고용보험 가입일자리에 한정되므로,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취업자의 경우는 기간만료자(미취업)에 준해서 처리

- ④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 다만, 약학, 간호, 의료 분야* 재학생을 제외한 타 분야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참여가능(약학·간호·의료분야* 재학생의 경우에도 졸업예정년도 1.1일 또는 7.1일 이후 참여 가능)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 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 및 기타 고용센터장이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여부 결정

- 위원회는 센터 소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팀장, 업무담당자, 직업훈련 업무담당자 등 3~5명 이내로 구성·운영

-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 후 완치된 것이 확인되면 참여 가능

- ⑥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⑦ **(기타)**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등 고용센터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 참여유형 변경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참여 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참여유형 변경은 불가함
- 다만, 생계급여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뢰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으로 변경 가능

2.5. 관련서류 확인

① 취업성공패키지 I

- 패키지 유형별 참여 대상 요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
- ① **(생계급여수급자)** 자치단체에서 전산으로 의뢰되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는 관련서류 불요
 - 다만, 패키지 중단 내지 종료 경력이 있는 자는 재참여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중단, 종료 또는 유예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여부 결정
 - * 자치단체 의뢰없이 본인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의뢰를 요청
 -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기관(자치단체)의 추천서 또는 보장시설기관장(복지시설 등)의 추천서(전산의뢰자 제외)
- ②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한 경우 요청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④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대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②·③
자료 제출 불요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중위소득 40 - 50% 이하 가구	•의료급여 1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 2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장애수당 : 4만원 •장애연금 : 4~22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15만) · 경증(10만)
한부모가족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10만) · 고교생 학비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아동 10만원 •장애아동 21만9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 20%, 차상위계층 : 18%

③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관련기관 확인(추천)서(서식 3)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비주택거주자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 비주택거주자 확인(추천)서 ※ 관련기관의 추천이 원칙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비주택 사실을 증명할 경우 참여 가능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또는 추천서

- ④ (결혼이민자) ① 외국인등록증(F-2, F-5, F-6로 참여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③ 혼인관계 증명서(필요시)
- ⑤ (위기 청소년) ①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청소년 상담지원센터·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의 확인(추천)서
- ② 위기청소년 참여대상자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학교,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필요성을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 참여 가능
- ③ 개별참여자의 경우 제적 증명서, 자퇴서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제적증명서 또는 자퇴서 등의 증명서 제출시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참여 허용 가능
- ⑦ (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 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⑧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서식 3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⑨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

⑩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❶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❷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신청자가 신청시점에서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매출 상한액(80,000천원)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요건을 판단

* 연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세납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⑪ (FTA 피해 실직자) “FTA 신속지원팀”에 확인

⑫ (맞춤 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⑬ (미혼모·한부모) 미혼모·한부모 시설의 추천서

2 취업성공패키지II

①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②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신분증

③ (대학(원)생) ①마지막 학년 재학생 :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졸업생 : 졸업증명서

④ (중장년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한 경우 요청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 ⑤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 영세자영업자는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신청자가 신청시점에서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매출 상한액(150,000천원)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요건을 판단
- * 연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⑥ **(맞춤 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2.6.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유선 통보하고 상담 참여일정 통지서 송부(서식 8)
- ※ 참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인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수급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도 문서로 통지
-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는 초기상담 시 관련서류 확인 후 통지
- 신청인이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2.7.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 이의신청서 접수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보완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

- 처리결과 통보시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업무처리지침 〉

□ 개요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으로
 - 자치단체장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취업에 적합한 자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세부 업무처리지침

- (대상자 의뢰) 생계급여수급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의뢰되며, 취업의욕 있는 수급자가 패키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담당자(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자활업무 담당자 등)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취업지원계획 수립) 의뢰 받은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IAP 수립 후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발송
- (참가 이행상황 등 통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취업 지원을 실시하되,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진행과정을 입력하여 자치단체에서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건이행 중도 포기 또는 거부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단서)

※ 매월 1일~10일 사이에 전월의 조건부수급자 참여 이행상태 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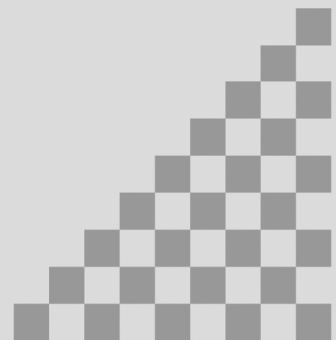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취업지원계획)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I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1.1. 의의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는 한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는데 목적
- **(취업지원의 출발점)**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는 통합적 「취업지원」의 1단계 과정이며, 전체 패키지 운용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취업지원의 전제조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진행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진행될 취업지원의 기본설계도로서 기능
-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 과정)**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정도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대한 신뢰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여부를 좌우
- **(취업역량 파악)**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프로파일링(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
- ①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초기 기초상담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내일을 위한 약속'을 부과하여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구직등록 미등록자는 구직등록을 실시하여 취업(창업)에 대한 목표를 인지하게 함

- ② **(취업역량평가 실시)** 참여대상자의 취업취약성과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취업역량평가지에 따라 개인별 취업역량 평가(초기상담일에 실시)
- ③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1종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심층상담을 제공
 - 참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구직에 대한 의욕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참여자가 이전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층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
- ④ **(과제 제시 및 맞춤형 상담)**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직업훈련 및 취업분야, 관심 직무와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제를 부과
 - 또한, 과제이행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참여자의 취업취약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직업·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목표를 설정하도록 상담
- 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여타 구직자 또는 취업애로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를 안내
- ⑥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1단계 과정 동안 참여자는 진단과 의욕증진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취업(창업) 희망 분야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전담자는 실행가능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조언과 상담을 제공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2.1. 운영 원칙

- 1단계는 개인의 취업의욕 및 역량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는 과정

-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 중 1종을 필수적으로 실시
 - 다만, 참여자가 이전*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결과를 활용도 가능
 - * 참여자의 이전 직업심리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여부는 상담자가 판단해 결정하되, 다만 초기상담일 기준 1년 이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참여자의 취업의욕·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안내
- 고교·대학(원)생 최종학년 재학생 등 청년층이면서 I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유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40)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함

2.2. 운영 기간

- ① 1단계는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IAP 수립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일부터 IAP 수립일까지 3~5일 간격으로 개별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은 횟수에서 제외) 실시하되 최소 21일간은 운영
 - ※ 1단계 서비스(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해석, 집단상담, IAP 수립상담)는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다만, 성실한 참여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상담진행 필요시 상담자 재량으로 2개월 이상 운영 가능

②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최소 1주(대면상담 2회) 운용가능

- 패키지 재 참여자(2회 이상)의 직전회차 취업성과가 '6월 이상 취업'인 경우 IAP 수립 후 바로 3단계 연계(2단계 참여 제한). 다만, 직전 취업직종과 상이한 분야로의 직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단계 참여 가능
- II유형 중 청년층 참여자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이상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II유형으로 참여시 취업역량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참여자와 협의 후 위탁기관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1단계 기간 단축(1주 2회이상 대면상담) 운영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 자격,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취업의지나 역량과 관계없이 역량평가 점수가 낮은 상황을 고려

2.3. 상담내역 기록

-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철저히 전산에 입력 관리
 - * 민간위탁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 미입력시 실적 불인정
- 담당자 변경, 참여자 이관, 재참여 등의 사유 발생시 참여자의 서비스 내역을 충분히 파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의 의

- 참여자의 ① 취업관련 특성과 제반 여건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및 ② IAP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 안내 등을 통해 참여자와 라포 형성

□ 초기상담 실시시기

- 선정된 참여자는 「상담일정 통보서」(서식 8)상의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오프라인 신청자)**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일정통보서」(서식 8)상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접근성, 장애 등으로 센터방문이 곤란한 경우 참여신청서 접수 및 등록 후 곧바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편의 제공
- **(온라인 신청자)** 접수내용을 토대로 유선으로 연락한 후 대상자 선정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
 - 가능한 한 고용센터 최초 방문일에 참여자 확정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편의 제공
 - ※ 참여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등)에게 알려 해당 사실이 전달되도록 조치
- 다만, 참여자가 상담일 3일전*에 상담일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당초 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지정
 - * 따라서, 상담자는 초기상담일 3일 전에 참여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초기상담일시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 *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일시 변경의사를 상담 3일 전 이후 알려진 경우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감안하여 변경·조치
- 만약, 참여대상자가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2차 통지를 하고, 2차 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 조치
 - ※ 참여자에게 2차 통보 시, 2차 상담일시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중단일로부터 1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과 해당 통지됨을 안내
 - ※ 생계급여수급자는 패키지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참여대상자가 상담일을 계속 미루는 등 참여의지가 없어 중단조치 하였음을 통지

□ 초기상담 실시요령

- 초기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실시



초기상담전 확인사항

⇒ HRD-Net(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고용보험 전산망(피보험자격취득), 복지연계전산망(복지사업 참여여부), 일모아시스템(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작성 여부, 선정된 참여자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청년층의 경우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 상담에 활용

○ 상담시 참여자의 가정환경, 직업이력과 취업역량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내실 있게 실시

-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단계(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과정이 갖는 의미와 내용, 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과정 진행에 앞서 상세히 설명*

* 과정진행절차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민원(계획 하나 만드는 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는 불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분위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

- **(상담시간)** 참여자의 취업관련 제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

- **(참여자 적극적 참여 유도)** 상담이 개인 신상파악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자에게 취업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희망하는 직업 내지 직종, 희망직종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등등

** 초기상담 중간 또는 말미에 질문을 하거나 다음 상담일까지 생각해 볼 과제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내일을 위한 약속 작성)** 담당자는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상호 약정인 「내일을 위한 약속(서식 9)」을 작성하고, 참여자에게 1부 배부

※ 참여자가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본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각서’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

※ 참여도중 자격 변경(차차상위 등 일반참여자 ⇌ 기초수급자)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토록 안내

○ 상담완료 후 상담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참여자를 앞에 두고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지양

□ 구직등록

○ 구직등록은 기본 인적사항과 직업이력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개략적 구직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

○ 초기상담과 엄격히 분리하여 실시할 과정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초기상담과 동시에 실시

- 다만, 담당자의 상담 편의 등을 위해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먼저(先) 또는 나중에(後) 등록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자는 구직등록을 전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직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구직등록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수정 입력

○ 구직등록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

○ 구직등록은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입력

3.2.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 개 요

○ 취업역량평가는 사전에 취업역량을 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단계 초기상담일에 취업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IAP를 수립하여 참여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시 원칙

- 1단계 초기상담시 취업역량평가 실시
 - 참여자의 정확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활용
- 취업성공패키지 I · II 유형 모두 전담 상담사가 직접 실시
 - * 인턴, 공익요원, 업무지원자(민간기관) 등 비전문가의 취업역량평가 실시 금지
- ▲구직욕구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증 보유 및 직업훈련 경험 등 취업역량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시
 - ※ ▲구직욕구, ▲건강상태는 가능한 상담사가 직접 질문하여 기입

□ 취업역량평가 실시 및 채점방법

- 실시 방법
 - (1단계) 구직욕구(22) 및 건강상태(19) 설문 항목 질문 및 응답
 - (2단계) 연령대, 학력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48)
 - (3단계) 1단계 진행과정 중 상담결과 취업의지에 대한 **응답 신뢰성(5점)**, 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가능성(5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
- 취업역량평가(사전진단) 채점 방법(판정기준 및 배점 표 참조)
 - ① (구직욕구) $\Sigma[1 \sim 9 \text{ 문항 선택 값}] (\text{합}) / 45(\text{만점}) \times 22(\text{가중치})$
 - ② (건강상태) $\Sigma[1 \sim 3 \text{ 문항 선택 값}] (\text{합}) / 15(\text{만점}) \times 19(\text{가중치})$
 - ③ (기타) ▲연령대(3~12점), 학력수준(1~6점), 미취업 기간(1~6점), 고용보험 가입기간(1~6점),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11점),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7점)은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④ (재량점수) 상담결과 취업의지에 대한 **응답 신뢰성(5점)**, 사업참여를 통한 **취업 가능성(5점)**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 (채점 예시) 구직욕구 11점, 건강상태 8점, 연령 25세(12점), 학력 고졸(4점), 미취업 기간 7개월(3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6개월(6점), 취업관련 자격증 없음(0점),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 있음(7점), 상담원 재량(8점) = 59점

□ 취업역량평가 활용

- 취업역량 판정 기준 점수에 따라 4가지 수준의 취업역량 집단으로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패키지 참가자 취업역량평가 등급 구분 〉

등급		개선
A등급	매우 낮음	48점 미만
B등급	낮음	48~57점
C등급	보통	58~66점
D등급	높음	67점 이상

- A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필수 제공 원칙
- B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필수 제공 원칙
- C·D 등급 : 가급적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 제한, 직업훈련 관리 강화

〈 패키지 참가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 〉

연번	판정 기준	세부 기준	배점	기준에 대한 설명
1	구직욕구	설문지	22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구직욕구진단(지필)을 통해 평정
2	건강상태	설문지	19	•취업하기 위한 신체 및 정서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간편 근로능력검사 통해 평정
3	연령대	15세 ~ 19세	3	• 취업연령대를 평정
		20세 ~ 35세	12	
		36세 ~ 49세	8	
		50세 ~ 69세	4	
4	학력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	•취업에 용이한 학력 수준 평정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이상	6	
5	미취업 기간	1년 이상	1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최근의 미취업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	
		6개월 미만	6	
6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없음	1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6	
7	취업 관련 자격증 유무	-	11	•취업희망 직종과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제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보유 여부
8	취업 관련 직업훈련경험	-	7	•취업 희망 분야 관련 최근 2년 내 직업훈련 경험 여부
소계			90	
9	상담원 재량	취업의지의 신뢰성	5	•상담원이 소계 점수를 고려하여 상담 후 종합적으로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가능성	5	
총합			100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구직욕구(22점) 〉

항 목	전혀 안함	3개월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주에 한번	1주일에 1회 이상
1.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책자 등을 통해서 최근 취업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2.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취업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 검색한다.	1	2	3	4	5
3.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취업센터, 취업소개소를 방문 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4.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에 참석한다.	1	2	3	4	5
5.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한다.	1	2	3	4	5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취업할 수 있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건강상태(19점) 〉

문1. 다음은 귀하의 근로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	2	3	4	5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1	2	3	4	5

3.3.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 개 요

- 참여자의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 관련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검사 가운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최소 1종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필수적으로 실시
- 직업심리검사 종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나, 구직준비도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 먼저, 구직준비도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구직의욕과 능력수준을 진단한 후 다음 회차에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통해 구직자가 흥미를 느끼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하여 동기 부여하는 맞춤형 상담 실시
- ☞ 직업심리검사별 특징과 해석 방법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위한 1단계 도구·자료 가이드> 참조(별책 배포)

〈 워크넷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종류 〉

검 사 명	내 용	방법	소요 시간
구직준비도검사	실직 후 사회적·심리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 평가	지필 · 인터넷	20분
직업가치관검사	직업 및 직장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측정하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20분
직업선호도검사 (S)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20분
직업선호도검사 (L)	성인의 직업 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60분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추천		20분
창업적성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 지 판정		20분
직업적성검사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90분

* '구직준비도검사·직업전환검사·창업진단검사'는 일반적 소요시간(제한시간 없음)
 * 기존 구직효율성검사는 2012년 이후 구직준비도검사로 개정됨

□ 실시시기

- 직업심리검사는 초기상담일 이후, 2~3차 상담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실시방법

- **(사전 안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의의와 종류, 실시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 다만, 참여자가 직업심리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 취지 및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설득
 -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심리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
- **(검사종류 선택)** 참여자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 및 참여자 수준(인지·정서적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검사의 종류는 대상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검사 중 선택하여 실시
 - 1차적으로 시간, 채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선택하되,
 - 과거 유사 직업심리검사를 받았던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직준비도검사(구직효율성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직업선호도검사 등 대상자에 적합한 직업심리검사 추가 실시
 - ※ 직업선호도검사 L형은 실시에 6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 의사를 사전에 파악,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 실시
- **(검사 실시)** 검사 종류별 검사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수검자 입장에서 판단·조치
 - 직업선호도검사 L형 같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도록 조치

□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 담당자는 직업심리검사 목적과 장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검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

-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
 -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녹음 테이프만 틀어주고 수검자 혼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양
-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할 경우 성실한 응답을 할 확률이 낮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 유의
- 아울러, 대상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검사에 대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에는無理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검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상담 실시
 -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심리 상담 위탁 고려

□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 검사결과 해석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 내지 다양한 사례경험을 갖춘 상담자가 진행
 - * 각종 검사내용과 하위요인, 검사점수의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
 -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위한 1단계 도구·자료 가이드(별책 배포)>의 직업심리 검사 부분을 참고하여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이해 제고
-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유경험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
- 검사결과 해석시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만을 해석하지 말고 참여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시

〈 직업심리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

- ❶ 스스로 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❷ 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숙지하기
- ❸ 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자를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 ❹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❺ 참여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❻ 참여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❼ 결과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기

3.4.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 개 요

-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는 취업특강 실시
- 참여자가 다른 구직자와의 집단 활동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취약성과 구직스트레스를 극복하고,
 -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고용센터 여건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운용 현황 〉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적합대상	시간
1	성취프로그램	•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의 가능성 예방,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재취업 능력 제고	장기 구직자	5일 30시간
2	취업희망프로그램	• 자신감 향상 ·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심리적 취약계층	4일 22시간
3	행복내일프로그램	• 취 · 창업의욕 증진 및 대인관계 향상 • 강점 파악 및 생애설계, 구직기술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4일 24시간
4	성실프로그램	• 고령자 취업 자신감 제고 • 고령자 구직기술 향상	50세 이상	4일 24시간
5	주부재취업 설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분야 설정 • 선정된 분야에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경력단절 여성	4일 24시간
6	결혼이민자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취업정보 제공	결혼 이민자	3일 12시간
7	청년총직업지도 프로그램(CAP+)	• 청년층의 합리적 진로직업 선택 지도 •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향상	청년층	4일 24시간
8	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allA)	• 자기이해 심화, 인간관계 확장 • 삶에 대한 적극성 강화	청년 니트	4일 24시간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적합대상	시간
9	청년취업역량(청취력) 프로그램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청년구직자	4일 24시간
10	H프로그램	•고졸미취업청년을 위한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고졸미취업 청년층	2-3일 12시간
11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남한의 직업세계 및 기업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북탈이탈 주민	4일 28시간
12	WIN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분야 설정 및 계획 수립	경력단절 여성	1주 20시간
13	WIN+ (경단여성 직장적응 프로그램)	•취업을 앞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 및 직장적응 지원	경력단절 여성	4일 20시간
14	RE-WIN (경단여성 직장 재복귀지원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대상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경력단절 여성	2-3일 12시간

※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매뉴얼)에 따라 운영

□ 기본원칙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의지·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1단계(필요시 2·3단계 중)에서 1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자가 2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참여를 허용하되 동일 프로그램 참여는 지양

- 다만,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할 경우 단기집단,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과제 부여 등 취업의욕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타 프로그램 사용 가능

-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집단·취업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 설명회, 과제부여 등 고용센터 내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

□ 조치사항

① 참여자에 대한 조치 사항

- 프로그램과 관련한 오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참여 예정 집단상담프로그램 명칭, 일정, 운용 절차 및 방식,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

-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과정별 신청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됨을 정확히 안내 (참여과정 변경 가능성 포함)
-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일 내 별도 연락함을 안내
- 참여자에게 1단계 참여수당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짐을 안내
-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출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을 이수한 후에는 IAP 수립 등을 위해 고용센터에 재방문해야 함을 설명하고, 재방문 일시를 지정·통지

②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참여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전산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토록 조치
- 만약 해당센터에서 직접 운용할 수 없거나, 인소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취업지원집단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다른 센터에 의뢰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 중 가급적 1회 이상 연락
- 무단결석 등 프로그램 참여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되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내지 운용기관 담당자에 대해 사전 요청
- 1단계 운영 중 적절한 구인처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알선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IAP 수립 전이기 때문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

□ 기타

- 1단계 운영 중 '중소기업탐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시 1단계 수당을 지급하고 참여결과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반영

3.5. 전문심리상담서비스(EAP)와의 연계

□ 시기 및 대상

- 참여자 가운데 전문심리상담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연계 제공
-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 ※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2·3단계 과정 중에도 지원 가능
- 전문심리상담은 참여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
 -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여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②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대인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불안 증세 등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인 과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④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연계 방법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전문심리상담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상담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지양
- 참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심리상담 추천(추천시에는 서식 10 활용)
 - 1단계 상담일정이 남아 있는 참여자는 상담일을 감안하여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심리상담사와 협조)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 시 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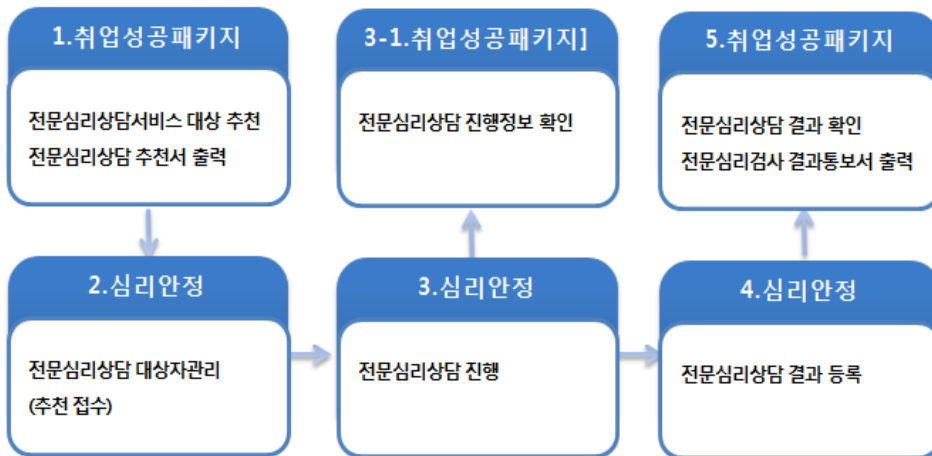
- 아울러, 참여자에게 단계별 진행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개인당 최대 8회차까지 심리상담 가능

〈전문심리상담 전산 의뢰·실시 개관〉

- **(심리상담 추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는 1단계 참여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EAP 상담사에게 전산으로 대상자 추천
- **(심리상담 실시)** 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하고 매 회기별로 상담내역을 EAP 전산 시스템에 입력
- **(결과 통보)** EAP 상담사는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통보
 - 심리상담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의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에게 전산 통보
 - * 사전단계 참여자는 사전단계에서 전문심리상담 실시 가능
- **(상담결과 활용)** 전문심리상담 결과는 1단계의 IAP 수립에 활용

<취업성공패키지-심리안정프로그램 흐름도>



-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심리상담이 가능한 기관 활용가능(부록 19.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현황)

□ 전문심리상담 제공 전·후의 고려사항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이전에 전문심리상담의 의의 등을 참여자에게 자세히 안내
- 참여자 및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전문심리상담을 통한 참여자의 심경변화 등 파악
- 특히,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간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 심리상담사와 당일 상담내용 및 분위기 외 참여자의 상담기간 중 변화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3.6.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 애로요인 제거를 통한 취업촉진

- 복합적인 취업애로사항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애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취업 촉진
- 복지·보건·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운영
-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정기적 참여를 통한 고용센터-자치단체 연계 강화

- 현재는 자활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고용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참여
 -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해 통합사례회의 연계

□ 관할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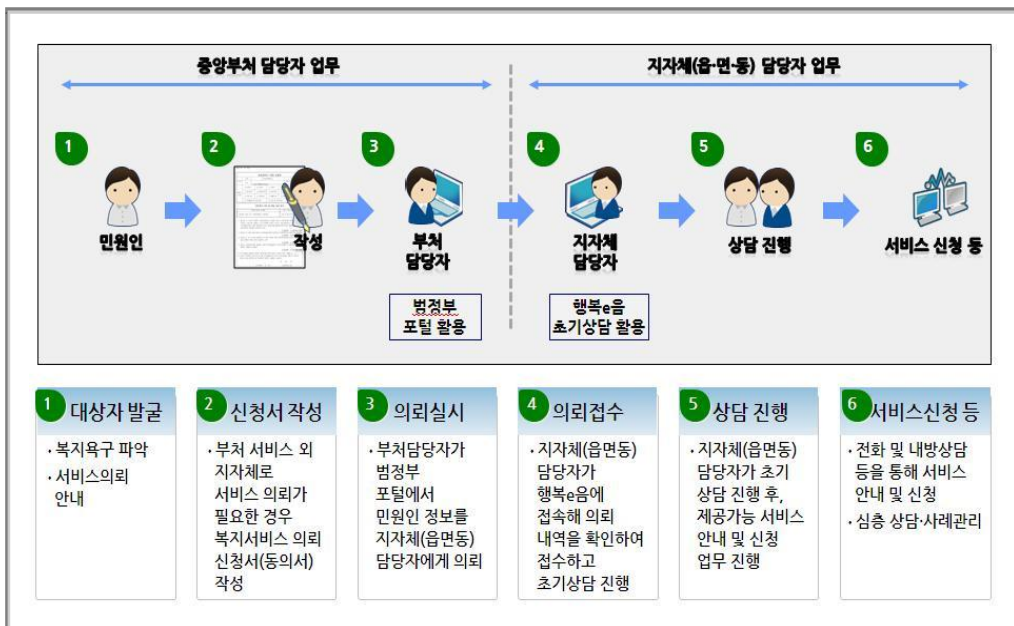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포털(행정망: www.wish.go.kr, 외부망: www.bokjiro.go.kr)에서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 가능한 읍·면·동 복지서비스를 검색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복지알림이*' 맞춤검색을 통해 민원인의 가구형태, 복지욕구 등에 맞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포털 메인화면 → '복지알림이' 선택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집중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 의뢰

- 취업상담(1단계)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통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

【 서비스 의뢰 개념도 】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개 요)** 취업역량평가 및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수립시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은 상담 완료 후 1단계 최종단계에서 수립
- **(주요 내용)**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내용 공유)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인적사항 ▲주요 경력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직업훈련 계획
 -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 등
-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대상자 개인의 희망직종 및 현 직업능력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취업희망직종과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 * 취업희망직종과 관련성이 높은 훈련과정 추천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상세 일정을 수립
- **(IAP 배부 및 변경)** IAP를 수립한 경우 참여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1부 출력·배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내용을 변경 조치
 - ※ 가령, 참여자가 훈련분야 변경을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AP 및 훈련분야를 변경 → 훈련직종(분야) 변경이 2회까지 가능함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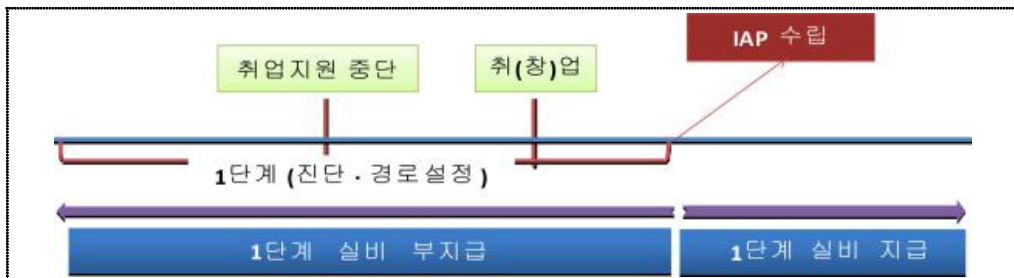
4. 참여수당 지급

4.1. 의 의

- 참여수당은 패키지 1단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계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비 보상적 지원 기제이며, 성실한 1단계 참여를 유인하는 의미도 존재

4.2.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 (지급요건) 1단계 과정 수료자는 동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를 수립한 자를 말함
 - 따라서,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에는 부지급



4.3. 지급 금액

- (원 칙) IAP 수립시까지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이 소속 학교 내에서 상담·진단(1단계 운용)을 받는 경우, 참여수당 부지급
 - * 1단계 상담 전체를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 참여수당 15만원 지급(단, 학교 및 위탁기관 상담이 혼재하는 경우, 위탁기관 방문 상담에 한해 1일 2만원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패키지 참여기간에 대한 참여수당은 부지급하되,

- *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 부터 만료일까지를 의미(대기기간 포함)
- *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계속적으로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 1단계 기본금 전액지급

-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한 참여수당은 최소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일할계산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을 최소 소요기간(7일 또는 21일 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기본지급액 15만원을 한도로 지급

○ **(추가 지급액)**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 수료자: 5만원
 - *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단기집단, 취업특강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지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발급하는 '생애경력설계 과정 수료증'으로 확인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1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프로그램 참여자: 3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 5만원
 -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지급

*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기본 지급액		추가 지급액			계	
패키지 I	패키지 II	구분	패키지 I	패키지 II	패키지 I	패키지 II
15만원	15만원	중소기업탐방(2일이하)수료자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	20만원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 ① 패키지 I 유형

- 참여자가 다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추가 지급액은 최대 10만원**
예: 참여자가 취업특강 2회 수료 후,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을 수료했을 때, 추가 지급수당은 10만원이 아닌 5만원
- 단기집단 2회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탐방에 참여 가능. 또한 집단상담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에도 참여 가능. 다만, 추가지급액 상한 10만원은 준수

② 패키지 II 유형

-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음
- 참여자가 다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추가 지급액은 최대 5만원**
예: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탐방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할 경우, 추가 지급수당은 2만원

4.4.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지급시기

- 참여수당은 1단계 IAP 수립일(1단계 수료시점)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되,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 허용

- **(일괄 지급)** 1단계 참여수당은 지급취지(실비보상 및 참여유도)를 감안하여 해당 금액(1인당 15 · 18 · 20 · 25만원)을 일괄 지급

○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 IAP 수립 완료 후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12)」 접수

※ 가급적 IAP 수립 당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
- 타인명의 계좌 지급 후 수령여부 확인

〈 계좌명의인 및 동의서 〉

- ‘계좌명의인’은 ‘1단계 참여수당’ 지급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1인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명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 제출은 생략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인 가구 포함)에는 통 · 반장, 추천기관의 장, 지인 등(20세 이상인 자)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 경우,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신청서 내용 확인)** 초기상담일,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기간, IAP 수립일, 희망 계좌 등 기재 여부 확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동의서 및 약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참여수당 지급)** 해당 계좌로 1단계 참여수당을 지급 조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 운영 매뉴얼 참조

4.5. 유의사항

- 2016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 '16년에 초기상담을 하고 '17년으로 이월된 경우 '16년도 지침을 적용
 - 초기상담일이 '17.1.1 이후인 경우 '17년도 지침 적용
- 참여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참여수당 지급기일 준수
 - 참여자가 실업자임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여부 결정·조치
 - ※ 신청서 제출 이후 1단계 참여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
 - 초기상담일에 1단계 참여수당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여 IAP 수립일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 13) 등
 - 제출서류: ①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민간위탁기관 참여자만)
 - ※ 이외 서류 징구 금지
- 참여수당 환수
 - 참여수당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참여수당 전액 환수
- 참여수당 지급 소멸시효
 - 1단계 참여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

5.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1단계 운영 특례

- ◎ 기초수급자 중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적용하되,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준용함
- ◎ 패키지 참여 중 밀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단계에서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제공 가능한 밀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5.1. 1단계 운영 기본 원칙

- **(운영원칙)** 1단계는 개인의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요구 파악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L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 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계획수립, IAP 수립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또한 단기문제해결 상담, 롤모델 상담 등 참여자에게 맞는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참여자의 특성 진단,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최소 6주 ~ 최장 10주까지 운영 가능
 - 주 1회 이상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요구 파악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가구여건 등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1단계 중 참여 유예 가능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회의(고용센터+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 그간 기초수급자의 자활 참여 이력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로를 파악하여 복합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상담내역 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전산 입력
- **(1단계 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은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IAP 수립여부와 무관)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 프로그램 수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프로그램 수료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 ·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기초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기초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 수립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5.2. 1단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필수)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 · 흡연 · 가족 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애로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 고용복지 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필수)

-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내적 여건 및 환경적 여건을 진단하여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 1단계 IAP 수립전까지 참여자 특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IAP를 수립하여 참여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IAP 수립
 - * <참고1>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 ※ 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담당자와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간 사례관리회의 실시

□ 직업심리검사(필수)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와 성격 및 생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상담 제공
 - * 직업선호도검사(L형)는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 등을 제공
 - ↳ 직업흥미 육각형의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성격과 생활경험 검사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지향, 자존감, 독립심, 야망, 직무만족 등을 파악 가능
 - 자신의 직업흥미 영역과 수준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본인의 현재 시점의 성격과 생활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참여자가 초기상담일 이전 1년 내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결과를 활용도 가능

□ 단기문제해결 상담(선택)

- 단기해결적 상담 기법의 적용을 통해 참여자가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코칭 및 상담을 제공

- 자활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결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 바람직한 변화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
 - ▶ 본인이 지니고 있던 성공경험과 강점 및 자원을 확인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강화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 해결중심적 단기상담 또는 해결중심적 단기코칭은 참여자가 자신의 힘(역량)과 자원을 이용하여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하며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임
 - * 단기해결상담은 참여자의 결함이나 애로는 가능한 다루지 않으며, 참여자가 이미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 지식, 믿음, 행동, 증상, 사회관계, 환경, 개인적 특성, 건강한 특성측면 등을 도출하여 문제(목표)를 해결하고자 함. 또한 문제(목표)를 간략화시켜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도록 여길 수 있게 '협력'적 과정을 통해 면담하는 전략
- 참여자 특성 및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상담의 횟수와 기간을 융통적으로 설정하여 제공하며, 다른 과제 부과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참고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 집단상담프로그램(필수)

-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 가능성 예방 및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
 - * 집단상담프로그램 기수강자 및 비희망자 등은 담당 상담사의 재량에 따라 참여여부 결정

□ 단기특강 수강 등을 통한 취업준비도 강화(선택)

- 개별 맞춤 상담활동만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취업가능성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고용센터에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 단기특강(2시간 내외) 또는 단기집단상담(3시간 내외)에 참가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여 구직의욕 증진과 구직준비 수준을 강화
 - * 자활대상자가 단기취업특강 및 단기집단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다른 구직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구직의욕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사회적 학습의 효과 발생

○ 참여자 특성,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해 적합한 특강 권고

* 예를 들어, 스트레스 완화 및 의사소통 방법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담당자는 고용센터에 개설된 '화 다스리기',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의 특강을 수강토록 권고할 수 있음

〈 참고 〉 고용센터 개설·운영 중인 단기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강좌명	비고
단기 집단 상담 (3시간)	① 행복한 대화 이끌기 ②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③ 나를 이해하기 ④ 취업 목표 정하기 ⑤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⑥ 면접기술 습득하기1 ⑦ 면접기술 습득하기2 ⑧ 취업전략 세우기	▶ 15명 내외의 교육 및 실습 혼합 구성으로 집단상담 형태로 3시간 이상으로 운영
단기 취업 특강 (2시간)	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②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③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④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⑤ 근로기준법 ⑥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⑦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⑧ 중장년층을 위한 비전설계 ⑨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개발	▶ 구직역량 제고 관련 강좌로 2시간 이상으로 운영

* 각 지역 고용센터에 따라 위에 제시된 특강 외에 다양한 강좌 개설 운영

□ 과제이행 맞춤상담(선택)

○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의 가능성과 직업정보 등을 탐색하도록 활동지 형태의 과제를 부여한 뒤 해당 작성내용을 토대로 직업진로 상담을 실시

* <참고 3> 과제이행 맞춤상담 활동지(관찰은 나 발견하기 활동과제, 일경험 떠올려보기 활동과제, 내 삶의 보물찾기 활동과제, 관심직업 찾기 활동과제,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활동과제, 직업훈련과정 탐색 활동 과제)

□ 취업성공수기(사례)를 활용한 상담(선택)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로 취업 및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읽으며 자활의지를 제고하는 개별 또는 소그룹 상담 실시

* <참고 4>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EAP) 제공(선택)

- 취업가능성 증진을 위해 자존감 회복 및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완화 등 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그림검사를 통한 심층 상담(선택)

-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림을 토대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문제 등에 대해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애로요소를 파악하고 취업 의욕을 높임

* <참고 5>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 강점진단을 통한 동기 강화 상담(선택)

- 강점진단도구(VIA)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강점 특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강점을 기반으로 동기부여 상담을 제공

* <참고 6> 강점진단도구

□ 심리정서상태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선택)

-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진단하여 복지연계 및 심층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동기 및 취업의욕을 높이는 상담을 제공

* <참고 7> 심리정서상태진단 도구(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사회정서적 고독감, 우울척도, 우울증진단, 자기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 생활패턴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선택)

- 규칙적인 생활 등 근로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진단지를 토대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실시

* <참고 8> 생활패턴진단 도구(일반건강척도,, 알코올 의존도 진단, 알코올 의존도 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필수)

- (개요)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결과, 참여자 특성 진단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수립시기) 상담완료 후 1단계 최종단계에서 확정 수립
- (주요내용)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수립한 고용복지서비스 계획을 토대로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인적사항 △ 주요경력 △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 직업훈련 계획
 △ 참여대상자의 취업지원 경로 △복지서비스 연계실시 내역 및 계획 계획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IAP 변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 내용을 변경 조치

〈 밀착사례관리용 1단계 세부프로그램 활용도구 목록 〉

no	밀착사례관리 1단계 서비스	활용도구(서식)
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① 내일을 위한 약속(기존서식) ② 구직등록(기존서식)
2	고용복지요구진단	참여자 특성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3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7종)
4	단기문제해결상담	동기강화 및 강점발견 중심의 상담기법을 통한 구직의욕 제고
5	집단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15종)
6	과제이행 맞춤상담	① 괜찮은 나 발견하기 활동과제 ② 일경험 떠올려보기 활동과제 ③ 내 삶의 보물찾기 활동과제 ④ 관심직업 찾기 활동과제 ⑤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활동과제 ⑥ 직업훈련과정 탐색 활동과제
7	취업성공수기를 활용한 상담	5개의 롤모델(취업성공사례) 활용
8	심리안정전문상담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심리상담 연계
9	그림검사를 통한 심층 상담	빛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10	강점 진단을 통한 동기 강화 상담	강점진단(VIA)
11	심리정서 상태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	①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ANAS) ②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③ 사회정서적 고독감 ④ 우울척도 ⑤ 자기존중감 ⑥ 심리적 행복감(well-being)
12	생활패턴 진단을 통한 상담 및 코칭	① 일반건강척도(GHQ) ② 알코올의존도 진단(NAST) ③ 알코올의존도 평가(AUDIT-K)
13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기존서식)

참고1 고용복지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작성자		작성일자	2016. . .	참여자명	
-----	--	------	-----------	------	--

1. 대상자 특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동기	☐ 비자발적 ☐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어 신청 ☐ 참여비, 직업훈련 등 혜택 ☐ 기타()
대상자 성별, 학력, 연령 등 제반 특성 개요	

2. 대상자 내적 여건

구분			항목별표시			참고 가능한 도구	의견 등 비고
건강	1	정신건강	☐ 양호	☐ 의심	☐ 나쁨	일반정신건강 진단	
	2	알콜	☐ 무		☐ 유	알콜의존도 진단	
	3	신체건강	☐ 양호	☐ 의심	☐ 나쁨		
	4	비만	☐ 해당없음	☐ 약간	☐ 고도		

3. 대상자 환경적 여건

구분			항목별표시	참고가능한 도구	의견 등 비고
가 구 환 경 여 건	1	돌봄 대상	☐ 중증장애인 ☐ 환자 ☐ 영유아 ☐ 저학년 ☐ 노부모 ☐ 해당없음		
	2	돌봄필요시간	☐ 상관없음 ☐ 한시적케어 ☐ 24시간 케어		
	3	근무가능시간	☐ 8시간이상 ☐ 8시간 ☐ 파트타임 ☐ 근로불가		
	4	신용불량	☐ 없음 ☐ 변제가능 ☐ 심각		
	5	가정내 폭력	☐ 양호 ☐ 의심 및 관찰요 ☐ 문제있어보임		
	6	가족구성원 중 알콜	☐ 없음 ☐ 있음		
	7	가족갈등	☐ 무 ☐ 유		
	8	가족 지지	☐ 상 ☐ 중 ☐ 하		
	9	주거	☐ 양호 ☐ 지원 필요		
	10	탈수급 필요성	☐ 낮음 ☐ 가능성 있음 ☐ 높음(자녀졸업 등 탈수급해야 할 필요가 높은 경우)		

4. 대상자 취업 여건				
구분			항목별표시	의견 등 비고
근로 여 건	1	학력	상 ☐ 고졸이상 중 ☐ 고퇴~중졸 하 ☐ 중중퇴 이하	
	2	근로경력	상 ☐ 최근3년내 경력 유 중 ☐ 단절(3년~5년이내) 하 ☐ 전무/5년이상 단절, 전무	
	3	기능, 기술	☐ 상 ☐ 중 ☐ 하	
	4	직업교육	☐ 유 ☐ 무	
	5	자격증	상 ☐ 희망직종 관련 자격증 유 중 ☐ 자격증 유 하 ☐ 자격증 무	
	6	전산능력	☐ 상 ☐ 중 ☐ 하	
	7	구직경험	☐ 없음 ☐ 있음	
	8	구직눈높이	☐ 양호 ☐ 조정필요	
	9	일자리긴박성	☐ 긴박하지 않음 ☐ 보통 ☐ 긴박함	

5. 고용복지 서비스 계획				
가. 구직욕구제고		목표:		
☐ 조건불이행시 제재 안내 ☐ 취업시 장점과 혜택 안내		☐ 방문상담을 통한지지 강화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의욕 제고 ☐ 롤모델제시·문제해결 상담을 통한 의욕 제고		
나. 근로여건조성 및 취업애로요소 제거		목표 :		
하위목표		실행계획(서비스 내용)		
1	☐ 질병치료 및 신체건강 개선	☐ 병원연계 ☐ 의료비 지원 ☐ 무료진료서비스 ☐ 간병서비스 ☐ 의약품 지원 ☐ 운동프로그램 연계 ☐ 건강관련 교육 연계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2	☐ 전문상담·심리 치료	☐ 전문상담 연계 ☐ 심리검사 치료 연계 ☐ 아동, 청소년 전문상담 연계 ☐ 아동치료프로그램 연계 ☐ ()	☐ EAP ☐ 청소년상담센터	
3	☐ 알콜치료	☐ 알콜상담기관 연계 ☐ 알콜 병의원 연계 ☐ 알콜 치료 지원 ☐ ()	☐ 알콜상담센터	
4	☐ 장애돌봄조건 개선	☐ 장애돌봄서비스 연계 ☐ ()	☐ 무한돌봄센터 ☐ 장애인복지관	
5	☐ 노인돌봄조건 개선	☐ 보호시설 연계 ☐ 간병서비스 연계 ☐ ()	☐ 무한돌봄센터 ☐ 노인복지관	
6	☐ 영유아, 아동 돌봄조건개선	☐ 아동보호시설연계 ☐ 아동치료서비스 ☐ 보육시설연계 ☐ 방과후시설 ☐ 베이비시터 ☐ ()	☐ 무한돌봄센터	
7	☐ 신용회복	☐ 채무조정상담연계 ☐ 법률 연계 ☐ 신용교육 ☐ 재무,경제 교육 ☐ ()	☐ 신용회복위원회	
8	☐ 주거안정	☐ 임대주택 ☐ 매입주택 ☐ 월세 지원 ☐ ()		
9	기타	☐ 긴급 생계비 지원 ☐		

참고2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1. 단기해결중심 상담의 개요

- 해결중심 단기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경험, 예외상황 등)을 활용하면서 대상자가 가진 문제의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는, 단기간 내에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상담 모델
- 그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바로 내담자 자신임을 강조함으로써 대상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해결방법을 발견하도록 지원함
- 이는 문제를 긍정적 관점으로 재 개념화하거나 문제에 대한 예외 상황 및 성공경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함

2. 해결중심 상담의 원리

- 대상자의 강점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해결중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담의 기본 원리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효과가 있다면 더 하라. 효과가 없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라.
 - 긍정적인 것, 해결책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때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촉진된다.
 - 문제를 정상적인 개념으로 재진술 할 때 문제 해결과 희망과 가능성이 열린다.
 - 상담자와 내담자는 모든 문제에서 예외를 찾아낼 수 있으며 예외를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 내담자의 변화 동기의 이해

- 사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치료의 효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치료자의 태도와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
- 또한, 내담자의 동기 수준,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변화를 가속시킴
- 내담자의 변화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음. 동기의 3가지 요소는 의지, 능력, 준비임
 - **의지(변화의 중요성):** 내담자가 기대하는 이상과 현재의 상태의 부조화가 심할 수록 변화의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함
 - * 예시 : 자식들이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해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봐 두렵기는 하다.
 - **능력(변화에 대한 자신감):**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으나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자신감이 없을 때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함
 - * 취업을 하고 싶지만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생활이 더 불안정해 질 거야.
 - **준비(중요성의 우선순위):** 변화하고자하는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지만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음
 - * 예 : 술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 변화 중요성과 변화 자신감 척도 질문 예

- “당신에게 취업 준비와 시도(취업 성공패키지 참여)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이고 10점은 아주 중요함을 나타낸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만약 당신이 취업 성공 패키지 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정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0점은 전혀 자신없음이고 10점은 자신 있음 일 때 당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변화 중요성과 변화 자신감의 두 차원에서 볼 때 여러 집단이 나올수 있다. 먼저 변화 중요성에 대한 지각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순서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양가감정 : 변화에 대한 딜레마

- “나는 원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가감정의 현상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예를 들면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
- 이러한 양가 감정은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기해결 상담은 이러한 사람들이 양가감정에서 빠져 나오도록 돕는 것
- 이러한 문제 중 두 가지 대안 중 갈등의 양 측면이 모두 다 이득이나 손실에 관련될 경우 한쪽을 택하고 싶다가도 다른 한쪽을 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됨
- 이때 결정의 결과를 저울로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정 저울표 예시 〉

계속적인 음주		금주	
이득	손실	이득	손실
기분이 편안해짐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음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자녀에게 나쁜 본보기 건강에 해롭다 돈낭비가 많다 정신력이 흐려진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인생의 낭비	가족갈등이 적어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증가 몸 컨디션이 좋음 돈문제 해결에 도움	짜릿함의 상실 술친구와 같이 어울릴 방법이 없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음

○ 대상자의 변화 단계 이해를 통한 개입

- 대상자들 마다 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요구됨
- 전속고 단계 :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반추해보거나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단계. 정보가 부족하여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 되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경제적 활동과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할 필요 있음.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수급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취업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숙고 단계 :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반추하고 고민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거나 고심하는 단계. 결정저울표의 활용 등을 통해, 참여자가 바람직한 변화에로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여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피드백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는 점에 대해 설득함
- 준비 단계 : 취업할 의사를 확인하고 첫 발을 내 딛는 단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1단계 참여로 연계
- 행동 단계 :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단계.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에의 의지를 높이며 바람직한 실천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
- 유지 단계 : 변화된 마음과 행동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단계.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을 해 나가는 단계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및 관리활동 제공

〈 내담자 변화의 단계와 개입활동 〉

변화의 단계	내담자의 상황		상담사의 활동
전숙고 (숙고 이전 단계)	변화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	취업할 의도와 의욕 없음	•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동기유발 • 취업서비스에 대해 안내
↓			
숙고	변화에 대해 생각	취업 의사가 있음을 인식함	• 대상자에게 개인 생활의 변화를 강화시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 필요성 강조
↓			
준비	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의욕 가지고 서비스에 동의	• 서비스 참여에 대한 연결 및 강화와 관리활동 실시
↓			
행동	변화 행동	참가 활동 수행	• 변화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 및 피드백
↓			
유지	변화행동의 유지	자립 및 취업에의 높아진 의지의 유지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구직 활동	• 자립 및 취업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지원 활동 지속 • 구직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제공 • 취업성공 이후에도 독려

○ 대상자와 상담사의 관계 유형 이해를 통한 접근

- 내담자와 상담사의 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내담자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내담자-상담자 관계 유형은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으로 구분 가능함
- 방문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방문형 내담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함
 - 깊게 생각하여 보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숙고 단계의 내담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
 - 내담자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내담자에게 의미있는 상담 목표를 재협상하는 것이 좋음

📁 방문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데 시간을 내서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00님께서도 현재 취업에 대한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 현재 00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게 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내담자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자신이 변화의 동기가 일어날지 탐색한다.
- 만약 내담자가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가족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당신의 딸에게 당신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물어본다면 딸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 불평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불평형 내담자의 경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문제 해결책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
- 불평형 내담자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의 변화, 사회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김
-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좌절 실망을 토로하면서 상담자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특성이 있음

📁 불평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린다.
- 내담자의 지각을 존중하면서 내담자의 초점을 문제 있는 타인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역할로 전환 시킨다.
- 내담자가 계속 문제 해결적인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상담자인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척도 질문을 사용하여 상담자의 문제 해결능력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내담자의 지각을 탐색한다.
-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하라. “당신이 상담자라면, 취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 고객형 내담자의 이해와 접근

- 고객형(클라이언트형)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내담자임.

📁 고객형 내담자에 대한 초기 반응의 예

-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잠재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활용하라. 만약 자신이 상담자라면 이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는지 물어보라.
- 상담을 통해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시도해 보았는지 물어본다.

4. 변화 동기유발 상담의 목표설정

○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파악하기

- 장기적인 취업 준비의 목표 아래, 참여자의 변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지어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목표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일 때 내담자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열중하게 됨
- “상담을 통해 당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의 질문을 통해 현재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장기적인 목표(취직 및 탈수급, 경제적 안정 등)와 연결되게 함

○ 상호작용적(관계성) 질문을 사용하기

-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을 언급할 때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을 언급하여 변화동기를 유발함
- 내담자 : “제가 일을 시작해도 적응하는 데에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 할거예요”
상담자 : “당신이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적응한다면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우게 될까요?”

○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환 :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에 관심두기

- 상담목표는 언어 상 긍정적인 형태, 즉 내담자가 무엇을 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거나 생각할 것인지 진술
- 내담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릴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그 대신에”라는 용어를 사용
- 예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뭔가 활력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반복적으로 참여자의 표현을 상담자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주거나, 참여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도록 연습시킴

○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가능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

- 목표가 내담자의 능력, 의지, 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달성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현실적인 목표는 동기를 높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함
- “00님께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00님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00님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00님의 가족이 00님이 일을 하게 되어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 목표수행을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기

- 변화는 한 순간에 쉽게 일어나기 보다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함
- 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내담자가 진전이 없는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 ② 빠른 진전을 보일 때 내담자의 자존심이 고양되고,
- ③ 변화의 책임이 내담자에게 있음을 즉,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담자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5. 변화를 위한 질문 기법

○ 첫 상담 전에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 질문하기

- 해결중심 상담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 상담 약속 후 첫 상담을 오기 전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단서가 됨

첫 상담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질문하기의 예

- “취업 성공 패키지 사전 단계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고 상담 약속을 정하신 뒤 선생님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요?”

○ 기적질문 활용하기

- 기적질문은 내담자의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해 보게 하는 것임. 내담자의 마음상태가 문제 중심의 집착에서 벗어나 해결중심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기적 질문의 예

- “제가 이제는 이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게 되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한 밤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고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상담을 받으러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내담자 : 활기차게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상담자 : 어떤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내담자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이가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했으면 해요

○ 예외질문 활용하기

- 예외란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 그리고 문제가 덜 심각했던 상황들을 의미함
- 어떠한 문제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 해결중심 상담의 기본 전제임
- 한 두 번의 중요한 예외를 찾아내어,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성공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줌
- 예외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러한 예외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보통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목함

- 예외에는 우연적인 예외와 의도적인 예외가 있음
- 우연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연적으로 발생했는지 관찰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예시 : 우연히 수업을 깎아 봤더니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던 예외 경험에 대해, 왜 우연히 수업을 깎게 되었는지 생각 및 관찰 해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내어 강화함
- 의도적인 예외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도록 하라는 행동과제를 제시함
예시 :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는데 돈이 부족하여 좋아하던 술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가족들도 좋아하고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긍정적인 예외 경험을 했다면, 계속하도록 행동과제를 제시
- 예외 질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외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구체적인 예외 경험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현재 또는 과거의 성공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내담자의 미래가 더 희망적 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음

📁 예외 질문의 예

-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든 때 말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의욕이 생겨났거나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지금처럼 계속 아프거나 힘든 때 말고요, 기분이 좋거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생각 드는 때가 있었나요?”

○ 척도 질문 활용하기

- 숫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의 심각도,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 순위, 성공가능성 등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질문하는 것임
- 척도질문을 활용하면,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격려하고 강화해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척도 질문의 예

상담자 : 0점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날이고 10점은 내가 무슨 일든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합시다. 오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내담자 : 오늘은 5점 정도요.

상담자 : 생각보다 높은데요? 0점과 5점의 차이는 뭘까요?

내담자 :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담 약속을 오기 위해 면도도 하고서 깔끔하게 길은 나서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딘가를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 : 0점일 때는 어떤데요?

내담자 : 늦게까지 자고 숙취 때문에 오전을 모두 멍하니 보내죠.

상담자 : 그럼 일단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무언가 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자신감을 주는군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5라고 보면 6으로 나아진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 대처질문 활용하기

- 대처 질문은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지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임

☞ 대처 질문의 예

- “그런 날들을 어떻게 견뎌 내셨나요?”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탱시켜왔던 작은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의 내적 자원과 대처방식을 깨닫게 된다. 이 작은 일을 근거로 앞으로 성공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수 있다.

-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대처해 올 수 있었습니까?”

-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와 끔찍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다. 상담자는 호기심과 진심으로 이 내담자의 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면의 용기와 자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하기

- 상담의 초기에 변화의 동기에 관한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면 내담자가 평상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내담자가 대답하는 동안, 내담자의 행동 패턴, 기분 변화 등의 이야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걱정거리 중 하나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변화의 동기를 유도함

○ 극단적 질문 활용하기

- 내담자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변화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
- 자신이나 주변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한 걱정애 대해 말하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
-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

📁 극단적 질문의 예

- “장기적으로 볼 때 취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변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럴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신이 이렇게 지낸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 과거 회상 질문 활용하기

- 내담자에게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을 회상하게 하여,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 보도록 하는 질문 방법
- 현재 상황에 비해 과거 상황이 좋았다면,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기회가 있음을 독려하여 동기 부여함

📁 **과거 회상하기 질문의 예**

-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 때와 비교해서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 “술에 빠지기 전에 당신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 때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10년 전과 지금의 당신의 모습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 “그 동안의 힘든 일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 **미래 예상 질문 활용하기**

- 변화된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도록 하는 질문 방법
- 자신이 변화했을 때와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 냄

📁 **미래 예상하기 질문의 예**

-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어떤 상황과 삶이 00년을 기다리게 하고 싶습니까?
- “당신이 변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10년 뒤 당신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담의 목적 : 변화동기 유발, 참여자의 강점과 자원 발견

상담과정	예시 질문	비고
참여자 유형 파악 및 관계 조성	- 오시기 힘들었을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나와 주셨으니 00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00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뭔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요?	상담 전 일어난 변화
	00님이 계속 지금처럼 지내시면, 00님 따님(아내, 부모)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같으세요? 따님은 00님이 혹시 취업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 할까요?	방문형
	- 그러면 제가 어떻게 00님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00님이 저라면, 00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불평형
	- 사전단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 전에 취업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보셨어요?	고객형
	00님은 사전단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 사전단계를 통해서 00님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00님이 오늘 여기에 간다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00님의 자녀(부모, 아내)는 00님이 어떻게 지내기를 바랄까요?	초기상담
	00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걱정하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 요술램프의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기적질문
변화동기 유발을 위한 질문 사용 (예시)	-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든 때 말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의욕이 생겨났거나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지금처럼 계속 아프거나 힘든 때 말고요, 기분이 좋거나 이만하면 행복하다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나요?	예외질문
	0에서부터 10까지에서 0은 가장 힘들 때이고 10은 문제가 다 해결된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몇 점입니까? 2에서 5점으로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척도질문
	-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 그렇게 버텼은 방법과 이유가 뭘까요? - 그때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대처질문
	-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3년 이후 즉, 몇 년 뒤를 생각해보면, 취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건 뭘까요? -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고 쳐봅시다. 만약 그러다가 지금보다 힘든 우리 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떠 올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금처럼 그대로 지내면 00님 자녀가 컸을 때, 부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는 뭘까요?	극단적 질문
	-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술에 빠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00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힘든 일 있기 전에 00님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지금 00님의 일상적인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회상 질문
	-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어떤 상황과 삶이 펼쳐지면 좋을까요? - 힘들지만 취업도 하고 저축도 하고 조금씩 내 삶을 다시 복구해나갔을 때, 몇 년 뒤쯤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은 00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미래예상 질문
	사전단계를 통해서 00님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 사전단계 동안 00님이 스스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최종상담
마무리	- 사전단계를 통해서 00님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 사전단계 동안 00님이 스스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최종상담

② [참여자 가이드]에 제시된 예시 질문을 활용한 단기해결중심상담

📁 들려주시겠어요?

-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데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 귀하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겠어요?

📁 궁금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 단계 안내를 받고 약속을 정한 뒤에
귀하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소하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 행복한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 만약,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나의 소원을 하나 들어 주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귀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알고 싶습니다.

- 어려운 상황과 힘든 날들을 어떻게 견뎌 내셨나요?
-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귀하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 행복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 10년 뒤, 어떤 삶이 귀하를 기다리게 하고 싶습니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추구하면, 그 삶이 10년 뒤에
울 수 있을까요?

③ 상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상담질의 응답지

- 다음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귀하가 먼저 생각하여 간단히 메모하여 오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틈틈이 시간 내어 생각하고 간단히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성명 [], 성별[], 연령[], 군필여부[필, 미필, 면제], 휴대폰번호[]

상담을 위한 질문사항	상담을 위한 주요 답변 내용
직장생활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없으시다면 직장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 찾아 보셨나요?)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일을 하셨습니까?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어떤 분야로 공부하고 경험을 가지셨나요?)	
현재 직장을 갖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의 습관적 행동 중 바꾸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 흡연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가족생활은 어떠하신지요? 가족생활 중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 무엇인가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참고3 과제이행 맞춤 상담

① “괜찮은 나” 발견하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2.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
3. 나의 인상, 외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4. 나의 마음씀씀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5. 힘들고 지쳐도 지금껏 버티고 살아온 나만의 힘!

② 일 경험 떠올려보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지금까지 해 본 일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2. 지금까지 해 본 일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3.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즐겁고 보람되다	
나와 안맞는다	
4. 일을 할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장점	
단점/아쉬운 점	

③ 내 삶의 보물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왜 나에게 소중한가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것은 나에게 이런 의미	
그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느낌	
3.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④ 관심 직업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1. 지금까지 내가 해 보았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 본 일	
그 일을 통해 갖춘 능력	
2.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로 도전 가능한 일	
배우고 자격을 따면 도전 가능한 일	

⑤ 내가 몰입하는 일 찾기

- 아래 항목을 간단히 작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내가 돈 안 벌고도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서 하는 일은?

내가 평소에 시간을 내어 자주 하는 활동은?

기존에 했던 일 중에서 잘 집중해서 했던 활동은?

참고4

롤모델(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1.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의 의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기집에는 취업을 하여 탈수급한 대상자 들의 성공 사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음
 - 참여자 수기에는 빈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감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과 탈수급에 대한 마음을 먹기까지의 고심의 과정이 담겨 있음
 -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신만 그와 같이 힘들고 끔직한 과정과 경험을 겪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빈곤의 상황을 극복하고 노력의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여 탈수급하거나 더 나은 삶을 준비하여 가고 있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사례를 제시 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끝나감
 - 자신의 경험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일수록 상담사가 자신의 경험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상담을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대상자의 관심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
- 자활 대상자가 구직과 탈수급에 대한 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의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과정 등이 담긴 사례를 확인 하도록 하고, 해당 사례의 공유를 통해 참여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함의를 얻도록 코칭 및 상담 제공
 - 수급상황에 있는 참여 대상자의 취업준비 및 취업성공 과정과 어려움 극복 사례 등을 통해 구직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제공

2. 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의 진행

- 참여 대상자가 취업성공 수기에 담긴 사례자를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 내용 공유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제적인 준비 등이 수반될 수 상담을 실시

- 사례 내용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생각의 교류와 공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타대상자와 함께 소수 그룹을 형성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 기존에 보급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능
 - 공유하기 위한 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대상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경우이거나, 대상자 보다 어려운 속성을 지닌 대상자의 수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
- 고용센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 수기가 담긴 책자가 배포되어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공식 홈페이지(www.work.go.kr/pkg) 에도 취업성공 수기가 일부 게시되어 있으므로 책자 및 유인물을 활용하여 제시 가능

■ 참가자 수기 1 ■ 이젠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김세영 님

스물한 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월세 단칸방에서 최소한의 살림살이들만 장만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로 맞벌이를 하다가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엔 들어갈 생각은 않고 집에서 놀기 일쑤였습니다. 불안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물다섯 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그나마 해봤던 사무직 일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질 않아 직장을 구한다는 건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은 밤까지 봐 주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저금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조그만 장난감도 사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내 나이 스물일곱 살, 큰아이의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의사선생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다리의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세상이 자꾸 흐려져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어찌면 울고 있는 시간도 내겐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큰아이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일을 못하는 대신 정부에서 90만 원 정도의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병원비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치료시간, 앞으로 2년만 더 치료 받아 완치된다면 우리 세 식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또 한 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큰아이는 재발 3개월 만에 우리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펴보지도 못한 꽃이었던 아이... 지켜 주지 못한 미안함에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2~3개월의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젠 2인 가족이고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취업을 빨리 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내게 둘째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큰아이는 내 가슴속에 넣어 두었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보자! 이제는 둘째 아이를 위해 살자.'

아이는 얼마 있으면 초등학생인데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학벌도 경력도 지식도 없는 내게 취업이란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상담도 받고 국비 지원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나중에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손해 볼 건 없겠다는 생각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물어보는 상담사님이 귀찮았지만 몇 번 얼굴을 뵈고 이야기를 나누니 금세 편안해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내가 더 상담사님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끝내고 내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지 상담사님들, 같이 교육을 받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던 교육이 왜 그리 아쉽고 짧게만 느껴지던지요. 아쉬운 마음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전산회계 2급을 배우러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다녔을 무렵 취업을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후 모의 면접을 토대로 여러 곳에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꿈만 같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지만 내게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건설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나도 이젠 어엿한 직장인!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겐 너무나 소중한 일터입니다.

취업 한 달 후 정부에서 주던 생계유지비가 끊긴다는 게 조금은 아까웠지만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로서 당당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은 취업 1개월이 지나자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벌써 3개월째 수당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직업 상담사님이 전화해 주시면서 안부도 묻고 취업성공수당도 신청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 * 김세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힘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참가자 수기 2 ■ 새로운 기회이자,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정찬호 님

현실은 냉정했고 어디에도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늘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취업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를 융통할 목적으로 아버님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은행에 저당 잡혀 대출을 받는 동안, 집은 자가 주택에서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속에서 저는 무던히도 방황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나이 마흔을 넘겼더군요. 아득해져 왔습니다. 방황하는 동안 친구들도 멀어져 갔고, 의논할 상대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어떤 개그맨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말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동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받았기에 차근차근 받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에게는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 마흔에 저는 그제야 방황을 접고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던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 나서지 않았을 뿐 관심을 갖고 절실하게 찾아보면 의외로 가까이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월수입이 작다는 현실을 파악한 후 국가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실직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워크넷을 통해 주로 장기 구직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일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곳은 기본급 120만 원 이상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업은 빨리 되지 않고, 생활비는 매달 들어가고, 빚은 늘어가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국비 지원 이외에 2010년에 새로 시작된 ‘계좌제’를 통해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제 처지와 현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던 직원은 저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자동차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달간 자동차 정비 중 외장관리 과목을 수료했습니다.

외장관리 과목을 수료 후 현재 평택공단에서 수입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곧 10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성공수당 역시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급자 생활에서도 당당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란 경험이 없거나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사람에게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체제가 자유와 의지를 구속받는 것 같아서 싫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해보니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 드릴 수 있고, 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난날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술직은 경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도 경력이 쌓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이제 저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경력을 쌓아서 지금보다 나은 수입으로 부모님의 빚도 갚고 작은 전세라도 얻어서 나이드신 부모님을 편히 모시는 일뿐입니다. 이 모두가 취업성공패키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직장이 곧 생활이고 생활은 삶의 바탕이 되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멋지고 품 나는 직장, 남에게 사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직장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위한 직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를 먹는 동안 저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꿈이란 나이 먹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나이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혹은 30대의 회사 동료이며 동생들이기도 한 그들은 이미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저는 일찍부터 그러한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몇 년도부터 생겨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기회였고 힘들 때 나를 이끌어 준 따뜻한 손이었습시다.

- * 정찬호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 나는 10년 뒤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 참가자 수기 3 ■ 취업성공으로, 예수부터 신바람 인생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심재영 님

남들은 예순이 넘으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쉴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의 생기가 되살아난 듯한 열정으로 환갑이 지난 나이에 산업 역군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 전자회사 디지털 센터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신바람 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해 본 일이라 서툴러서 같이 일하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객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동료나 선배, 직원들이 칭찬해 줍니다.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주차 대수가 8시간 기준 500대 이상이라 일할 적에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하루 일을 마감하고 나면 근로의 보람과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뿌듯한 기분과 충만감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 보냅니다. 허나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20대에 들어간 첫 직장에서 그 회사 직업훈련생으로 출발하여 성실한 근무로 중견 관리자까지 진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을 정도였고,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 한파에 허울 좋은 명예퇴직이란 꼬리표를 달고 25년간 다닌 정든 직장을 그만두었지요. 그때가 쉰 살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 요량으로 친구와 어울려 조그마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이 모르는 분야에 달려들었으니 몽땅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망해 버렸습니다. 돈 잃고 건강까지 잃은 저는 노숙자 처지만 안 되었을 뿐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했지요.

혼자 황량한 사막에 내던져진 심정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용센터에 들렀다가 워크넷 활용 방법을 터득했지요. 그러나 젊어서 하는 구직이 아니라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하는 구직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구직의 벽은 것처럼 철옹성 같았습니다.

이렇게 침체 일로에 빠진 저에게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얻듯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어느 날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담당자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선생님의 적성에 맞는 취업 활동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날 당장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취업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를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여러 취업 예비생들과 함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취업 회사 인사담당자와 대화하는 법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비록 나이가 많긴 하지만 제 적성이 뭔지, 저에게 맞는 구직처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잘 짜여진 교육이었습니다.

혼자 워크넷에서 찾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구직처가 프로그램 참여 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후 제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또 취약했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고 취업 지도 담당자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고 나니 답답하던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이때부터 구직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조차 제출해 보지 못하고 거절만 당하던 저에게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지가 온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점과 부족한 부분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저소득 실업자에게 적극 권합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말고는 없습니다. 나이 먹은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자괴감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면허 자격증이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모 전자회사의 주차 관리직 관리원 채용 공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이고 휴일은 쉬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라고 했습니다. 비록 급여는 적지만 나쁘지 않다고 저에게 설명하더군요. 저는 면접 후 곧바로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맞춤형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정 액수의 생활비를 보탬 수 있고, 일이 있어 즐겁고, 저소득층에게 버팀목이 되는 국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습니다.

* 심재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내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 참가자 수기 4 ■ ‘내가 뭘 할 수 있겠어’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집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중, 이지혁 님

저는 마흔세 살의 가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두 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불황으로 인해 수입물가와 원자재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건설사와 설비회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저도 10년 동안 운영하던 건축설비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건 물론 신용카드 연체에 대출금까지 연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지요. 은행 거래를 비롯해 모든 것이 다 정지되니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한동안 술로 상처를 달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눈물과 분노만으로 살아갈 순 없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의 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 버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회사를 운영할 때 맺은 인연으로 파이프 운반, 도색 등을 시작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에 힘에 부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어 손을 질 수 없었고, 허리와 등이 아파 온몸에 도배를 하듯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일당은 6만 원. 기술과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먼지를 들이마시며 일을 한 대가치고 너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일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해도 우리 네 가족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빚은 언제 갚고 이 불안한 신용 불량자의 굴레는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사 분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용접학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용접 학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배관 용접은 한 달에 300만 원, 두 달에 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였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던 중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고용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 결과,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과 취업을 꼭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으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전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을 목표로 하기에 딱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300만 원의 계좌비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 더욱더 힘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남 김해에 있는 용접 학원으로 내려가 두 달 동안 고용센터에서 주신 300만 원 계좌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손을 다치고 가슴 부위에는 심한 화상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나를 믿고 주는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눈물 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배관 용접 두 달 과정을 끝내고 특급 용접사는 아니지만 준기량자는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워크넷 취업 사이트를 보고 평택 소재 산업용 밸브 제조 회사에 들어가 처음으로 용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타던 날, 뜨거운 눈물과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 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신용 불량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모두 추억이고 과거일 뿐이다, 이제 내 앞에는 탄탄한 미래와 희망이 있다, 당장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제 나에게는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좌절과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고용센터에서 거금 100만 원을 보너스로 받기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간만에 행복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옆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보이면 먼저 취업을 하라고, 기술이 없어 취업이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가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알려 줍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에 조금의 거짓 없이 생생하게 알려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 뭘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길을 알려 주려고 하니깐요.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더 많은 기술을 배웠고, 더 좋은 조건으로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절망의 신용 불량자에서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니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이지혁님의 이야기에,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 지난 몇 달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무언가 변화를 바라던 때가 있었나요?

■ 참가자 수기 5 ■

* 가장 최근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수기입니다.
이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50세 윤민의 님, [나를 찾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중에서

저는 여성가장이며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꿈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매월 제가 적금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나라에서도 저축액의 최대 6배까지 일정액을 넣어 주어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미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동안 굴레처럼 따라 다녔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길이였습니다.

몇 년 후 조그마한 반찬가게를 열어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나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 58세 김영자 님, [베이비붐 세대의 고뇌, 우리가족을 실업자의 눈에서 탈출하게 해준 희망취업성공패키지] 중에서

내일배움카드는 내게 큰 꿈을 갖게 해주었다. 우선 컴퓨터 학원에 등록부터 했다. 나이 든 사람을 초보부터 가르쳐 주는 컴퓨터 학원도 흔치는 않았다. “OA컴퓨터 활용, 사무 자동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통하여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이 해 내기란 쉬운 과정들이 아니었다. 2시간, 3시간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꼭 해내고 싶어 컴퓨터와 씨름하였다. 어깨가 아파 와서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의 도전은 계속 되었다.

내 돈도 아니고 국비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는 나는 대충할 수가 없었다. 어느 직장이고 이력서를 낼 때 마다 주눅 들었던 컴퓨터도 이제 당당히 해내고 싶었다. 하루 2~3시간 학원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도 또 복습에 복습을 해보곤 했다.

• 35세 이수지 님, [35세 인생, 비로소 삶에 웃음의 날개를 달다] 중에서

한 번의 자신감이, 아니 가족의 도움이, 더 많은 욕심을 내게 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일지 않았다. 오전엔 회계 배우고 오후엔 운전면허학원도 다니고 밤엔

사무자동화 실기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매일 매일을 보냈다.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내가 쌓고 싶은 쌓아야 할 스펙들은 늘기만 했다. 3월엔 운전면허, 4월엔 회계자격증, 5월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두 취득하였을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아니 나에게도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는 3개월이 짧게만 느껴졌다.

• 19세 성유리 님, [겨울의 시림을 지나 봄을 만나다] 중에서

생각해보면 사고를 치긴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불량청소년', '문제아' 저를 따라붙는 수식어였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뺏고 때리고, 담배도 피며... 제 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분노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가시나요? 하루가 1,440분인데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도 안하던 제가 690분 동안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해봤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지만 두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 더욱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했던 애가 하루 60분도 아닌 690분이라는 수업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오늘은 쉬고 내일 가서 잘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안을 스스로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대면 친구들이 "너 되게 많이 변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훈련을 들어갈 때부터 훈련시간이 길어서 걱정해 주었던 상담사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끝을 본건 제 인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해냈다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게, 가족들 앞에 더이상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는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잘못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 48세 한지희 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에서

아직 전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고, 두 딸 시집도 보내야 하고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만일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많은 것들과 친해져야 한다. 인내심은 당신의 소중한 친구로, 경험은 친절환 상담자로, 신중함은 당신의 형으로, 희망은 늘 곁에서 지켜주는 부모님처럼 친해야 한다"는 글귀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보다 더 삶이 힘든 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 48세 유현진 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구직의 반은 성공이다] 중에서

늘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미래 계획을 저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놀랍고 뿌듯합니다. 이제 입사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전에는 탈수급을 두려워 했지만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제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천직이 생겼으니까요.

참고5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 목표 :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능력을 파악한다. 그림을 통해 자존감이 낮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대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왜 그러한지 이유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며 취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며 상담을 제공한다.

○ 준비물 및 방법 :

① A4용지, 연필, 지우개를 제시하고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 지시문 :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② 내담자의 질문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림 모양이나 크기, 위치, 방법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주어서는 안된다.

③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해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 진단 및 해석기준

- 빗속의 사람 그림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보는 것이다.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은 여느 사람 그리기 검사에서처럼 자화상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비는 어떠한 외부적 곤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주제화는 그린 사람의 자기개념을 알아 볼 수 있고,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만큼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그림 속의 인물이 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추측할 수 있다. 그려진 그림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불쾌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방어기제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심적 역량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해석 기준>

- 그림 속에 그림 사람: 자아 (자아 존중감 및 자아개념,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 태도 등)

- 비 : 외부적 곤란이나 스트레스 상황
- 그림 속 사람이 비를 대처하는 방법: 대상자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정도

- 사람을 영성하게 그린 경우 : 자존감이 낮다.(자신에 대해 왜 불만족스러운지 묻는다)
- 빗방울이 굵고 비의 양이 많다 : 스트레스 심하다.(무엇(가족, 돈 등)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 묻는다)



- 우산을 잘 받쳐 들고 있거나 비옷을 입고 있다 :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경우
-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경우

-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가만히 비를 맞고 있다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스트레스에 그냥 노출된 채로 체념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인 채, 혹은 술 등으로 잊으려고만 노력하는 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어떻게 하면 나의 힘든 점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한다)

* 최의선 외(2006)의 자료를 수정보완함

출처 : 최의선 외(2006). 미술치료기법. 서울 : 학지사.

참고6 강점진단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1.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a)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1	2	3	4	5
b) 쉽게 싫증을 낸다.*	1	2	3	4	5
2. 학구열					
a)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율을 느낀다.	1	2	3	4	5
b)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1	2	3	4	5
3.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a)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매우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1	2	3	4	5
b)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창의성, 독창성, 실천성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a)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한다.	1	2	3	4	5
b)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5. 사회성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a)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둔하다.*	1	2	3	4	5
6. 예견력					
a)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1	2	3	4	5
b)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7. 호연지기와 용감함					
a) 강력한 반대로 무릅쓰고 내 주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1	2	3	4	5
b)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1	2	3	4	5
8. 끈기, 성실, 근면					
a)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b) 일을 할 때면 단전을 피운다.*	1	2	3	4	5
9. 지조, 진실, 정직					
a)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	2	3	4	5
b) 친구들은 내게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 없다.*	1	2	3	4	5
10. 친절과 아량					
a)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11.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a) 본인의 기분과 행복 못지않게 내 기분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b)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1	2	3	4	5
12.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 정신, 충성심					
a)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b)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다.	1	2	3	4	5
13. 공정성과 평등 정신					
a)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1	2	3	4	5
b)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14. 지도력					
a)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록 이끌어준다.	1	2	3	4	5
b)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1	2	3	4	5
15. 자기통제력					
a) 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1	2	3	4	5
b) 다이어트를 오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16. 사려, 신중함, 조심성					
a)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b)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7. 겸손과 겸양					
a)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1	2	3	4	5
b) 스스로 한 일을 치켜세우는 편이다.*	1	2	3	4	5
18. 감상력					
a)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스포츠, 과학, 수학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전율한 적이 있다.	1	2	3	4	5
b) 평소에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1	2	3	4	5
19. 감사					
a)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1	2	3	4	5
b)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a)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1	2	3	4	5
b)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24가지 대표 강점	나와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다	보통 이다	나와 비슷하다	나와 매우 비슷하다
21.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a)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1	2	3	4	5
b) 사명감이 없다.*	1	2	3	4	5
22. 용서와 연민					
a)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1	2	3	4	5
b)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23. 명랑함과 유머 감각					
a)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1	2	3	4	5
b)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1	2	3	4	5
24. 신명, 열정, 열광					
a) 무슨 일을 하든 전력투구한다.	1	2	3	4	5
b)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1	2	3	4	5

<강점진단 활용>

1. 목적 : 자존감 및 의욕 강화,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활용
2. 진단 : 각 영역별로 응답한 내용이 모두 회색 부분(4점 또는 5점,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역산척도로 1점 또는 2점에 해당)에 들어가 있는 경우, 참여자의 최상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각 영역별 8~10점이면 그 사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점수가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5~7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 참여자의 강점으로 제시.
3. 활용 :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하며 효능감도 낮은 참여자에게, 강점진단을 실시하여 강점을 발견하여 주고 동기를 강화하는 상담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참여자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시켜주어 자존감을 높여주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원출처 : <https://www.viame.org/survey>

〈 참고 : 24가지 대표 강점의 의미와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예시 〉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색다른 것들에 끌리는 마음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운다.
2. 학구열		
배움과 탐구에 대한 열의와 정열		새로운 지식에 대해 배운다.
3.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각		자기 성찰(반성)을 통해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배운다.
4. 창의성, 독창성, 실천성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색다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구현하는 풍부한 상상력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
5. 사회성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다른 이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이해한다.
6. 예견력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통찰력 있게 판단하여 현명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예측과 결과를 비교한다.
7. 호연지기와 용감함		
개인적인 어려움에 당당히 마주하고 도전하는 능력		평소 두려움 때문에 행하진 못했던 일에 도전한다.
8. 끈기, 성실, 근면		
쉽게 단념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성스럽고 참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9. 지조, 진실, 정직		
약속을 지키고 정해진 규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거짓된 표정과 말투를 수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 감정을 표현한다.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0. 친절과 아량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이를 대할 때 항상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 운전을 할 때, 항상 보행자를 생각하고 양보를 생활화 한다.
11.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그 마음을 편지로 표현 한다.
12. 시민정신, 의무감, 협동 정신, 충성심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공중도덕(신호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인사 잘하기 등)을 잘 지키고,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
13. 공정성과 평등 정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 공정과 평등에 원칙에 따라 대하는 것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14. 지도력		
조직의 성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힘		사고 모임을 만들고 그 조직을 이끌어 본다.
15. 자기통제력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정해진 목표를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16. 사려, 신중함, 조심성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말이나 행동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고 행동한다.
17. 겸손과 겸양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행동하는 것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에 대해 칭찬한다.

24가지 대표 강점	정의	개발 방법 (예시)
18. 감상력		
사물이나 행위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		여행이나 예술품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느낀다.
19. 감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항상 주변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인사한다.
20. 희망, 낙관주의 미래지향성		
미래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찾는다.
21. 영성, 목적의식, 신념, 신앙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매일 생각, 기도하고 명상한다.
22. 용서와 연민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		자신의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길 나누거나 용서 편지를 쓴다.
23. 명랑함과 유머 감각		
유쾌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이에게 웃음을 주는 것		유머 섞인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한다.
24. 신명, 열정, 열광		
매 순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행동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정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자 갈망한다.

참고7 심리정서상태진단·상담

①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지난 1주 동안 자신이 느끼는 각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아주 조 금/전혀	약간	보통	많음	아주 많음	합산
1	재미있다	1	2	3	4	5	PA 1~10번까지의 체크점수 합산
2	민첩하다	1	2	3	4	5	
3	흥분된다	1	2	3	4	5	
4	고무된다	1	2	3	4	5	
5	자신있다	1	2	3	4	5	
6	단호하다	1	2	3	4	5	
7	주의깊다	1	2	3	4	5	
8	의욕이 솟는다	1	2	3	4	5	
9	활기차다	1	2	3	4	5	
10	자랑스럽다	1	2	3	4	5	
11	짜증스럽다	1	2	3	4	5	NA 11~20번까지의 체크점수 합산
12	고통스럽다	1	2	3	4	5	
13	부끄럽다	1	2	3	4	5	
14	혼란스럽다	1	2	3	4	5	
15	초조하다	1	2	3	4	5	
16	죄책감이 든다	1	2	3	4	5	
17	겁난다	1	2	3	4	5	
18	적개심이 든다	1	2	3	4	5	
19	긴장된다	1	2	3	4	5	
20	두렵다	1	2	3	4	5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서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커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부정적 태도가 참여자의 취업애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활용하여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부정 정서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입한다.
부정 정서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우울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안정상담 등의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
- 해석 : PA영역의 합산 점수는 긍정정서 점수이다. (10점~50점 사이)
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
NA영역의 합산 점수는 부정정서 점수이다. (10점~50점 사이)
50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정서가 높은 상황(40점 이상이면 매우 부정적)

원출처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국내출처 : 우문식(2014). 행복 4.0. 물푸레.

②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최근 3개월간 당신의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이다. 잘 읽고 해당번호에 표시(V, O)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간	전혀 그렇지않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확실히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비교적 주저함이 없이 서로 대화하는 편이다	0	1	2	3
2.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잘 푸는 편이다	0	1	2	3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	0	1	2	3
4. 우리 가족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잘 이해하는 편이다	0	1	2	3
5. 가족 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있다	0	1	2	3
6. 가족 간에 물건을 부수는 일이 있다	0	1	2	3
7. 가족 간에 흉기(칼, 송곳, 병)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있다	0	1	2	3
8. 가족 간에 손이나 발, 다리 등으로 때리는 일이 있다	0	1	2	3
9. 가족 간에 심하게 때려 한쪽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한 일이 있다	0	1	2	3
10. 가족의 의식주 등 경제와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0	1	2	3
11. 가족 중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	0	1	2	3
12. 자녀교육비와 양육 등에 있어 부담이 크다	0	1	2	3
13. 가족으로 인해 여가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할 여유가 없다	0	1	2	3
14. 가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0	1	2	3

<가족관계 및 스트레스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가족의사소통¹⁾, 가정폭력²⁾, 가족부담³⁾에 대한 기초평가용.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파악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애로요소 중 하나가 가족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가족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0또는 1에 체크한 경우 가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0 또는 1로 체크한 항목에 대해 참여자와 심층상담을 나누어 가족 문제 중 어떤 부분을 해결하도록 지원하여야 취업의 걸림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점수합을 해당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 산출(0-3 채점)

→ 0-1미만 : 전혀 아님, 1-1.5미만 : '낮은' 수준

1.5-2.5미만 : '보통' 수준

2.5이상 : '높은' 수준

② 가족의사소통 : 1-4번 문항

가정폭력 : 5-9문항

가족부담 : 10-14문항

- 기타 : 진단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 두 문항만 질문하여 상담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의사소통 - 2번문항, 가정폭력 - 8번문항, 가족부담 - 14번문항으로 변별질문 가능

1)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최은영(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용분(1999). 정신분열병환자 가족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③ 사회정서적 고독감

* 아래 문항은 현재 삶에서(지난 2주 동안) 느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느끼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보통 그렇다
1.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이 느낀다.	0	1	2	3
2.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두렵다.	0	1	2	3
3. 나는 배우자가 없는 것 같이 느낀다.	0	1	2	3
4. 내가 나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친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0	1	2	3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	1	2	3
6.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	1	2	3
7. 나는 이해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0	1	2	3
8.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	0	1	2	3
9. 외로움을 느낀다.	0	1	2	3
10.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11. 오늘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12.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0	1	2	3
13.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0	1	2	3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안당할까 봐 두렵게 느껴진다.	0	1	2	3
15. 나는 나를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0	1	2	3

<사회정서적 고독감 척도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사회정서적 고독감의 진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애로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기술 향상,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향상이나 대화법, 사회적응력 향상 등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대인간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문화 스포츠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연계)에 참가하도록 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최대값 45점)
2점과 3점에 주로 체크되어 있어 합산이 30점 이상이면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출처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57-270.

국내출처 : 김미령(2005). 여성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90-111.

④ 우울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7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3	2	1	0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3	2	1	0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3	2	1	0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3	2	1	0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점수 합계	점			

<우울 척도(CES-D)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서적 불안 및 우울증의 판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애로요소 중 하나가 우울증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패턴이나 습관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도록 하며(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운동, 식습관, 절주, 금연, 외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집 밖을 자주 나오는 등의 사회활동을 넓히는 것, 노래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등),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며 심층 상담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참여자가 걱정을 느끼는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생활패턴(취업을 통한 소득형성을 포함한)을 갖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실시 및 채점요령 :
 -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증상 의심(Radloff, 1977)
 - 21점 이상일 경우 우울상태(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학조사, 21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원출처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국내출처 : 배성우, 신원식(2005). CES-D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⑤ 자아존중감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장들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표 하세요.

문항 내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정말 아니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2.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4	3	2	1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3	2	1
5. 나는 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3	2	1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	3	2	1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3	2	1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자아존중감 진단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판단.
- 활용 : 참여자의 취업애로요소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상될 때, 변화를 위한 촉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 어떤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대해 상담을 통해 경감하거나 해소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강점진단상담의 활용이나, 일상적인 상담시 칭찬 등의 빈번한 활용 등을 통해 자존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 해석 : 29점 이하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고, 15점 이하인 경우 자존감이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출처 : Rosenberg, M. (1965a).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65b). The Self-Esteem Scale.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320-325.

국내출처 : 황미구, 김은주(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 존중감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⑥ 심리적 웰빙(행복감)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이 옳으면 그래도 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내 자신이 판단이 중요하다.	1	2	3	4	5
4.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1	2	3	4	5
5.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만족한다.	1	2	3	4	5
6.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5	4	3	2	1
7.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	1	2	3	4	5
8.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9.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지 않다.*	5	4	3	2	1
10.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1	2	3	4	5
11. 나는 그날그날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5	4	3	2	1
12. 현재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1	2	3	4	5
13. 매일 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5	4	3	2	1
14. 전반적으로 나는 계획성 있게 사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1	2	3	4	5
16.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5	4	3	2	1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가깝거나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다.*	5	4	3	2	1
합산	총점: 점				

<심리적 웰빙 진단의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 수준의 판단.
- 활용 : 참여자가 현재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취업을 한다면 행복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며 상담을 나누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범주로 합산 점수가 나올 경우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 상담을 먼저 실시하여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행복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취업을 하여 자립한다면 그 행복이 더욱 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여 취업의욕을 높인다.
- 해석 : 72점 이상인 경우 심리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
 71~54점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
 53점 이하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편
 36점 이하 심리적 행복감이 매우 낮은 편

원출처 : Keyes, C. L. M. & Ryff, C. D.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p. 227-263).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국내출처 : 안정신(2005). 중·노년기 미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 전 생애 발달과정의 부모 자녀 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참고8 생활패턴진단·상담

① 일반건강척도(GHQ)

다음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아래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번호에 표시(V, O)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확실히 그렇다	소계
1. 무엇을 하든지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4	3	2	1	A. 1~7번 합산점수 _____점
2. 자신이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3.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할수 있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4. 힘든 일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까?	4	3	2	1	
5.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까?	4	3	2	1	
6.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한다고 느꼈습니까?	4	3	2	1	
7. 자신이 일을 수행해온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3	2	1	
8. 걱정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까?	1	2	3	4	B. 8~16번 합산점수 _____점
9.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0.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1.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2. 자신감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3.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1	2	3	4	
14. 매사에 한꺼번에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1	2	3	4	
15. 초조감이나 긴장감을 항상 느꼈습니까?	1	2	3	4	
16. 때로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7.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까?	1	2	3	4	-
18. 모든 점에 있어 상당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1	2	3	4	-
합계	C. 총점 _____점				
19. 하루동안 피는 평균 담배개비수는? ()개					
20. 흡연 년수 : ()년					
21. 1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음주하는가? ()번					
22. 평균 음주양은? ()병					
23. 음주년수 : ()년					

<일반건강척도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는 신체생리적 측정이 포함되지 않은 자기보고식 진단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 활용 :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GHQ는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사회생활 부적응, 불안과 우울 등을 평가한다. 참여자 특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해석
 - A영역의 점수(1~7번 합산) : 사회생활 부적응
23이상 : 높은 편, 18~22점 : 보통, 17이하 : 낮은 편
 - B영역의 점수(8~16번 합산) : 불안과 우울
29이상 : 높은 편, 23~28점 : 보통, 18이하 : 낮은 편
 - C영역의 점수(1~18번 합산) :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45이하 : 높은 편, 46~55점 : 보통, 56이상 : 낮은 편
 - 19번 이하의 문항은 GHQ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문항으로, 19~23번 문항을 작성하도록 한 결과, 음주, 우울증 문제가 의심되는 참여자는 알코올의존도, 우울증진단 등을 추가 활용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원출처 : D. P. Goldberg and V. F. Hillier(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1), 139-145.

국내출처 : 남정자, 최정수(1993).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1 :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② 알코올의존도 진단(NAST)

평소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V또는 O해주세요.

1. 자기 연민(슬픔)에 빠지며 술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그렇다 (), 아니다 ()
2.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 아니다 ()
3. 술 마신 다음날은 해장술을 마신다?	그렇다 (), 아니다 ()
4. 취기가 오르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 아니다 ()
5.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다?	그렇다 (), 아니다 ()
6.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7.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그렇다 (), 아니다 ()
8. 술로 인해 직업기능에 상당한 손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9. 술로 인해 배우자가 나를 떠났거나 떠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 아니다 ()
10. 술이 깨면 진땀, 손 떨림이나 불안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그렇다 (), 아니다 ()
11.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12. 술로 인해 생긴 문제(골절, 창상)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 (), 아니다 ()

<알코올의존도(NAST)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알코올 의존도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알코올 의존인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인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해석 : ‘그렇다’에 체크한 개수를 점수로 산정함
 - 3점 이상 : (그렇다 3개 이상) 알코올 의존일 가능성이 높음.
 - 4점 이상 : (그렇다 4개 이상)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볼 수 있음.
 - 9점 이상 : (그렇다 9개 이상) 알코올 중독 의심. 전문 진단 필요.
- * 특히 불안이나 공포 등 금단증상을 나타내는 10번, 11번 문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문항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함.

③ 알코올의존도 평가(AUDIT-K)

다음은 알코올 의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입니다. 다음 각 문항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대답에 “O”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나오는 1잔이란 술의 종류와 관계 없이 1잔의 양을 의미합니다.

질문	0점	1점	2점	3점	4점
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전혀 마시지 않는다	☐ 월1회 이하	☐ 월1회	☐ 1주일에 2~3회	☐ 1주일에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잔 정도나 마십니까?	☐ 1~2잔	☐ 3~4잔	☐ 5~6잔	☐ 7~9잔	☐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 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6.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 월1회 미만	☐ 월1회	☐ 1주일에 1회	☐ 매일 같이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 지난 1년내 있었다
10.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 지난 1년내 있었다

<알코올의존도(AUDIT-K) 진단 활용>

- 목적 : 참여자의 알코올 의존도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
- 활용 : 알코올 의존인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인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AUDIT-K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이 손쉽게 자가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른 대처전략을 제시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석 : 합산 총점을 계산함

구분	남성 점수	여성 점수
정상 음주군	0~9	0~5
위험 음주군	10~19	6~9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20~40	10~40

출처 :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파랑새포럼 www.naam.or.kr

Ⅱ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1. 의 의

- 1단계에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기술을 익힌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 등 IAP 이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 2단계 시작일 : IAP 수립 다음 날
 - 단, 패키지Ⅱ 유형 참여자 중 1단계 후 2~4주간의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는 취업알선서비스 2회 제공한 이후 2단계 이동 처리일을 2단계 시작일로 봄
- 2단계는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핵심과정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의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참여자 취업역량 및 취업희망 직종, 참여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청년인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장년인턴), 창업 등의 프로그램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고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④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 ⑤ 청년인턴제 및 청년창직인턴제 운영 지침
 - ⑥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사업(장년인턴) 운영지침
 - ⑦ 중소기업청 창업 관련 지침
 - ⑧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지침
 - ⑨ 지방자치단체 및 타 부처 직업훈련 관련 지침

2. 직업훈련과의 연계

2.1. 기본 원칙

- **(훈련 상담)** 고용센터 패키지 담당자가 훈련상담을 병행하며,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직업훈련으로 연계
 - 민간위탁 참여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훈련참여 추천서를 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 적정성 판단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 ※ 민간위탁 참여자가 훈련을 희망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서식 19)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안내)** 최초상담 또는 직업훈련 상담시 훈련일수 및 결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함을 안내
 -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관련 지침』 내용 참조
- **(훈련 종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다음에 한함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③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④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⑤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⑧ 청년취업아카데미 ⑨ 장년 및 청년인턴(해외인턴 포함) ⑩ 고용디딤돌일자리 ⑪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비인정) 훈련과정 ⑫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⑬ 기타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 부담 일반 학원수강 포함)
 - ※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임에 유의(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등 재직자 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자 카드 발급 가능)

○ (훈련 기간) 2단계 기간(최장 8개월) 중 최장 6개월

- 훈련기간 산정시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8개월) 기간 산정시 새로운 과정 참여시까지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총 수강과정이 3개(인터넷 원격훈련 1회 및 훈련 1회 추가 수강 포함시 총 5회) 이하이고, 마지막 훈련과정이 2단계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작하는 과정에 한해서 해당 훈련과정까지 참여 허용(이 경우에도 실제 훈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단계 훈련가능 기간(6개월)과 훈련참여수당 지급기간(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다름에 유의

※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최장 6개월 간 지급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해당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참여 허용(최초 1개의 훈련과정에 한함)되며 다른 훈련과정은 수강 불가

※ 2단계 기간(8개월) 경과 후에도 훈련을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하고 일반 계좌)로 전환 후 수강 가능



참고 : IAP 수립일 이전 개강한 훈련과정 참여 가능 여부

- 직업훈련은 1단계 상담결과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진행이 결정되고, 그 후 훈련 직종 및 과정 탐색을 통해 실제 훈련 참여가 가능하므로 IAP 수립일 이후 개강하는 훈련 과정 참여가 원칙임

- 다만, 부득이한 사정(1개월 이내에 동일·유사 훈련과정이 개설되지 않거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훈련기관의 훈련만 있거나, 자격증 시험 일정상 신속한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IAP수립일 이전 개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4조」의 훈련생 등록기간 내이고,
- ②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이 가능한 경우이고, ③ 초기상담 후 최소 2회 이상 1단계 상담이 정상적으로 진행 경우

- 이때,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및 지급단위기간 산정은 참여자가 훈련과정에 등록한 날이 아니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시작한 날 이고, 훈련개시일 부터 훈련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포함된 소정훈련일수는 단위기간 내 출석률 산정시 결석으로 산정됨에 유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43호, 2016.3.3. 질의회시 참조)

- **(훈련 기간의 특례)** 청년층(만 34세 미만 I·II유형 참여자) 및 장년층(만 65세 이상 I·II유형 참여자)의 경우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 **(훈련 간 중복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자치단체 훈련과정에 한하여 동일기간 내 2개 이상 동시수강을 허용(1일 8시간 한도 내)
 - ※ 계좌발급횟수는 훈련횟수로 산정(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12조제3항)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180일 이상 취·창업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수강 가능(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3호)하므로 1개의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1회만 수강 가능함에 유의(일반직종훈련과정을 2회 이상 수강하거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함께 수강하는 것은 가능)
- **(위탁기관과 훈련기관 간 MOU)** 패키지 위탁기관과 훈련기관이 본부 담당부서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참여자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이는,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해 2단계 진행이 필요한 참여자의 취업 희망 직종을 고려한 적정 훈련상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MOU 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탁기관이 특정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 모집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참여자 몰아주기 등) 행위 금지
 - 위탁기관과 훈련기관 간 MOU 체결 및 참여자 몰아주기 등의 사례 발견 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 주의조치하고 직업능력개발부서에 통지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15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계좌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처리하되, 고시·지침 등 개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계좌발급 신청일 현재 유효한 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 **(개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나 전략산업, 그 밖에 산업인력 수요 증가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부록 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별표1 참조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은 계좌 잔여금액 보유시에는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전액 면제)

- **(훈련대상자 선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전문계, 이공계 친화적 제조업 중심의 훈련이고, 3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참여자의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참고 : 고교·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에 대한 계좌발급 가능 여부

- ⇒ 고3 재학생은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비진학 예정으로 소속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 일반고 특화과정은 일반고 3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되,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강하는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및 기타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3 재학생은 계좌한도 내에서만 훈련비 전액 지원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계좌발급대상

- **(훈련참여 기간)**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기간까지 참여 허용(원칙 1개 과정)
 - 훈련과정이 짧아 2개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인정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수강 및 자치단체 훈련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동시 수강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패키지 담당자(민간위탁 참여자는 센터 위탁기관 담당자 또는 직업훈련 담당자)는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개설일자, 모집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적합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포함)
- **(유의 사항)** 계좌사용 중지 및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부지급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계좌발급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유의사항’ 참조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 **(개 념)**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로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훈련대상자 선정)**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 선정
 - 카드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IAP 수립 직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카드 발급절차,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 훈련비 등의 지급·정산을 위해 계좌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 필요
- 계좌카드는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 다만, 농협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만 등록 가능하고, 신한 체크카드는 제휴된 4개 금융기관(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의 계좌에 한하여 연계 가능
- 카드사로 전송된 정보 및 카드발급 신청 사실 여부를 카드사에서 유선으로 대상자 본인에게 확인(카드사, TM 실시)
- 카드발급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카드발급 의뢰에서 수령까지 2주 정도 소요
- 계좌카드 발급 후 6개월간 훈련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좌사용이 중지됨을 반드시 안내(『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2조에 따른 계좌발급 횟수에 포함)
 - * 계좌중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재발급 시 계좌 지원한도의 50%만 부여

- 180일 이상 취·창업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①'05.7월 전까지 실업자훈련 3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회를 모두 수강하였거나 ②'05.7월~'14.12월까지의 ▲ 실업자훈련 실시횟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횟수, ▲ 계좌 발급횟수 및 '15.1월 이후의 통합계좌 발급횟수가 총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자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좌 재발급 불가

- 계좌카드 발급 의뢰 전에 훈련대상자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등 연락처, 주소를 구직자에게 재확인*

* 연락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이 지연되어 훈련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

- 훈련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및 훈련계획 수립 전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hrd.go.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본인 아이디로 접속 (로그인)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토록 안내

○ (카드 한도) 패키지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 차등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3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200만원

○ (자비부담) 패키지 I 유형의 경우 직종별 취업률 35% 이상인 과정은 자비부담 면제, 직종별 취업률 35% 미만인 과정은 10% 자비부담, 패키지 II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5~50% 자비 부담

* 취업률에 따른 직종군별 지원율

구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군별 지원				
	취업률 70% 이상	취업률 70~55%이상	취업률 55~45%이상	취업률 44~35%이상	취업률 35%미만
일반실업자	95%~90%		70%	50%	20%
II 유형			80%	70%	50%
I 유형	100%			90%	

*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한 후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그 밖의 사항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참조

○ (훈련참여 기간)

- 패키지 I·II : 최장 6개월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간까지 허용(최초 훈련 1개 과정에 한함)
- 최장 허용 훈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좌(한도 200만원, 자부담 적용)로 전환한 후 가능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과정 수 제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수는 3개로 제한하되 단,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하여 1회 추가 참여 가능

* 일반훈련 2회 + 인터넷 원격훈련 2회, 일반훈련 3회 + 인터넷 원격훈련 1회, 인터넷 원격 훈련만 4회 참여 가능

- 성실하게 훈련을 수강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거친 경우 훈련 1회 추가 수강 가능(인터넷 원격훈련은 제외)
-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훈련과정 수 증가시 과정수 제한 미적용

○ (직업훈련과정 변경) 훈련과정 변경은 2회에 한하여 가능

※ 훈련과정 변경횟수 산정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9호, 2016.12.30. 개정, 2017.1.1. 시행)(부록 13) 제5조제6항 및 「훈련과정 변경 횟수 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인적자원개발과-310, '16. 1.16)(부록 16) 참조

<훈련과정 변경횟수 제외사유>

- ①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모집인원 부족 등 훈련기관 사정으로 해당과정이 폐강(또는 일정 연기)되어 훈련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② 모집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및 훈련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③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기간을 달리하여 그 내용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④ 실시규정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좌 유효기간 정지 결정 시 해당기간 종료 후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훈련과정을 변경·입력하는 경우
- ⑤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훈련과정 변경횟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가능한 경우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수강 중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정, 자치단체 훈련은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동시 수강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훈련과정 만족도와 훈련내용 이해 등 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을 요청하여 과정변경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카드발급 관련 조치사항)** 카드사에 전산상으로 「계좌카드 발급의뢰」 조치

- 계좌카드 발급의뢰일 기준 10일 전후로 대상자에 대한 TM 실시 여부 등 카드발급 상황을 카드사에 확인

- 카드 미 발급 사유 해당 여부와 보완 필요사항 등을 확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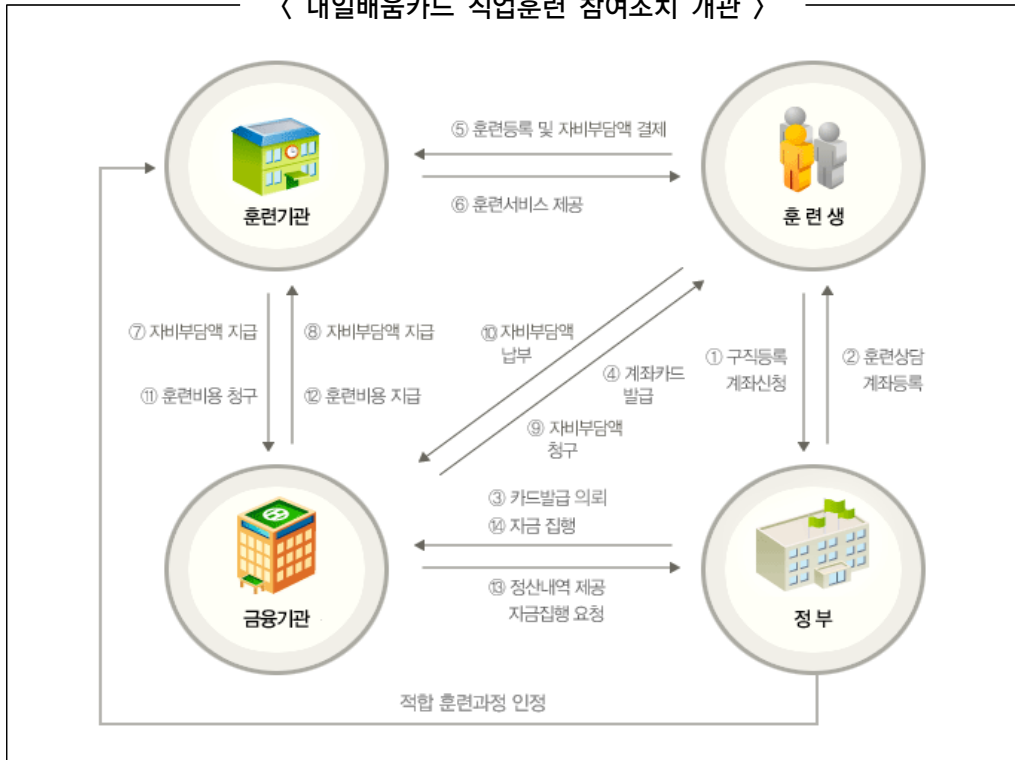


참고 : 금융거래제한으로 예금계좌 사용 또는 신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거래제한조치 등으로 ▲HRD-Net에 예금계좌 등록이 되지 않거나 ▲직업능력개발계좌(체크카드) 발급과정에서 제후금융기관(농협,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등 조치(다만, 동 확인서는 농협·신한은행에서만 유효)

* 「금융거래제한자 등에 대한 계좌발급 등 업무처리지침(인적자원개발과-1688, '15.7.22)」 참조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조치 개관 〉



- **(유의 사항)** 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반드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부록 13) 및 「훈련참여 희망자에 대한 업무지침(부록 14)」 참조

- i) **(계좌의 사용중지)** 계좌를 발급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됨

- ❶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 ❷ 대리 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출석처리한 경우
- 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5일이상 계속하여 결석하여 제적된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여 제적된 경우
-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여 제적된 경우
-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으로서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훈련생을 제적한 경우

④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등록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시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화상담으로 계좌의 유효기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음

ii) **(계좌의 재발급)** 계좌 사용중지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횟수 3회 범위에서 계좌 재발급 가능. 다만, i)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계좌 지원한도를 50% 감액하여

iii) **(동일과정 재수강 합리적 제한)** 훈련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과정 재수강 제한

- 출산, 상병, 학습능력부족 등의 사유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가능(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 제출 및 훈련상담 필요)

iv) **(수강평 입력)**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식비, 교통비)이 부지급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수강평 미입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v) **(기타)** 내일배움카드 취득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이 기재된 개인훈련계획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안내

※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참조(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요령 】

- ① 이미 일반 직업능력개발계좌(200만원 한도, 자부담 30~50%)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좌 전환 가능*
- * HRD-Net에서 처리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HRD-Net 실업자훈련 행정지원시스템 담당) 공문 조치 요청
 - 이 경우 기 발급된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1년) 내에서 패키지 I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한도(300만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용 가능
 - ※ (예시) 먼저 일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한 A가 패키지 I에 참여시 잔여 8개월간 250만원 사용 가능
 - 다만, 이미 발급된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만료 후 패키지 I에 참여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한도는 신규 참여자와 동일하게 지급(300만원)하나, 패키지 I 참여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 훈련 수강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 중인 과정을 종료(종도탈락 포함)한 이후 전환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

- | |
|---|
| ○ 일반계좌 발급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좌 유효기간 내 패키지 I 참여시 3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 ○ 패키지 I 계좌 발급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유효기간 내 일반계좌로 사용하려는 경우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 >

- | |
|---|
| ○ 일반계좌 발급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유효기간 내 패키지 II 참여 시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 ○ 패키지 II 계좌 발급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유효기간 내 일반계좌로 사용하려는 경우 200만원(기 지원받은 훈련비 차감) |

- ②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상담을 통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참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 ③ 패키지 사업 대상자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중단,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처리 되었으나 취·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계좌발급일로부터 1년)내 계좌잔액의 범위로서 계속 지원 가능(단, 일반실업자의 훈련비 자비부담율 적용됨에 유의)

2.3. 폴리텍대학 훈련

- **(개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능사과정, 베이비부머훈련, 경력단절여성훈련 등을 말함
 - **(훈련대상자 선정 및 모집)**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중심 2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 한국폴리텍대학 훈련과정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폴리텍대학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 1단계 참여에 필요한 1개월을 감안하여 참여자 모집
 - ▶ 기능사과정 입학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으로 학력제한 없음
 - ▶ 베이비부머훈련 입학자격 : 만 45세 이상~62세 이하의 중장년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 * 저소득층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중장년층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 경력단절여성훈련 입학자격 :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의지가 높은 여성 등
- ※ 상기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모집계획에 따라 별도의 자체 전형이 있음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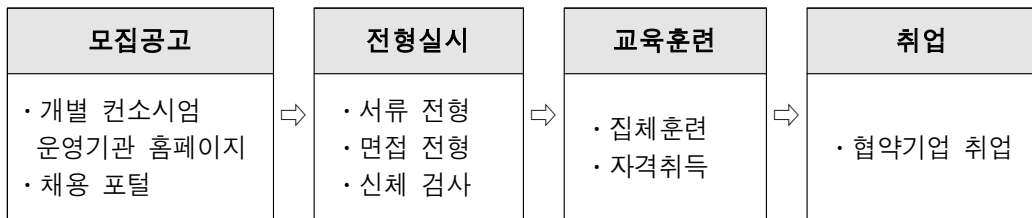
〈 폴리텍대학 양성훈련 종류 〉

구분	대상	비고
기능사 훈련	만 15세 이상 구직자	3~12개월
베이비부머 훈련	만 45세 이상~62세 이하의 중장년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2개월 이상
경력단절여성 훈련	경력단절여성	2개월 이상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개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훈련실시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컨소시엄 협약기업 채용예정인 자
- **(훈련방법·훈련과정정보)**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을 실시하며, 개별 훈련 과정정보는 해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또는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 방법 〉



- **(훈련생 지원내용)** 훈련생의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사업주(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공동훈련센터)에 월 20만원까지 지원
 -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는 1일 11,04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월 276,000원)까지 지원

2.5.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미인정훈련과정)

- **(개요)**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지역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타부처 또는 자치단체 등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훈련과정이거나,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훈련 과정을 의미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정보 수집 및 공유)

- 인증훈련기관의 미승인 훈련과정 정보수집 : 6개청(2개 대표지청 포함)에서는 소속 지청을 통해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타부처, 자치단체, 대학 등 타 기관의 요청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 * 훈련정보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개강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비 지원여부 등
 - * 미승인 훈련과정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HRD-net 시스템 개편 추진('17.상반기 완료 예상) → 시스템 개편 완료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정보수집
- 정보공유·제공 : 6개청(2개 대표지청 포함)에서는 취합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속 지청에 공유하고, 각 지청에서는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공유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 다양한 훈련정보 제공

2.6. 청년취업아카데미

- (개요)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와 일반고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 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이하 "창직과정"이라고 함)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
-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위탁기관
- (훈련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자로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 (훈련시간 등) 장기과정의 경우 600시간 내외, 일반과정은 300시간 내외

2.7.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적극 안내

- 실직자 등이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안내(세부내용은 부록 6 참조)

- ▶ **(지원조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4주(28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간소득3,000만원 미만), 전직 실업자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중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
- ▶ **(지원내용)** ▲1천만원 한도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대부금액 결정,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대부금리(연이율 1%)

3. 장년인턴 등 연계

- 50세 이상 장년층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장년 취업 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도 장년 취업인턴제 사업시행 지침」 참조

4.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K-Move 스쿨, 해외인턴 및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계

* 해외취업 참여자가 K-Move 스쿨의 훈련을 받을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해외취업자(인턴 포함)가 해외 구인처에 취업한 경우 출국시 취업으로 인정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도 해외취업 사업 지침」 참조

- 청년희망재단, KOTRA,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 대한 해외취업 연계

* 기관별 프로그램 : ▲(청년희망재단) 청년 글로벌 보부상,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실리콘벨리 진출 프로젝트 등 ▲(KOTRA) ODA 해외인턴 등

5. 창업 지원 연계

5.1. 개 요

- 참여대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예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서비스

- ① 서울혁신센터 : 민간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용
 - 9개 특화센터(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등)를 지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
 - M&A 등 전문분야 전담부서 설치 및 컨설팅 강화
- ② 경기혁신센터 :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집중 지원
 - Pre-acceleration 프로그램 지원확대, 글로벌 현지화를 위한 상호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미국, 유럽 등의 관련 기관) 운영 등
 - IoT, 핀테크 등 우수 아이템 발굴, 전담기업(KT)과의 사업화 매칭 확대
- ③ 대구혁신센터 : 미래기술분야 창업 거점 구축
 - 미래기술(VR 등) 분야의 창업 거점화 →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센터 졸업 기업에 대한 데스벨리 극복지원 프로그램 신설 · 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운영(지자체, 타부처 지원 창업과정 포함)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6개 지역본부, 58개 지역센터) ☎ 1588-5302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홈페이지(<http://www.sbiz.or.kr>)를 방문하여 확인 후 안내

〈 '17년 소상공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명	지원대상	시간	인원	교육내용
소상공인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분야 예비창업자	이론(150시간), 점포체험(16주), 개인별 멘토링	450명	유망 아이템 분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문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신사업 사업화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과정당 60시간 이론·실습 교육	1,500명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모두 교육생 자부담 없음

5.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유관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 창업교육 일정 등에 따라 운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서식 18) 2부를 출력하여 1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창업교육 관련 유관기관에 송부
-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후, 해당자의 창업지원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
- 창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
 -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내지 자치단체 등의 창업 자금 지원제도(참고자료) 안내

5.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를 유관기관에 팩스로 송부한 후, 추천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추천자의 창업교육 불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통보 협조를 요청

6.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6.1.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의의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실한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6.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 ①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여자
- ② 창업교육 참여자(단, 동 업무매뉴얼 II. 5.창업지원연계대상자에 한함)
-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
 -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자 수당지급 처리요령】

-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 ▶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 * 30일 미만 단기 훈련과정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훈련과정 등록 가능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 ⑤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 ⑥ K-Move 스쿨 훈련 참여자

⑦ 인문계특화과정 훈련참여자 및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생

- *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생에 대한 훈련참여수당 지원 시작시기, 수당액,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예정

⑧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미인정 과정) 참여자

- 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34세 이하 청년(I 유형 및 II유형)으로 별도의 훈련비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 훈련비 액수와 무관하게 훈련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부지급
- 지원 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 타부처, 자치단체, 대학 등 타 기관의 요청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미인정 과정)
 - * 다만,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9호) 제15조 4항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제외
- 최소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기준 :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
 - * 출결관리확인 및 수당지급일자 및 금액 등에 대한 판단은 훈련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출석부(서식 44 참고)를 기준으로 함

□ 부지급 대상자

① (취업자)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자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수당 지급
 - ※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수당 지급
-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성패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제공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참고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판단

⇒ 초기상담일부터 기산하여 주3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연속해서 2회가 되거나 또는 (연속해서가 아니더라도) 4주간 2회 이상 있을 경우

- ② (생계급여수급자 등)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수급자(단,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③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416천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 다만, 특정 요건(3회 이상 참여 등)에 해당되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
- ④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 참여자)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월 20~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개정 2013.7.1.)
 - 단,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과정*은 훈련참여지원 수당 지급
 - * 서울강서 캠퍼스의 실내디자인, 봉제, 전자출판, 전통조리, 김제 캠퍼스의 수자원관리 과정 등은 지급
- 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은 기관에 따라 20~30만원 수당을 지급하므로 훈련참여 지원수당 부지급(개정 2013.7.1.)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도 부지급
- ⑥ (양성훈련 참여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및 숙식비(월 최대 212,500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지급(개정 2012.4.2.)
-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각 훈련과정마다 5~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⑧ (한국폴리텍대학 비예산 직업훈련) 각 훈련과정마다 5~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⑨ 타 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 참여자

6.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최대금액 200,000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 *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훈련생은 116,000원을 한도로 지원예정(추후 별도지침 시달 예정)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포함)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18,000원을 지급, 월 최대 금액은 284,000원

6.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 수당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으로 6개월까지 지급**
 - 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지원 유예 처리된 경우, 6개월 기간 산정시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개시일
부터 훈련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훈련일수는 단위기간 내 출석률
산정시 결석으로 산정

6.5.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1조 등)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
 - ※ 1일 소정 훈련시간 중 지각·조퇴·외출로 당해 과정 훈련시간 50% 이상을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 훈련수강 포기 후 미출석일은 결석일로 처리
 - 훈련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기준, 월 최대 284,000원 한도, 80% 이상 출석여부 불문)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 이외의 사유인 경우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출석일수 인정기준(부록 9)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출석률 산정)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횟수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 산정
 -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함

6.6.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 지각, 조퇴, 외출은 수당지급일수 산정시 수당지급일로 처리
-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한 날의 지급인정일수 산정시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되, 1개 과정 이상 참석(지각, 조퇴, 외출은 출석으로 간주)한 경우 수당지급일로 인정

-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을 모두 출석하였더라도 수당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다수의 과정 중복 수강 중 1개 과정을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과정이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정에 대해 지급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 수강시 지급인정 여부 판단 예시】

* 당일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시 판단 예시임

①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에 참여한 경우

A과정	출석	출석	결석	결석	지각	지각	출석	지각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결석	조퇴	결석	지각	지각	조퇴	결석
지급여부	○	○	○	×	○	○	○	○	○	×

② 각기 날을 달리하여 수강한 경우

A과정	출석		결석		지각		출석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지각		출석
지급여부	○	1 ○	×	×	○	○	○	○	○	○

6.7.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

- (최초 수당)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2회차 이후 수당)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
 - 다만,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은 최초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해당 훈련과정의 총 훈련일수에 따라 구분 조치
- (최종 회차 수당)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 종료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 포함)를 방문하여 취업상담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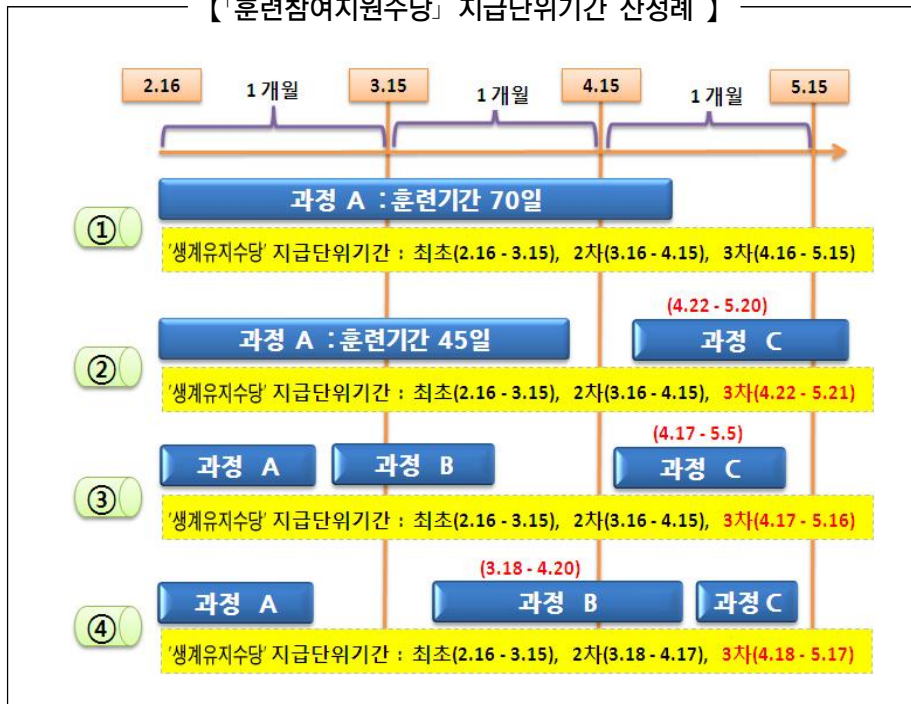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중·장기 과정>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을 연속적으로 산정·판단
-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근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을 산정·판단

<훈련과정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과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새로운 훈련과정 참여일로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례】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수당 지급 허용
-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준용

○ 월별 일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취지(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동 수당은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절차

- 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대비 참여 실적은 HRD-Net에서 확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아닌 훈련 또는 창업교육 등은 출석부를 제출받아 확인)

※ [서식 20]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참조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확인순서】 ❶ 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❷ 직업훈련일수 등 참여대상자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청·장년층(패키지Ⅱ 유형)에 대해서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고, 향후 취업시 환급함을 안내

6.8.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Hrd-Net을 통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중 대상자의 참여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외 대상자의 참여 실적, 미수료 횟수 등 확인
- 특히,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후,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관련 기산시점에 유의

□ 여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조건부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일 준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신청시점 등 관련 사항 안내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시점 등을 정확히 안내
- 참여대상자의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당시 훈련과정 참여여부를 감안하여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판단기준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HRD-Net에서 출결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 지급
- 단, 내일배움카드제가 아닌 타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부 사본을 제출받아 수당 지급

7.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7.1. 2016년도 참여자가 이월된 경우 지침 적용

- 2016년도에 초기상담한 자가 2017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6년도 지침을 적용
 - * 2017년 초기상담자부터 2017년 지침 적용

7.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7.3.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 사업 참여 문의 및 1단계 과정 운용단계에서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단위기간 산정원칙을 정확히 안내·설명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자(직업훈련 참여자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고용센터 지원인력을 적극 활용)
 - 최초 훈련과정 참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경과 시,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빠른 시일내 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소멸시효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산정

7.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 환수 조치

Ⅲ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1. 3단계 연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 집중 취업알선이란 취업성공패키지의 1~2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3개월간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1단계 종료 이후,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취업알선과는 차이가 있음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 (취업지원의 마지막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늠자로서의 의미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평가기준) 집중 취업알선의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 과정의 중요성 존재
- (IAP의 타당성 평가과정) 집중 취업알선은 개인별 취업경로인 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존재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실시 결과, 2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발굴·알선
- (동행면접 실시) 일반적인 취업알선과의 개념적 차이를 감안하여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에 대한 희망의사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행면접 실시
 - *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제공 횟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월 2회 이상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월 1회 이상 취업알선 필수 제공

* 모의면접, 이력서 컨설팅, 구직기술 제공 등

- (취업알선 실시기간) 집중 취업알선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성공패키지의 전체적인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탄력적 운용

i) IAP 수립 시, 1단계 후 바로 3단계 과정 참여자로 설정된 자

⇒ 취업알선을 위한 3단계 최초 방문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을 종료

* 3단계 최초 상담은 1단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하되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7일 이내 방문상담일정을 잡았으나 참여자의 사정으로 방문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선상담으로 대체 가능

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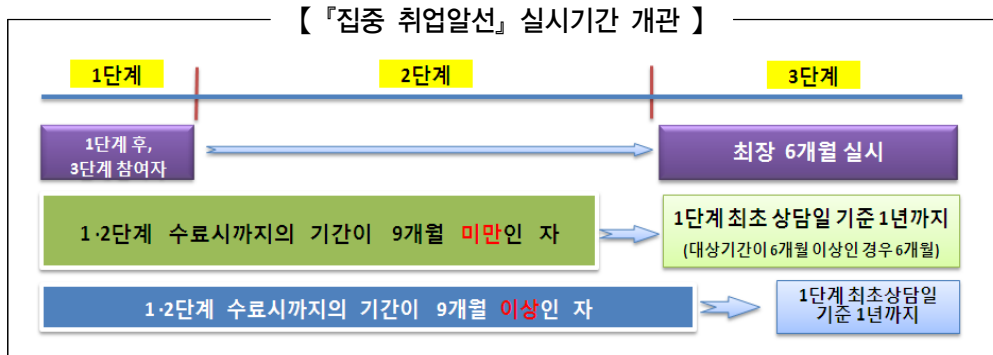
⇒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실시하되, 취업알선 기간이 6개월 초과 시에는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 종료

i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 (원칙)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지원 종료

⇒ (예외) 참여자가 9개월 이상 훈련(간호조무사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3개월간 실시한 후 지원 종료

*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업지원 가능



- (취업알선 실시기간 특례)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및 청년층(I,Ⅱ유형 모두 해당, 만 34세 이하)에 한하여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3단계 취업알선 기간 3개월 포함 최장 6개월 한도) 지원 가능
- 또한, 참여당시 재학생의 경우 취업지원특례로 1단계 초기상담일로 부터 최대 12개월(졸업일자가 포함되는 월의 말일 한도)이 되는 시점까지 3단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가능
- * 취업알선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1.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 (1단계 완료자) 1단계 종료자 중 취업역량 등이 우수한 참여자로 2단계 없이 3단계로 경로설정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종료 후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2단계 완료자) IAP에 따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정 종료 이후에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다만, 2단계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실시
- * 집중 취업알선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집중 취업알선 실시
- (2단계 재 실시자) 3단계 최초 상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 2단계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상담을 통해 IAP변경 후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단계 과정 종료 후 다시 집중 취업알선 실시(3단계 운영기간은 6개월 한도)

- 다만, 3개월 이상 3단계를 진행하게 되는 참여자가 최초 상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2단계로 단계 전환 불가
- 따라서, 3단계 최초 상담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 2단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상담(대면 또는 유선)을 실시하고, 2단계 참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2단계로 전환이 불가함을 참여자에게 반드시 안내한 후 적극적으로 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2단계로의 과정 운용 】

- **(원칙)** 3단계 중 2단계 참여자에 대한 3단계 운용은 전체 취업지원 기간의 원칙적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허용
 - ⇒ ① 1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② 1단계 → 2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 전산 시스템 : IAP 변경 조치 및 상담내역 입력 조치
- **(예외)** 대상자의 취업의지나 프로그램 참여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이 초과되더라도 단계별 과정의 탄력적 운용 허용
 - 이 경우에도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내로 한정되나,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이상도 가능

1.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단계 또는 2단계를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1단계를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IAP 수립 당일, 관련 직업정보와 집중 취업알선 실시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별도 상담일을 지정하여 실시
 - 2단계 과정 참여자는 종료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실시를 위한 초기상담일을 지정·통지한 후 초기상담 실시
- ※ 초기상담은 해당과정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초기상담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 동안의 개략적인 진행절차와 실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취업알선을 받고자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직업선호도, 직업적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취업알선 전략을 수립·공유

□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 집중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희망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적극 탐색
 - 워크넷 상의 구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구인정보 제공 시에는 사전에 직접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인여부'를 최종 확인·조치
- 구인정보 제공과 동시에 대상자의 면접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동행면접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동행면접 적극 실시
 - 가급적 면접에 임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기법 등을 다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
 -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면접일시를 정하고, 면접일 전에 면접당일 준비사항 안내 및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모의면담을 실시

□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동안 4주 단위로 참여자의 구직활동 사실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방향 등을 보완 내지 재설정하고, 참여자와 이를 공유(4주 단위로 확인)
 - ※ 확인의 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병행하되, 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월 1회 이상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하도록 유도
- 참여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 추진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1.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 집중 취업알선은 취업성공패키지의 결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공유될 필요

□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중 적정 구인처 알선을 통한 취업이라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취업을 향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노력임
 - 형식적인 구인정보 제공보다는 본인의 취업성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늘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 집중 취업알선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참여자 스스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가능성 증대
 - 따라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등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
 -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지정·실시

1.7. 취업알선 기간 중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급

- 고용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 대해 실비(월 1회, 2만원) 지급
 - * 지급한도 : 최대 3회(총 6만원 한도). 단 3단계 최초 상담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지급방법 :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 지급(지급 횟수 1회)
 - * I, II 유형 참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3단계 수당지급 방법 예시 】

- (원칙) 3단계 최초상담 일자를 수당지급 단위기간 산정의 초일로 하여 역월 상 1개월을 산정하되, 최초 상담일자는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지급 대상일자에서는 제외함
 ⇒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지급(지급횟수 1회)
- (예시) 3단계 시작일자가 7.14일인 참여자가 7.14, 8.13, 8.14, 9.10, 9.14일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 3단계 수당지급 방법

지급단위기간	방문상담일	수당지급인정일	수당지급액
7.14-8.13	7.14, 8.13	8.13	20,000
8.14-9.13	8.14, 9.10	8.14, 9.10	20,000
9.14-10.13	9.14	9.14	20,000

1.8.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관련 고시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대상자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IAP 수립)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대상자로서 종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2015.1.15. 일부개정)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주가 2017년 6월 30일 이전 고용한 경우 종전 고시에 의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적용 가능(경과조치)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범위에서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대상자는 제외되었음. 단, II유형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에 유의

- 지원내용 : 720만원(연간 지원 총액)

-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알선에 도움이 되므로 안내

※ I 유형(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현행 유지하되, II유형에 대해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지원 변경

- 참여자의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계속 유지할 필요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관련 지침 참조)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
 -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으로서 ① 취성패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자, ② 취성패 II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취성패 참여자가 청년공제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채용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를 신청(워크넷 및 중진공 홈페이지)하여야 함.
 - 따라서, 고용센터 취성패 담당자와 취성패 운영기관은 취성패 참여청년에 대하여 1단계 과정 중(IAP 수립전) 반드시 청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 실시
 - 또한, 청년이 알선 외 직접 취업시에도 채용기업이 확정되면 운영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해당 기업에게도 청년공제를 적극 홍보하여 신청기한 내 가입 유도
 -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채용(전환)과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청년공제 가입신청(온라인 청약신청) 해야 함

1.10. 장년인턴 제도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IAP수립) 및 2단계를 이수한 참여자가 3단계(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장년인턴제에 참여할 경우 정규직 전환시 취업으로 종료

2.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2.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 (**취업유인기제**) 취업성공패키지 I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으로서 이들의 취업의욕 제고는 취업성공과 직결되는 기본 전제조건인 바, 취업성공수당은 이들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 (**근속유도기제**)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방식 설계에 따라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근속유도기제로서도 기능

2.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로서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패키지 I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

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3·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을 3·6·12개월 단위로 전환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개편

□ 취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 (근로조건) 주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속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단서

〈장애유형 및 등급〉

등급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유형		1	2	3	4	5	6	7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국가유공장애인								

※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 장애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 장애인 3급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팔(어깨 또는 손 포함)에 장애가 있는 지체 3급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10.1.1부터 호흡기, 간질(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중증인정 범위 확대

※ '11.8.21부터 안면장애 5급(확대)

※ '14.6.30부터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지방보훈지청장 등이 발급하는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3. **중증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체장애 3급에 한함)**
 ▶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단서를 제출하여야 중증으로 인정

- 또한,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7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부록 18)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 다만, 일모아시스템에 실시간 등록되지 않는 점에 유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자로서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라 함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근로 등(개별 사례 판단 필요)

③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

○ (근속기간)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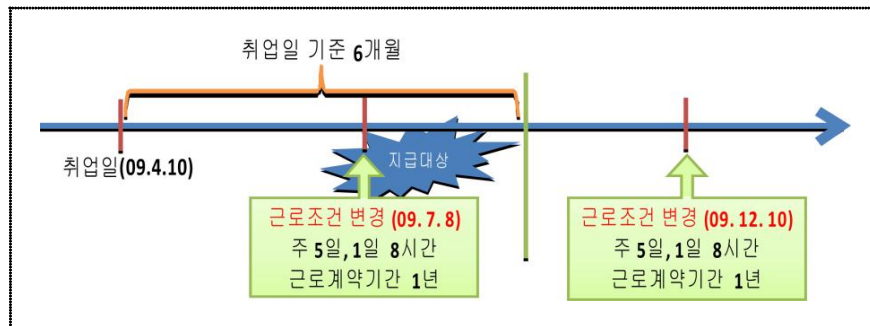
- 다만, 참여자가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으나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유관기준 ① : 이직 前 직장 취업 】

- (기본원칙)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예외적 제외기준)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이직』은 최후 이직
 - * 최후 이직 이전의 직장에서의 취업은 일반적인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 적용
 - ②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직장』은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장
 - * 동일 기업(사업)내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봄
 - ③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취업시점』이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취업
- (확인방법) 참여자 본인,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체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
 - ① (참여자에게 확인) 참여자로부터 취업사실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참여자에게 당해 사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유무 및 근무기간 등을 확인
 - ②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당해 사업체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인지 여부 및 근무기간 확인
 - ③ (사업체 관계자에게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체 관계자에게 참여자의 당해 사업체 근무 여부 및 근속기간 등 확인

【 유관기준 ② :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

- (기본원칙)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제한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 이때, 취업은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최초 취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직도 포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근속기간 기산점)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취업 성공수당 지급 관련 근속기간 산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후속조치) 근로조건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 사실 통지서(서식 30)」를 제출하도록 함

②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①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②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간만료일 등)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
 -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 * IAP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날인 경우, IAP 수립 이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유관기준 ①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

- (기본원칙) 사업참여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으로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
- (인정기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직에 의한 취업(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전제)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① 이직시기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이직
 - ② 이직횟수 : 첫 번째 이직
- (인정기준 준용)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로서 퇴사일(이직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상기 원칙 준용
 - * 퇴사와 동시에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 * 이직일 이후 재취업 전 「**재개신청서(서식 24)**」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통지서(서식 31)**」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 재개처리가 불가한 사후관리기간에는 동 규정 적용 제외

③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음

④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 취업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 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⑤ 지급요건 5 : 피보험자격 취득

- 고용보험시스템 상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시 함께 제출받아 피보험자격취득 업무처리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여도 무방함

-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에라도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근속기간에 따라 3·6·12개월에 30·40·8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3·6·12개월 후에 확인된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 7개월에 확인된 경우 30만원+40만원=70만원을 일괄지급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라도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 창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업종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 관련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①확인가능성 및 ②제도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추가 지정 시 별도 통보)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

①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 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②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부록 10 참조)

-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같이 건물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자산을 투자하여 구입한 차량을 활용한 경우에도 점포로 인정

②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은 참여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 *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영세자영업자 참여자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소 분류간 추가·전환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③ 지급요건 3 : 사업장 시설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

④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행한 자에 한하여 지급(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 구매 등 매입액도 인정 가능)

⑤ 지급요건 5 : 창업시점은 취업한 자의 취업시점 준용

※ 부록 [10] 「인터넷·무점포 창업」 참조

※ 부록 [11] 「1인 창조기업」 개관」 참조



창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1> 1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2> 2차·3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신청서, ②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종만 제출

※ 매출 및 매입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2.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수당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 절차 등을 준용

○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1회차 30만원, 2회차 40만원, 3회차 80만원
 -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4개월째	7개월째	13개월째
취업	30만원	40만원	80만원

- ※ 창업의 경우 취업일 대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2~3회차는 1회차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서식 21) 및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서식 22)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3(6·12)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확인 방법

- ① (취업 및 근속사실)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확인
- ②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내용 등을 통해 확인
- ③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1차 지급시 확인된 사항은 2·3차 지급시 별도 서류 징구 금지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 ❶ 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❷ 취(창)업시점 및 취업경로 등 요건 충족 여부
→ 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확인

※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1> 1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3·6·12개월 근속여부는 반드시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확인
 - 다만, 고용보험상 신고 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대장 등을 통해 확인

<2> 2차·3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속기간,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급

2.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취업장려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회차 30만원만 지원
- 다만, 거주보호기간(5년)이 종료되었거나, 취업장려금 모두를 기 수령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3회차까지 지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내용 문의 :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또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대상자인 경우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2.6.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 임신·출산, 부상·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이 경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해당 대상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취업성공수당 대상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 당해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등

- 한편,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 합산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약속하고 채용서류 보완 및 고용형태 변경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직, 재입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라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근속 유도라는 취업성공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2.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특히, 취업일부터 3·6·12개월 근속을 전제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근속’사실 여부 확인에 유의
-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서 제출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3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3.1.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상담,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제반 지원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취업으로 종료되는 경우 패키지 전산망 외 워크넷 채용마감도 함께 종료 처리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구직신청 마감처리 시 워크넷의 팝업문구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입니다. 패키지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서 먼저 마감 후 취업알선 시스템에서 마감처리 해야 합니다. 마감처리하시겠습니까?

3.2. 이월 참여자에 대한 적용

- 2016년 초기상당한 자로서 2017년으로 이월된 경우 2016년도 지침을 적용
 - * 2017년 초기상당자부터 2017년 지침 적용

3.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서식 22)를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하도록 사업참여기간 중 수시로 안내
 - 특히, 집중 취업알선기간 중에는 참여자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시 관련 사실을 재차 안내
- 아울러, 취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가급적 기한내 제출하도록 재차 안내
 - 만일, 1회 및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한 5일전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유선연락을 취하여 신청서 제출시한을 재 안내
 - * 신청서 제출 관련 사실을 안내받은 바 없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각별히 유의

3.4.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3.5. 취업성공수당 지급자에 대한 관리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적응 지원
 -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동안은 1~2주 간격으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장 생활 적응상황 등을 확인하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정하여 개별 면담 시행
 -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최소 월 1회 간격으로 유선연락을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나머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만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존속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아울러, 각종 경영기법 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 취업성공수당 지급 소멸시효
 - 취업성공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 부터 산정

3.6. 취업성공수당 환수

-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전액 환수 조치

3.7. 고교 재학생의 취업마감 처리

- 고등학교 재학생인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중 취업되었으나,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교육부에서 정한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후 회사 출근일을 학교 출석일로 대체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실습 기간은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간으로 간주
 - 다만,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는 졸업연도 1.1일 이후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는 경우 취업으로 마감 처리(워크넷 상 취업성공패키지 마감처리는 1.1일 이후 취업자로 처리 가능, 취업일자는 1.1일로 표기)하고, 1.1일부터 기산하여 취업 성공수당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가능

4.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협업을 통한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4.1. 인천시 : 청년사회진출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17~34세) 중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또는 이수후 취업자
- 지원 항목 및 규모
 - I 유형(저소득층): 구직활동비용(자격증 취득시 접수비용,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복장대여비) 3개월(최대 60만원) 4천명
 - II 유형: 취업성공수당 (1회 20만원), 3천명
- 시행시기: '17.4월~
- 행정사항
 - 참여자 중 인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 대해서 위의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자가 지원 대상이 됨에도 안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17.3월 중 인천시로부터 세부시행 계획 및 절차를 받아서 지방관서에 배포할 계획

4.2. 청년희망재단 : 청년면접비용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적극적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 (기간) 청년면접비용 참여 희망일(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 (금액) 1인당 총 60만원
- (지원절차)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금 신청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I 유형
 - 선정기준 : 청년(만 34세 이하)으로서 3단계 진행 중인 자
 - 절차 : (고용센터) 사업내용 안내 → (희망자) 참여신청(서식43. 청년면접비용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고용센터) 시스템 등록 → (희망자) 청년희망재단 회원가입 후 면접비 지원 신청
- II 유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만 34세 이하)으로서 3단계 진입 후 1개월 간 구직활동**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로 확인
 - ** 이력서 제출, 사업장 명전 등 실업급여의 구직활동 인정범위와 동일
 - 절차 : (위탁기관)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 안내 → (희망자) 참여신청(서식43. 청년면접비용 지원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위탁기관) 시스템 등록 → (희망자) 청년희망재단 회원가입 후 면접비 지원 신청

○ 지원항목

- (사진촬영비) 1회당 3만원 범위 내 최대 2회 지원

* 재단과 협약을 맺은 사진촬영 업체를 활용하거나 청년이 개별적으로 사진촬영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급 방식으로 지원

- (정장대여비) 1회당 4만원 범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재단과 협약을 맺은 정장대여업체를 활용하거나 청년이 개별적으로 정장대여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급 방식으로 지원

- (교통비 및 숙박비) 거주 지역 외 지역으로 면접을 보기위해 이동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교통비(실비 지급) 및 숙박비(6만원 한도) 지원

· 교통비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시외버스), 선박 이용시 실비 지급

*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단거리 이동용 교통수단은 미지급

4.3. 향후 협업 계획

○ 현재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에서 청년층 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관서에 세부시행 계획을 안내할 예정

○ 지방관서에서는 관련 청년들이 안내 부족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필요

IV 제4단계 :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1. 사후관리의 개념

- 사후관리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취(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창)업일의 전날, 미취업자의 경우 단계별 서비스종료일

1.2. 사후관리의 의의

- (취업자의 취업지속 관리)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자의 직장적응 및 장기 근속 유도 기제
- (미취업자 취업의지 고취)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2. 사후관리의 제공

- (정기적 관리)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
- (취업지원 재개) 취업자로 종료된 참여자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1단계 IAP 수립전 취업 종료자 포함)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재참여 가능
 - 사업 재참여 희망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지원 재개신청서 제출
 -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재개 신청서(서식 24) 참조
 - * 다만, 재개처리는 전체 취업지원기간(12개월, 최대 15개월) 내에서만 가능

- 재개 후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온·오프라인 종합적 정보제공) 미취업자의 경우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

1. 취업지원 종료

1.1. 취업지원 종료의 의미

- 취업지원 종료란 일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취업지원의 물리적 시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동안 제공되므로 취업지원 시한 완료시 서비스가 종료됨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기산점) 취업지원 종료는 참여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1.2. 취업지원 종료사유

- 다음 2가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
 - i)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재정지원 일자리 포함)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
 - ii)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
 - * 다만, 단일과정의 훈련기간이 9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참여기간 중 취업지원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성실한 기초수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간연장 가능

1.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 취업지원기간 만료자의 경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을 기점으로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종료사유 및 종료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서식 23)를 배부
- 취업지원 종료 통보 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
 - *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안내
- 아울러, 일정한 경우 I 유형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도 안내

□ 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취·창업 일부터 1개월 이내)하도록 사전 조치
- 참여자의 취(창)업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취업 또는 창업일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하여 참여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종료 통보서」를 배부
 - 취(창)업 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참여자 본인을 통해 취(창)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적시하여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종료사실을 통보(통보서 배부)
 - * 이 경우 취(창)업 통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봄

1.4. 취업지원 종료의 효과

□ IAP상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취·창업에 의한 종료시

-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은 물론, 종료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참여횟수별 참여 유예기간 설정

- 기초수급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신청회차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	9월	6월	3월
3회	1년6월	1년	9월	6월
4회 이상	2년	1년6월	1년	9월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기초수급자 외 일반 참여자

직전회차취업성과 신청회차	중도탈락	기간만료 (미취업)	3월미만 취업	3월이상 취업
2회	1년6월	1년	9월	6월
3회	2년	1년6월	1년	9월
4회 이상	2년6월	2년	1년6월	1년
비고 (산정기준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퇴사일(폐업일)	퇴사일(폐업일)

*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에 한하며, 취업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으로 산정, 퇴사일은 사업 참여를 통한 최초 취·창업의 이직일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경우 기간만료자로 간주하며 산정기준일은 취업성공 패키지 종료일

* 폐업일은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확인

□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함

1.5.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 예외적 특례 적용

- 사업 참여기간 중 ①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가 재개신청한 경우로서 ②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사업자등록 폐지)한 상태에서 ③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지원을 지속할 수 있음

* 재개신청은 취업지원기간(사업 참여 기간) 내에서만 가능, 사후관리기간 중 신청 불가

□ 특례 적용요건

- (취업·창업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창업으로 한정함

⇒ 따라서, 다음의 취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① 최장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취업

② 초기상담일 이후 이루어진 최초 취업 이후의 취업*

* 예)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에 이직한 경우의 새로운 취업,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 퇴사하여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아 새로이 취업한 경우의 취업 등

- (퇴사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기간 중 이루어진 최초 취업 이후 1개월 미만에 퇴사한 경우로 한정

⇒ 따라서,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취업 성공수당 지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 (계속적인 취업지원 희망의사 피력)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업 및 퇴사요건 충족을 전제로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업성공패키지 재개신청서(서식 24)」 또는 재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통지서(서식 31)」 제출

□ 특례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 (적용효과) 취업지원 종료의 일반적 효과 미적용 및 취업지원 재개
- (유의사항) 취업으로 인한 취업지원 종료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재개가 가능함을 안내

2. 취업지원 중단

2.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 취업지원 중단이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기간 만료 내지는 참여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이유로 한 취업지원 종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
 - ※ 다만, 재참여 전까지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취업지원 종료와 중단 모두 동일

2.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 (성실한 과정참여 담보기제) 취업성공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참여자의 성실한 사업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참여자의 성실한 과정 참여를 담보하는 기제로서 의미
- (프로그램 재참여 관련 기산점)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취업지원 종료와 같이 당해 참여대상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존재

2.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 ①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자가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②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 ⇒ 정확한 직업적성 및 선호도 파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직업심리검사에 임하는 경우
 - * 일반적인 직업심리검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③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 ⇨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응답 내지 엉뚱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 ⇨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및 훈련, 고용디딤돌 등 2단계 연계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거나, 중도탈락 한 경우

-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1개 과정에서 5일 이상 계속하여 불참한 경우
 - * 직업훈련이 (월·수·금) 격일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훈련일수 (월·수·금·월·수)를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도 해당
 - * 아울러, 훈련개시일 이후 7일째 되는 날까지 등록 가능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불출석일자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훈련 등록일 이후 실제훈련 참여일부터 해당
 - * 단, 질병, 본인입원으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단사유에서 제외함
 - * 단위기간 내 2개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한 자가 1개 이상의 과정에 대해 중단사유 없이 참여한 경우 계속 참여 조치
- ⇨ 기타 각각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탈락사유에 해당되어 중도 탈락자(중도포기자)로 결정된 경우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11조 및 31조의2에 의해 계좌사용이 중지되거나, 훈련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 훈련참여자의 수강포기(1회)를 취업성공패키지 중단사유로 해석한 기존 질의회시 폐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중단사유 관련 질의회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964, '15. 6.30)
 - 다만, 직업 훈련(국기 및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등) 이외의 취업아카데미, 고용 디딤돌 등 2단계 연계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된 경우는 계속 참여 허용

- ⑤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취업역량 및 직업선호도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직업훈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임을 이유로 한 취업알선 거부는 제외

- ⑥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지원 중단 조치 전에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⑨ 직접 일자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의 재정지원 일자리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고용노동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단, 사업주 지원 훈련의 경우 3단계에서 참여 가능

- ⑩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 ⑪ 참여자 본인이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고용센터장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 취업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유 및 중단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중단 통보서(서식25)」를 즉시 배부

* 취업지원 중단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기

- 취업지원 중단 대상이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지

※ 취업지원 중단사실 통지 시, 당해 대상자는 취업지원 중단일로부터 1년간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뢰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

2.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 IAP 상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 참여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서비스 참여 제한 및 중단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종료
 - ※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업종료 전 자치단체에 재심사 의뢰
 - ※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패키지 계좌(자부담 면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유효 기간내에는 일반 계좌(자부담 존재)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
-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중단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I 유형의 경우)
 - ※ 취업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3. 취업지원 유예

3.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 취업지원 유예란 참여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서비스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참여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

📁 조건부수급자의 유예

- (조건제시 유예자의 개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함
-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
- (조건제시기준)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책자 참조
- (자활사업 참여 결과 관리) 고용센터는 분기별(분기 첫월의 5일 이내)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이행여부 통지

3.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 참여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을 유예
 - ①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준용
 - ④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패키지 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⑤ 기타 고용센터장이 일정기간 동안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사업 대상자가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유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유예승인이 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도 유예 조치(가급적 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조치)
 - 자치단체의 유예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단 조치

3.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8개월까지 허용

3.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 취업지원을 유예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서식 26)」를 작성·제출토록 조치
 - * 취업지원 유예는 취업지원 단계에 관계없이 유예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 서면통지(서식 27)
 - * 취업지원 유예 허용 시, 유예기간을 병기하여 통지
- 취업지원 유예 신청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먼저 자치단체에 유예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유예가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예 처리

3.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 IAP 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지
 -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 중지와 함께 유예 기간 동안 당초 수립된 취업활동계획(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중지
-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간만큼 참여기간 연장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지원 재참여 시까지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 ※ 취업지원 유예기간 중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4. 취업지원 이관

※ 민간위탁기관 간 이관에 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 참조

4.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 취업지원 이관이란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을 사유로 새로운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의미

4.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 참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고용센터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가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을 의미

4.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 (이관은 허용, 새로운 시작은 제한) 참여자 본인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이관하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
-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이관 대상임에도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며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 이 경우,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하고,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

4.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자는 거주지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28)를 작성·제출
- 「이관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통보서」 송부

- 『이관 통보서』(서식 29)를 접수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통보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면담일시를 지정·통지 후, 면담 실시
-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된 참여대상자가 이관되는 경우 이관받은 고용센터에서는 동 참여 대상자를 다시 관할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의뢰

4.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의 자격 유지 및 기존 IAP 상의 취업지원 지속
 - * 다만, 2단계 서비스 중 '직업훈련'을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은 당해 센터 관할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한 조정 필요(IAP 변경 조치)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과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관 전 센터에서 진행된 제반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후속절차 진행
 - * 필요한 경우 이관 전 센터 담당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참여대상자의 특성 등을 상세히 파악
- 『직업능력 증진』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이미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내용을 가급적 유지하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변경
 - ※ 이관 전의 훈련과정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IAP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취업활동계획의 주요 취업지원경로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참여가능한 유관 프로그램을 확인·조치
 - 기존 IAP 상 취업지원경로에 따른 유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 취업지원경로 변경·추진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상 취업알선 기간을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5. 행정사항

-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이관과 관련한 처리내용을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
-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IAP 수립시·세부프로그램 참여시 등)에 기준을 안내하고, 중단 사유 해당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 조치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V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1.1. 부정수급의 개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사전단계 포함)한 경우, 또는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1.2. 부정수급 유형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중인 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사업장에 이미 채용이 확정(예정)된 자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훈련수강시 대리출석 또는 허위출석부 작성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조치

2.1. 부정수급액 반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2.3.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반환 청구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반환청구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1항 및 제 31조(보조금의 반환)제 1항에 의한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도 5693판결 등)

2.4. 부정수급 규정 적용

- 동 부정수급 관련 규정은 '16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 부터 적용됨(참여연도 불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지침



I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1. 추진배경

- 정년연장 시행, 세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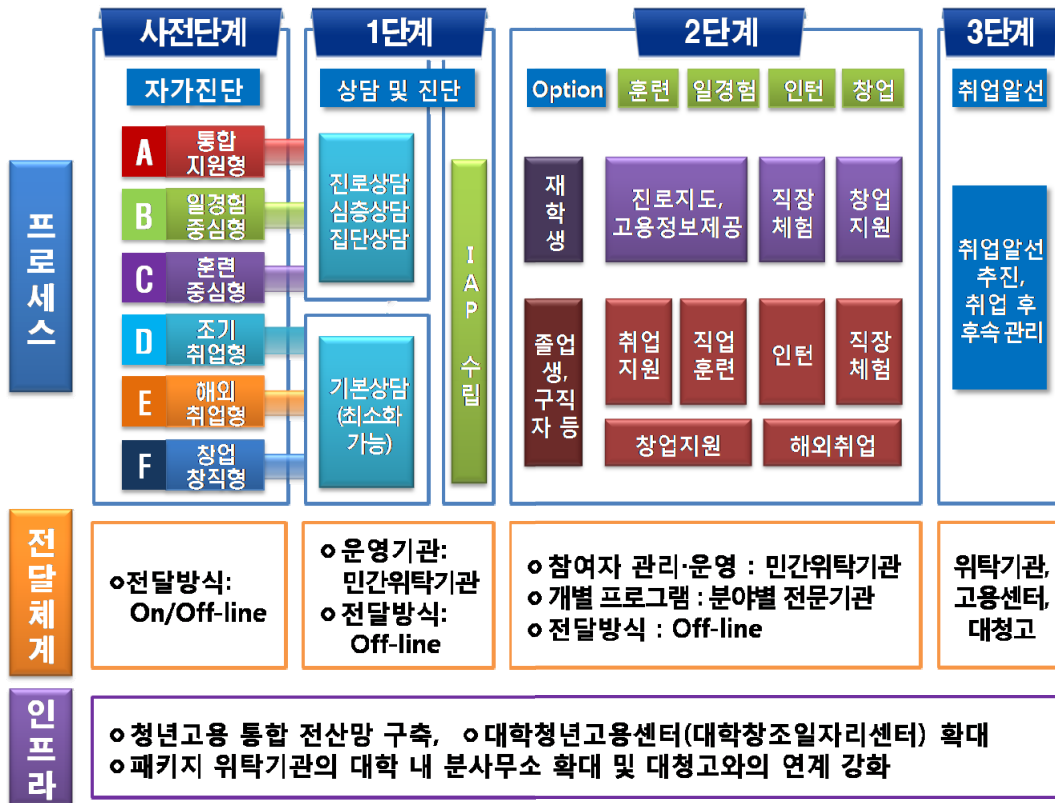
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청년)의 참여대상,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운영방식을 유지 하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의 니즈를 파악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자가진단을 신설
 - 훈련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턴 등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제3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제2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를 준용

3. 참여대상 : '15년 추경 이후 II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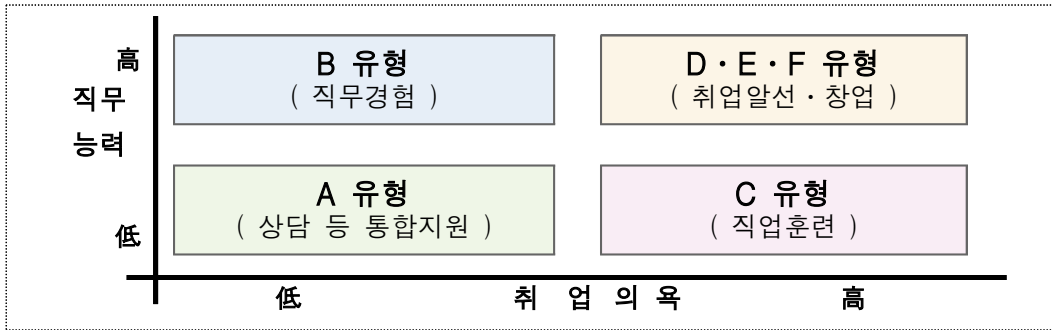
- 만 18세~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고졸이하 비진학, 대졸이상 졸업자), 영세자영업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만15세~34세인 경우)
- 맞춤형 특기병의 경우 육·해·공군 대상

Ⅱ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1〉 사전단계

- Off-line(고용센터, 대청고), 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회원 가입,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 참여
 - 로그인 후 참여자가 스스로 취업지원 유형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실시]
-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참고 1)



- * ① **A유형(통합지원형)**: 1단계(직업의욕고취)→ 2단계(훈련, 일 경험)→ 3단계(집중 취업알선),
- ② **B유형(일경험중심형)**: 1단계→ 2단계(인턴, 일경험)→ 3단계
- ③ **C유형(훈련중심형)**: 1단계→ 2단계(직업훈련)→ 3단계,
- ④ **D유형(조기취업형)**: 1단계 상담 후 바로 3단계로 연계,
- ⑤ **E유형(해외취업형)**: 1단계 상담 후 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지원 기관으로 연계
- ⑥ **F유형(창업창직형)**: 1단계 상담 후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자가진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17년 상반기)을 통해 질문문항,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참여자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①on-line·모바일 접속,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③위탁기관 방문)에 따라 사전단계 프로세스 진행(참여방식에 따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흐름도, 참고 2)

- ①on-line·모바일 접속의 경우 자가진단 실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며,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시 센터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③위탁기관 방문 시 위탁기관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위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송부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또는 대학청년고용센터)로 방문 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또는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는 우선 대학내 위탁기관 분사무소로 연계한 후 사전단계 진행

〈2〉 1단계(상담·진단)

- ‘패키지 위탁기관’에서 프로파일링 결과 및 상담·진단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별 IAP 수립
-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이 모두 높은 D·E·F 유형의 경우 1단계를 상담을 최소화 하고 취업알선, 해외취업지원(인력공단), 창업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 가능
- 취업중심형 프로세스* 운영여부는 참여자 특성을 고려, 상담원이 결정
 - * 1단계 상담 → 1.5단계 알선(2주, 상담원 재량사항) → 2단계 훈련 → 3단계 알선
- 1단계(상담단계)에서도 일경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그 내용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반영
 - *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

〈3〉 2단계(직무능력향상, 일경험, 창업)

- 참여자의 IAP를 고려하여 ‘패키지 전담 위탁기관’에서 ‘2단계 분야별 운영기관’에 훈련¹⁾, 일경험²⁾, 창업지원³⁾을 연계
 - 1)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각 부처별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 2)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
 - 3)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 해외취업형의 경우 K-move 스쿨 등 프로그램과 연계
- 패키지 전담기관과 패키지 2단계 각종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2단계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 * ▲패키지 위탁기관 : 참여자 관리, 패키지 진행 총괄, ▲2단계 분야별 운영기관 : 훈련, 인턴, 일경험, 창업지원 등 분야별 프로그램 진행
-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직업훈련 포함)

〈4〉 3단계(취업알선)

- 패키지 위탁기관, 고용센터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되, 기관에 방문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1회 2만원) 지급

<취업알선 실비 지급 방식>

- * 대상 : 16년 신규참여자(Ⅰ, Ⅱ유형)
- * 지급방법 : 마지막 회차 방문시 참여자 신청에 의거 일괄 지급
- * 지급금액 : 1회 2만원
- * 지급한도 : 최대 3회 6만원(월 1회까지만 인정)

- 취업알선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최대 6개월)
 - * 인문계 및 예체능계열 졸업자 취업의 경우 평가시 가중치 부여
 - * 참여당시 재학생의 경우 취업지원특례로 1단계 초기상담일로 부터 최대 12개월(졸업일자가 포함되는 월의 말일 한도)이 되는 시점까지 3단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과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

〈5〉 사후관리

- 취업자에 대해서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 지속 제공 (패키지 전담 위탁기관, 고용센터, 대청고 등)
-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인정보 매주 제공, 고용센터와 함께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참여 유도

참고 1 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 「청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연구」(15.12. 한고원) 발췌

가. 통합지원형

○ 개념

- 장기구직, 공무원시험준비, 최종학교 중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목표 및 의지가 부족하여 취업 목표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 특징

- 취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식 부재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절차 및 방법, 구체적 취업목표 부재
- 장기구직, 공무원 시험 및 고급 자격증시험 등을 장기간 준비했으나 실패로 인해 직업목표 및 구직의지 부족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취업사관학교: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훈련비용 및 자립수당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HI, 성취, 올라, 청년취업역량 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별 고졸 청년층, 취약청년층(NEET족), 19~34세 청년구직자 등 대상.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생애설계, 비전수립, 역량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종합지원

나. 훈련중심형

○ 개념

- 전공과 다른 분야의 취업 희망, 전직, 능력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가지며 취업에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및 희망 직종 설정완료
- 전공과 다른 취업, 이전 직장과는 다른 분야 취업을 위하여 새로운 직무능력 요구

-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제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대상. 훈련 참여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청년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자 대상. 기업주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취업연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15세 이상 실업자, 고3 비진학자, 대졸 예정자 대상. 국가전략직종 중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

다. 일 경험 중심형

○ 개념

- 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으로, 취업을 위해 희망 직무에 대한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및 희망직종 설정 완료
- 취업을 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등)이 갖추어졌으나 일 경험 및 직무경험 부족
- 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취업실패 경험
- 과거 일 경험이 희망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일 경험을 통한 직무경험 축적 이후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15~34세 미취업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인턴ships을 통해 직무경험 제고 지원. 인턴십 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
-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시행 인턴 사업

라. 조기취업형

○ 개념

- 취업 목표설정, 직무경험, 어학능력 등 취업에 필요한 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

○ 특징

- 취업목표, 직무경험, 직무능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 취업요건 모두 갖추어 곧바로 취업 가능한 상태
-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에 대한 능력 다소 부족
- 구직활동 도움을 통해 곧바로 취업 연계 가능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CAP+ (고용노동부): 15~29세 청년구직자 대상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강화, 기업탐색, 구직서류 준비, 면접준비, 모의면접 등을 통한 청년층 취업지원
- 성취 집단상담 (고용노동부): 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능력 강화,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실습 등을 위한 실제 구직과정 준비 지원

마. 해외취업형

○ 개념

- 해외 장기체류 경험 등을 통해 해외생활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이 낮고, 언어의 애로가 없으며 해외취업 및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층

○ 특징

- 국내취업보다 해외취업을 희망하거나, 해외취업에 거부감 및 두려움 낮음
- 본인 혹은 부모, 형제 자매가 장기간(6개월 이상) 현지체류 경험이 있어 현지생활에 두려움 낮음
- 현지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갖추
- 해외취업을 통한 장기체류 및 이민 고려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월드잡(해외통합정보망): <http://www.worldjob.or.kr>
- K-MOVE 스쿨 (고용노동부): 15~34세 미취업자 대상. 직무교육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 ODA 청년인턴 (외교부): 18세 이상 미취업자 대상. 해외 ODA수행기관의 현지 사무소 인턴십 지원

바. 창업·창직형

○ 개념

- 창업 및 창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

○ 특징

- 창업 및 창직활동 수행경험 보유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경험 보유
- 창업, 창직을 위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 보유
- 창업 및 창직관련 법률 및 제도 등 관련지식 보유
-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

○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 창업인턴제 (중소기업청): 졸업 후 1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을 통해 설립된 기업 인턴십을 통해 창업 노하우, 기업경영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대상. 창업공간, 창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교육, 창업코칭 제공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 후 1년 미만인 자 대상. 실전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가 양성

참고 2 참여방식에 따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흐름도

1 모바일-PC기반 접속 시

1. 워크넷 시스템 접속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클릭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정보 제공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로그인
 - 로그인 단계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3. 자가진단

- 직무능력, 취업의지를 기준으로 취업지원 유형 분류
- 자가진단 후에는 참여자가 본인의 진단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마이 페이지 구축
 - * 자가진단 결과는 패키지 상담사에게 제공하여 상담시 활용

4.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5. 향후 서비스 및 고용센터 방문 안내

- 사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 안내
- 참여자가 지역 및 방문희망 고용센터를 선택 후 방문

6.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방문 시 참여적격여부 판단

- 향후 패키지 절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위탁기관으로 배정

7. 위탁기관에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진행(현재 패키지 II와 동일)

- * 상담시 참여자의 자가진단 결과를 최대한 활용

② 고용센터 직접 방문시

1. 고용센터 방문
2. 고용센터 상담사는 참여자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할 경우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일
 - <Case 1> Off-line 진단지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 * 진단 결과는 상담사가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
 - <Case 2> 센터 내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On-line 자가진단 등을 실시토록 유도
3. 진단결과 등을 참고하고 참여 적격여부 판단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4. 이하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과 동일

③ 위탁기관 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직접 방문시(위탁기관 모집 포함)

1. 위탁기관 방문
2. 위탁기관 상담사는 참여자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할 경우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일
 - <Case 1> Off-line 진단지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 * 진단 결과는 상담사가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
 - <Case 2> 위탁기관 내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워크넷 접속 → 로그인 → On-line 자가진단 등을 실시토록 유도
3. 위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송부
4. 고용센터에서는 참여 적격여부 판단 후 참여요건 충족시 참여자에게 출석 통보 → 향후 유의사항 안내
5. 고용센터에서는 모집한 위탁기관으로 참여자 배정
6. 위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하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II와 동일)

Ⅲ 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

〈1〉 일경험 : 중소기업탐방

- 위탁기관이 워크넷 등을 통해 신청 및 프로그램(5일 이하 자율적 기획) 진행
 - 위탁사업비는 위탁기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
 - * 중소기업탐방 위탁비 : 1일 1인당 평균 13.5만원(2일 이하 10만원, 3일 이상 17만원)

〈2〉 일경험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인턴제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턴 운영기관에 참여자를 연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
 - 단, 이 경우 기업지원금이 500만원(2년 간 채용 유지시)임을 고지
 -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업지원금이 600만원임
- 인턴운영기관으로 연계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사업비는 지급하지 않음

〈3〉 해외취업 : K-Move 스쿨, 해외인턴, 해외취업알선

- 산업인력공단 World Job 사이트를 통해 신청·연계
 - * Work-net과 World-Job의 연계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위탁기관 담당자가 소정의 신청양식에 의거 인력공단 본부에 수기로 연계(시스템 연계시 별도 공지 예정)
-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2단계 K-move 스쿨, 해외인턴, 3단계 해외취업알선으로 구분하여 인정
- 취업처리는 참여자가 해외구인처에 취업한 후 출국 시 인정
- 위탁사업비는 패키지과 해외취업을 동일 기관이 위탁받을 경우와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받았을 때를 구분하여 지급
 - * 패키지과 해외취업 위탁기관 별 사업비 지급방안

구 분	사업비 지급방식
동일 기관이 위탁	패키지 기본금만 지급하고 패키지 성과금은 미지급 해외취업에 따른 위탁기관사업비는 지급
서로 다른 기관이 위탁	각 사업에 따라 책정된 위탁사업비 지급

* <참고> 해외취업 위탁기관 지원금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 계약금액의 70%는 선지급 30%는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

- (참여자 지원) 해외취업 참여자가 K-move 스쿨의 훈련을 받을 경우 2단계 훈련 참여수당(월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4〉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등

- 2단계 훈련 연계시 우선 국기훈련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디딤돌*등으로 유도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연계시 훈련·인턴 기간은 패키지 2단계로 간주

- 상담원이 각종 훈련과정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청년고용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훈련제도·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 (훈련참여수당)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국기훈련, 내일배움카드, 일반고특화과정, 등의 훈련참여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

* 현재는 실업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국기훈련 30만원, 내일배움카드 28.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과다한 금액이라는 지적

* 다만, 교육부 산업정보고 위탁생의 경우 11.6만원을 한도로 지급

〈5〉 고용디딤돌

- 2단계 운영기간의 특례를 인정('〈7〉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 참고)하는 한편,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홍보 및 취·창업 등 지원

*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소 운영 중

〈6〉 창업 :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등

- **(현황)** 참여자 희망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 **(다양화 방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도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창업기업으로 취업알선 등 추진
 - *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소 운영 중

〈7〉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만 34세 이하의 I, II 유형 모두 적용)

- 2단계 기간 중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추가 프로그램 참여 시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초과 되는 경우,
 -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2단계 기간 특례 운영)
 - 2단계 기간 특례운영이 가능한 마지막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중기청 및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등) 등 2단계 참여가능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
- * 예시: 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5개월 훈련을 받은 참여자가 고용디딤돌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마지막 프로그램 ‘고용디딤돌’은 2단계 최대 기간(8개월)을 초과해서 참여 가능
- ②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6개월 훈련 후 3단계 진입 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2단계로 전환하여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인턴기간(3개월) 중 최초 2개월은 2단계 훈련기간으로, 남은 1개월은 2단계 기간 특례 적용으로 참여 가능
- ③ 다만,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경과된 이후 추가로 국기훈련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중단됨에 유의
- ④ 2단계 8개월 경과 후 인턴참여 시, 인턴 참여기간(3개월)은 3단계 인정 가능.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취업으로 마감 처리할 수 있음.

4부

민간위탁 매뉴얼



I 민간위탁사업 기본운영 지침

1. 2017년 민간위탁사업 개관

【 기본 방 향 】

- ◆ 패키지 I 은 고용센터 전담, 패키지 II는 전량 민간위탁 원칙
- ◆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경쟁 및 성과지향형 위탁기관 운영
- ◆ 전담상담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의 질 제고

1.1. 민간위탁 추진 규모 및 유형

- 2017년 패키지 사업 규모는 31.6만명('16년 추경 포함 34만명)으로, 민간위탁 사업 규모는 19.5만명(청년 16만명, 중장년층 3.5만명)
- 패키지 I 유형은 전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패키지 II유형은 전량 민간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1.2. 위탁기관 추가 선정 규모

- '16년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위탁물량, 지청별 위탁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지청별로 선정 규모를 결정 (상세내용 '17년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문 참고)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선정기관 수는 자체 공고
 - ** 지방 고용노동지청별로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주사무소로만 신청 가능

1.3. 협업형 위탁사업자 선정

- (기본방향) '17년도 사업에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는 협업형 위탁사업자로 다음의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광역형: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 체결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벗어나 시·도 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 일반형(기초단체 또는 대학 등과 협업형): 기초자치단체 또는 대학·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야 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 * 약정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분임계약관)와 체결하되, 분사무소별 참여자 배정, 위탁비 지급,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분사무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장

1.4. 분사무소 개소

- (원칙) 분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7년 사업공모시 설치계획을 제출한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거쳐 분사무소 설치 완료(~'17.6.30까지)
- * '16.12.31.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위탁기관에서 설치한 분사무소의 경우, '17년에도 설치유지를 원하면 사업계획서 제출시 분사무소명, 설치 위치 등을 제출한 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 '17년 신규 분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7년도 신규 위탁기관 공모시 분사무소 설치 계획(설치장소 및 개수 등)을 제출하고, 제출된 분사무소에 한해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거친 후, 관련 인적·물적요건 등을 '17.6.30.까지 설치 완료하고 '17.7.1일부터 서비스 개시 (분사무소 설치 세부절차는 '16년과 동일)
- 구체적인 설치요건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아래*와 같이 구비한 후 직업 안정법에 따라 (사업소 수 등) 변경 신고
 - * ▲시설요건: 직업상담 내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
▲인적요건: 업무전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되 분사무소간, 주사무소·분사무소간 겸직 불가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직업안정법상의 사업소 요건* 구비
 - * ▲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다만 대표자가 전담자 자격 구비시 겸직 가능)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
 - ③ 대학 또는 자치단체 건물* 내 분사무소도 업무전담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대학 내 분사무소는 전용면적 15㎡이상의 사무실 확보**
(다만, 자치단체 건물내 분사무소의 경우 직업상담 내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만 확보하면 설치 가능)

* 「고용복지+센터」, 「조선업 희망센터」는 자치단체 건물 내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업무전담자 1인 이상 배치 필수)

** '16.12.31. 기준, 이미 운영 중인 분사무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17.6.30)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과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관련 시설요건 적용 제외(다만 인적요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④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매우 적어서 위탁기관에서 분사무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 관련 사항

- 분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먼저 설치요청을 하는 경우는 인근의 다른 주·분사무소와 전담자 겸직 가능

* 시설요건은 분사무소의 일반적 시설요건 준수

⑤ '17년 신규 분사무소 설치는 신규기관 공모시 관련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17.6.30까지 설치 완료

1.5. 위탁사업 실시 지역 및 장소 변경

○ 일반형의 경우에는 약정체결 당사자인 고용센터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고용센터가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 분사무소는 '17년도 사업추진계획서 상 분사무소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 예정지역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약정체결 당사자인 고용센터가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내에서 분사무소 설치 및 소재지 변경 가능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예전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소재지 변경을 통보해야 하고, 시설요건 등을 완비한 후 이를 확인(현장실사 등)받아야 함

○ 광역형의 경우에는 약정체결 당사자인 고용센터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고용센터가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 분사무소는 '17년도 사업추진계획서 상 분사무소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 예정지역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약정체결 당사자인 고용센터가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을 벗어나 주사무소가 속한 광역 자치단체(광역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 설치 가능. 다만,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난 후 그 분사무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예전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소재지 변경을 통보해야 하고, 시설요건 등을 완비한 후 이를 확인(현장실사 등)받아야 함
- '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탈락한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내에 신규 분사무소 설치 및 분사무소 이전설치 불가(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지청 소재 주사무소의 분사무소)

1.6.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자체 채용 시 위탁비(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단가는 타 참여자와 동일하게 지급(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14년 당시 희망리본 위탁기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체결이 없이도 광역형 위탁사업자로 인정하던 사항은 '17년 사업에 참여한 해당기관까지 유효하고, '18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대학·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야만 광역형 또는 일반형으로 사업참여 가능
- '16년 이전 참여자 중 '17년으로 이월된 경우에는 종전 위탁기관이 종료시까지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은 기 체결한 사후약정서 참고)

※ 약정서(안): 서식 33 참조

1.7. 이월된 위탁자에 대한 지침 적용

- '16년 이전 참여자 중 위탁기관에 의뢰되어 이월된 경우에는 초기상담일이 진행된 시점의 지침을 적용

2. 위탁대상자 및 위탁수수료

2.1. 참여자 모집

- 민간위탁기관의 자체 모집 가능

2.2. 참여자 배정 원칙 및 절차

- 위탁기관 자체 모집자: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송부 →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 (고용센터)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 통보 → (고용센터)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모집한 민간위탁기관에 배정 →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모집자 :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통보,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민간위탁기관 선택 안내 및 배정 →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교·대학(원)생 최종학년 재학생 등 청년이면서 I 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유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40)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모집 참여자의 경우, 위탁기관 배정 전 참여자에게 위탁기관 위치, 전년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등 위탁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충분히 안내한 후, 참여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지원
 - 다만, 상담사 1인당 참여자수 한도는 반드시 준수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타 위탁기관으로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조치를 허용
 - (IAP 수립전) 기존 위탁기관 기본금 미지급, 참여자가 이관된 기관에 기본금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내) 기존 위탁기관이 수령한 기본금 중 20만원을 반환받아 이관기관에 지급

2.3. 고용센터 역할

- 민간위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고용센터의 Gateway 기능 강화
 - ① 오리엔테이션 : 자격요건 확인,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위탁기관 배정
 - * 내일배움카드제는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 필요성, 훈련시 취업가능성 제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 결정
 - ② 수요자 선택형 민간위탁 : 수요자가 민간위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성과 및 정보* 제공 → 성과 중심형 민간위탁
 - * 기관 위치, 전년도 참여자 수 및 취업률, '16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 ③ 훈련심사 :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역량평가 결과, IAP 내용 검토 및 훈련의 필요성 등 적절성 검토

□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교 3학년에 대한 훈련상담

-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 3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도록 훈련기관 등에 안내 필요
 - ※ 고 3에 대해서는 국기훈련 훈련장려금 추가금을 월 20만원, 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일원화('16. 3. 1.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 비진학 고3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사실상 고3이 되는 시점
 - 고 2 수료 후 다음해 1. 1. 이후(방학 중)인 경우에도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지침」(부록 15) 참조

2.4.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 설정

- 서비스 내용은 민간위탁기관의 자율 존중하되,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은 설정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필수서비스가 아닌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기간 및 주기·횟수 준수 필요
 - ※ 취업성공패 I 유형(고용센터 및 '16년도 추경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필수서비스 제공이 원칙

- 단계별 서비스 기간 원칙: 1단계(3~4주) → 1.5단계*(2~4주) → 2단계(8개월 내 6월간) → 3단계(3개월) → 사후관리(3개월)

*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단계별 서비스 기간 관련 예외적인 규정은 제2부 및 제3부 관련 내용 참고

2.5. 위탁사업비

- 위탁수수료는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분류·지급

〈 위탁비 지급 단가 〉

(단위: 만원)

구분	계	기본금 (최대)	취업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140	40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120	40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100	40	20	40	60	100

* 취업인센티브는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

□ 기본금

- (지급액)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원
 - 1단계 서비스를 위탁대상자에게 제공하고 IAP 수립했을 때 1회차 기본금 30만원을, 초기 상담일 이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도 IAP를 수립했던 당해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시점에서 2회차 기본금 나머지 10만원 지급
 - 다만, IAP 수립 후 2개월(월력기준) 이내에 중도 탈락하거나 약정해지로 인해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조치
 -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 제외) 운영시, 기본금 10만원 추가 지급
- ※ 위탁사업 참여요건 미충족 사실이 기본금 지급 후(IAP수립 직후로써 미지급 포함) 확인된 경우에도 중도탈락에 준하여 처리

□ 취업 인센티브

- 참여자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시 신고된 월평균 보수** 및 초기상담 이후 조기취업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

- 다만, 아래 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❶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 ❷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❸ 취업 후 3개월 경과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 ❶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❷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자리, ❹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제한이 되지 않는 일자리 취업 등

(단위: 만원)

구분	취업인센티브			
	~140	~180	~230	230~
6월이내 취업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20	40	60	100

📁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급 대상

【 자체 채용 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 위탁기관의 자체 채용 판단기준

- 자체 채용이란 합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민간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참여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말함
 - ① 당해 민간위탁업체
 - ② 당해 민간위탁업체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③ 당해 민간 위탁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④ 당해 민간위탁업체 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체

□ 자체 채용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민간위탁기관 자체 채용 시에는 취업 인센티브는 부지급함이 원칙
- 다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인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를 자체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인센티브 지급

□ 창업자에 대한 취업인센티브 지급 방식 관련

- 창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판단
 - 자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 사업소득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i) 주업종코드(㉡)가 IAP 및 상담과정에서 참여자가 하고자 했던 분야의 창업
 - ii)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으로 간주하고, 사업자신고일을 취업시점으로 간주하여 취업인센티브 지급

2.6. 위탁수수료 신청

□ 기본금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에 대해 IAP를 수립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서식 35)」 및 「위탁수수료 지급 총괄표(서식 36)」를 작성, 고용센터에 제출

- 위탁인원 중 IAP 수립 이후 중도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일의 다음 달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서식 37)」 및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서식 38)」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 월의 전(前)월에 발생한 중도탈락자는 모두 총괄표에 기재(IAP 수립 2월 초과자도 기재)
 - * IAP 수립 직후 중도탈락이 발생되어 기본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금 지급 신청과 동시에 기본금 반환 대상 신고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서식 35)」가 제출되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한국고용정보원)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DB상 취업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갖춘 참여자 정보를 고용센터와 수탁기관에 제공
 - * 고용보험 DB상 개인별 보수총액, 소정근로시간, 자격취득일, 계약 종료일 등
- (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매월 20일까지 고용센터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식 35)
- (고용센터) 수탁기관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2.7. 위탁수수료 반환 및 회수

- (부정·부당수급) 위탁수수료를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위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한하여 지급된 위탁수수료 전액 반환 조치
- (중도탈락) 기본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시까지 위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기관에 지급한 것이므로 IAP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참여자가 중도탈락하는 경우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약정해지) 약정해지로 인해 IAP 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 되는 경우에는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 반환금은 별도로 전산망에 입력
- 약정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 실시

2.8.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원칙적으로 위탁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 수당, 위탁수수료 등은 일반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자체 채용시에도 기본금과 취업인센티브를 지급
- 자체 채용한 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영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음

Ⅱ 위탁업무 처리절차

1. 위탁절차 개요

- (고용센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를 수탁기관에 의뢰
- (위탁기관) 고용센터로부터 전산으로 의뢰받은 경우 위탁대상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유선 통화 조치
 - 참여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위탁사실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1주일 이내) 내 초기 상담일자를 협의·결정
 - 위탁대상자와의 초기 상담일시가 결정된 경우, 전산으로 초기상담일을 기재하여 출석통지 발송(1일전 SMS 발송 병행)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전적으로 위탁기관 책임 하에 운용·관리
-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은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 조치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 (취업지원) 위탁배정이 완료되면 1차 상담 실시 등 자율적인 취업지원 실시
 -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 * 위탁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상자와의 유선연락 등을 통해 1차 상담일을 협의·결정 조치(1차 상담 불참 시, 2차 초기상담일 기준 5일 내 2차 통보 → 2차 통보 불응 시, 취업지원 중단/신청 취소)

- (전산입력)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은 3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자료 수정은 3일 이내 완료
 - 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 시 전산에 입력된 시기 및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3.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은 위탁기관 담당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위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관리는 위탁기관의 책임하에 실시
- ※ 「'16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상담 관련지침」(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104호, 16. 1. 11.) 숙지 후 안내(부록 15 참조)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 참여수당이나 취미형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을 줄이고 취업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불요불급한 훈련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

구분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별 지원				
	취업률 70% 이상	취업률 70~55%이상	취업률 55~45%이상	취업률 44~35%이상	취업률 35%미만
일반실업자	95%~90%		70%	50%	20%
Ⅱ 유형			80%	70%	50%
I 유형	100%			90%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 (선 취업지원) 위탁기관은 훈련 추천 이전에 참여자에게 2회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필수 제공
- (훈련추천) 위탁기관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상담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용센터에 추천서 송부
 - * 훈련상담 내용,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한 센터 방문예정 일시 등
- (훈련 상담일시 통보) 추천을 받은 고용센터 상담원은 참여자와 유선으로 상담 일시를 협의하여 확정
- (훈련상담 실시) 고용센터 상담원은 참여자와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기록
 - * HRD-Net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을 검색, 대상자에게 적정한 훈련과정 제시 (필요 시 훈련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 파악·안내)
- (계좌 카드 발급) 고용센터 상담원은 훈련상담결과를 토대로 '실업자 등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계좌카드 발급
 - * 훈련 참여 주의사항 등을 참여자에게 필히 고지
- (훈련참여 과정 관리) 위탁기관 전담자는 계좌카드 발급 이후 위탁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관리를 실시하고, 관리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입력
 - * 위탁대상자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현황에도 관리 상황 내용 포함

참고

Ⅱ 유형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는 1단계 종료 후 2~4주간에 걸쳐 집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실시 후 2단계 진행(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가능)

□ 목적

- (조기취업 유도) 취업의지나 역량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취업을 유도
-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제한) 취미형 훈련,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 예방
- (적극적 취업활동 의무 부과) 참여자가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구인정보 제공, 훈련탐색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의무 부과

□ 운영 원칙

- IAP 수립 후 2~4주간 최소 2번의 방문상담(유선상담 가능)을 통한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
 - ※ 취업알선 2번, 취업상담 2번, 취업알선 1번과 취업상담 1번 가능
 - 취업상담에는 구인정보 제공, 훈련탐색, 구직활동 등 포함
 - * 구인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및 상담내역을 워크넷에 기록
 - 훈련탐색 및 구직활동시 훈련탐색표, 구직활동내역서 제출 의무 부과
 - ※ 훈련과정탐색표(서식 14 활용), 구직활동내역서(서식 15 활용)
 - 창업하려는 자는 취업알선에 갈음하여 자영업활동내역서 제출 의무 부과(자영업 활동내역서 서식 16 활용)
- 1단계 완료 후 최장 4주(28일) 동안 진행
- 1단계 이후 바로 Ⅲ단계(취업알선)로 진입한 자가 다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2~4주간 2번의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 후 이동 가능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역량평가 실시
 - 초기상담일에 전담자가 직접 취업역량평가 실시
 - 취업역량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A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우대 제공
 - ▲ B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우대 제공
 - ▲ C·D 등급 : 가급적 직업훈련 참여는 제한하고 조기 재취업 지원

5. 참여자 수당 지급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급 관련 신청서는 위탁기관이 1차 확인하고 일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각종 수당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자의 계좌로 지급 조치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직접지급**해야 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지급 금지

6. 취업지원 종료·이관·중단 등

6.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지원상황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되, 취업지원 **중단은 고용센터에서 조치**
 - ※ '17년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 편 준용

6.2.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 위탁대상자별 지원현황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해당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즉시 조치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등 통지
 - 위탁대상자 중 취업지원 종료 및 유예 사유 해당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종료(유예)를 통보(서식 23, 26)
 - * 취(창)업자 경우 1개월 내 퇴사(폐업) 시, 등 사실 통보(서식 31)를 전제로 패키지 사업 참여를 재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재개신청서(서식 24) 접수 시 5일 이내 취업지원 재개를 위한 상담 실시 ☞ 유예자에게도 준용(유예기간 종료일 전 재개 가능)
-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 입력
 - 취업지원 종료(유예) 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시스템에 조치 사항을 입력
 - * 취업지원 유예의 경우, 대상자 명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함께 제출

6.3. 취업지원 이관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위탁기관에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 허용
 - (IAP 수립전) 기존 위탁기관 기본금 미지급, 참여자가 이관된 기관에 기본금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내) 기존 위탁기관이 수령한 기본금 중 20만원을 반환받아 이관기관에 지급
 - (IAP 수립 후 2개월 경과 후) 이관 기관에 기본금은 미지급하나 참여자 취업시 취업인센티브(나은 일자리 인센티브, 근속인센티브) 지급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가 타 기관 이관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28)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로부터 이관 조치 통보를 받는대로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관을 받는 기관은 위탁대상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담일정 등 협의

- (고용센터) 이관 요청서 접수 시 요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종전 위탁 기관, 신규로 이관받을 기관 및 위탁대상자(서식 29)에게 이관을 통보
 - (참여자가 배정당시 위탁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소지 이전 시 한정적으로 이관 허용
 - (고용센터의 배정 등 참여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실한 경우 등 위탁기관 변경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관사유를 넓게 인정
-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및 이관 통보서(서식 28, 29)

6.4. 취업지원 중단

-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서식 34)」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전산시스템에 조치사항을 입력
- ※ 중단사유 및 기준은 '17년 업무매뉴얼 2부 「V.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편 내용 준용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청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서식 25)
 - 아울러,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당일 중으로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7.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7.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위탁기관이 전담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로서 당해 기관에 전담자에게 OJT를 실시할 경험있는 전담자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OJT 실시
- 그 밖의 교육·훈련 필요사항은 본부, 컨설팅 담당기관 등에서 실시

7.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위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 ⇒ 위탁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담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해 (지)청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강화

7.3. 위탁사업 추진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고용센터는 반기 1회 이상 위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 특히, 상반기 중에는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실적 부진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

8.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8.1. 기본원칙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I유형 및 II유형)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적립금 관리 등에 대한 운영 지원
 - * '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가능(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권한 부여)
 -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을 희망하지 않는 '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및 기타 사후관리 약정체결 기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은 '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이 담당

- 고용센터의 I 유형 참여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 적립금 관리 등에 대한 운영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 및 「2017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8.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청년내일참여공제 지원 대상

○ (참여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신청일자 기준

- 다만, 만 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지원대상 요건)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성패 I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취성패 II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취성패 참여자의 경우 청년공제 참여 가능기한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한(취성패 프로그램 이수후 12개월 이내 정규직 취업시) 준용

- '17년부터 청년공제 채용 목표 중 일부가 취성패 이수자로 배정됨에 따라 취성패 참여자가 인턴제에 재참여는 불가

*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대학 재학중 취성패에 참여하여 마지막 학기 내 인턴제에 참여하거나 최종단계 이수 후 12개월이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등)에는 인턴제 참여 가능

- * 취성패 2단계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취성패가 중단된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인턴제 참여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공제참여 대상에서 제외
 - ①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또는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 ②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병역특례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⑥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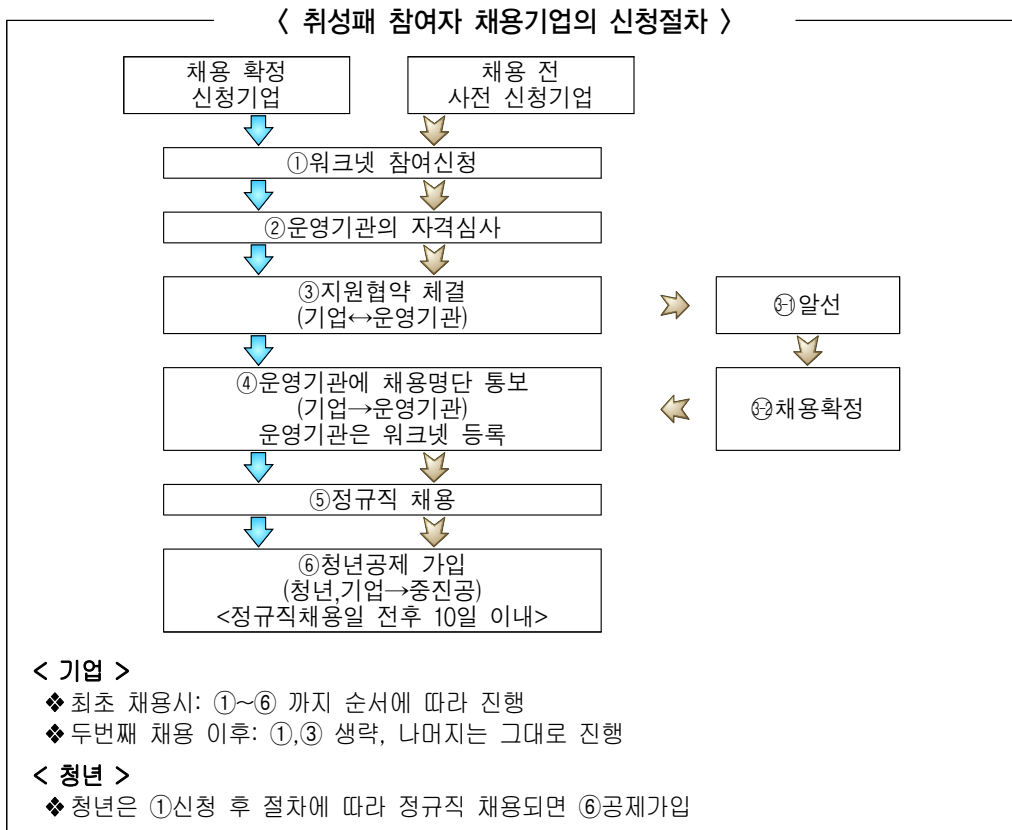
8.3. 청년내일참여공제 참여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전후 10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8.4. 청년내일참여공제 자격심사 및 안내

-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 하여야 한다.
 - * 인턴제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담당, 취성패 참여자는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담당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 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5. 청년내일참여공제 참여기업의 신청절차



Ⅲ 민간위탁기관 관리

1. 위탁기관(사업자) 기본 요건

1.1. 자격요건

- (참여대상 기관) 공모신청일 현재 위탁사업 희망 고용센터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 1)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
 - 2)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관련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① '1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약정해지 조치(실적부진 약정해지 제외)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② '16.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약정해지 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되어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③ '16년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16년 E등급 및 최소성과미달 기관(사업자), '15년 및 '16년 연속 E 등급기관(사업자), '15년 E등급 및 '16년 최소성과기준 미달 기관(사업자)

3)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다만, '16.12.31.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사업자) 중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7년도 사업에 참여 가능

1.2. 시설요건

○ 주 사무소 설치 관련

-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이 가능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
면 적	6.6평방미터 이상 (약 2평 이상)	16.5평방미터 이상 (약 5평 이상)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
구조 및 시설	· 오픈되지 않은 공간 · 독립된 별도 공간	· 단체 프로그램 운용 위한 기본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 시설 등	· 오픈된 공간 가능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구비
비 고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분사무소 설치 관련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아래*와 같이 구비한 후 직업 안정법에 따라 (사업소 수 등) 변경 신고

* ▲시설요건: 직업상담 내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
▲인적요건: 업무전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되 분사무소간, 주사무소·분사무소간 겸직 불가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직업안정법상의 사업소 요건* 구비

* ▲전용면적 20㎡이상 사무실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다만 대표자가 전담자 자격 구비시 겸직 가능)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

- ③ 대학 또는 자치단체 건물* 내 분사무소도 업무전담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대학 내 분사무소는 전용면적 15㎡이상의 사무실 확보**

* 「고용복지+센터」, 「조선업 희망센터」는 자치단체 건물 내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업무전담자 1인 이상 배치 필수)

** '16.12.31. 기준, 이미 운영 중인 분사무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17.6.30) 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과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관련 시설요건 적용 제외(다만 인적요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 ④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매우 적어서 위탁기관에서 분사무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 관련 사항

- 분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먼저 설치요청을 하는 경우는 인근의 다른 주·분사무소와 전담자 겸직 가능

* 시설요건은 분사무소의 일반적 시설요건 준수

- ⑤ '17년 신규 분사무소 설치에 신규기관 공모시 관련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17.6.30까지 설치 완료

- ⑥ '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 내 신규 분사무소 설치 및 동 기관의 타 지역 소재 분사무소 이전 불가

- * 예: A기관이 '17년도 위탁기관 공모시 B고용노동지청에 공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A기관은 B고용노동지청에 신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기존 분사무소는 운영 가능), A기관이 B고용노동지청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B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음

1.3. 인적요건

- 민간위탁사업자는 업무 전담자 1명(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업무지원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의 업무담당자 지정·운용(다만, 분사무소는 업무전담자 1인 이상 배치)

□ 업무전담자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업무전담자가 존재할 것
 - * 업무전담자라 함은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 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 업무전담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를 병행 불가능. 다만,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직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직 가능
- ① **(자격 및 경력)** 전담자는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직업상담 및 취업 지도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또는 직업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업무지원자 경력*** 6개월 이상인자
 -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 자격증으로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없음) 수행 경력
 - *** 업무지원자 경력은 1일 8시간 전일제 근무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정

② **(전담자 수)** 전담상담사 1인당 참여자 수가 1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자를 지정·운영

- * 2016년 참여자만 관리하는 경우 1인당 120명(사후관리인원 제외)
- * 2016년 1유형 참여자와 2017년 (II유형)참여자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2016년 1유형 참여자는 1.5명으로 계산

③ **(고용형태)** 전담상담사는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 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업무지원자

- 업무지원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
- 업무지원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음
- 업무지원자는 자격증, 경력, 채용인원 등에 제한이 없으나, 당해 기관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요함

1.4. 프로그램 요건

- 위탁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구직의욕 증진 등을 위한 개별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1.5.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

- 분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7년 사업공모시 설치계획을 제출한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거쳐 분사무소 설치 완료
 - 설치계획서에는 분사무소 설치(예정) 장소(위치), 참여자 모집방안,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선 계획 등을 포함
- 고용센터는 관할지역 내 위탁기관 운영상황, 위탁기관이 제출한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 통보
- 기존에 설치된 분사무소 관련

- '16.12.31.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위탁기관에서 설치한 분사무소의 경우, '17년에도 설치유지를 원하면 사업계획서 제출시 분사무소명, 설치 위치 등을 제출한 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17년 신규 분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7년도 신규 위탁기관 공모시 분사무소 설치계획(설치장소 및 개수 등)을 제출하고, 제출된 분사무소에 한해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거친 후, 관련 인적·물적요건 등을 완비한 후 사업 개시('17.6.30 이전 요건 완비, '17.7.1 이전 사업개시)

2.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2.1. 추진상황 모니터링

- (참여자 관리) 위탁기관(사업자)은 참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제공
 - 본부 및 고용센터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상황 및 적정성 등 확인
 - * 위반시 조치 기준은 <부록 12> 참조(위탁약정서 등 위반시 조치기준) 참조
 - 고용센터는 성과관리시스템(<http://espmns.work.go.kr/>)을 통해 위탁기관별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통보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등 징구 지양

2.2. 위탁약정 해지

- 위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 ①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위탁기관(사업자)의 사업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관할 지역내 타 위탁기관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이 떨어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개선계획서,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
- ④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 ⑤ 기타 위탁약정서의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탁기관 점검 조치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참여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정직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이상 확인된 경우
- ⑦ 위탁수수료의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⑧ 단계별 서비스 제공주기 및 횟수 미이행으로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⑨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위탁약정 해지 시,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던 참여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인근 위탁기관에 이관하여 취업지원 계속 제공
 - 관할 고용센터 내에 다른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위탁기관 중 인근 기관으로 이관

3.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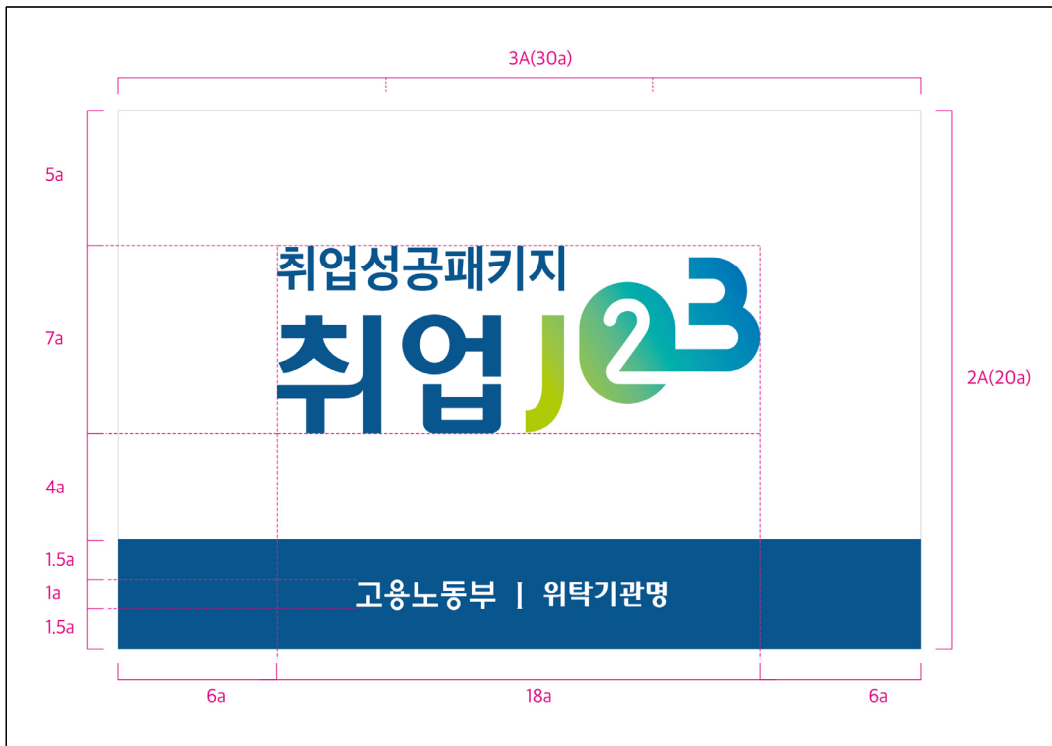
-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및 로고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하고, 특히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간판으로 제작하여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설치, 기본금 사용 가능
- 간판설치 기준
 - BI 적용 사인 디자인 A(출입문 표찰): 주 출입문에 필수 설치
 - BI 적용 사인 디자인 B·C(건물 외부 간판): 건물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게 설치하되 B와 C를 같이 설치하거나 B 또는 C 중 택일

- 취업성공패키지 BI 디자인(색깔 및 비례 준수, 재질은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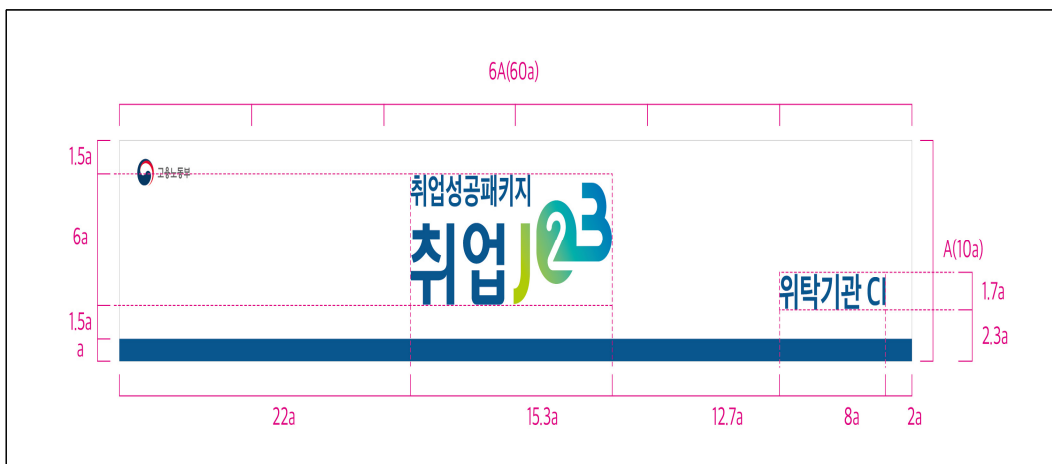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BI _ 기본형(가로조합)				
				
취업성공패키지 BI _ 기본형(세로조합)				
				
취업성공패키지 BI _ 컬러 가이드라인				
 Blue 그레데이션 없음 Green 위차: 100% Green 위차: 50% Blue 위차: 0% Main Colors <table border="0"> <tr> <td>  Blue Pantone 2935 C CMYK C90 M50 K20 RGB R0 G94 B165 </td> <td>  Blue Pantone 3005 U CMYK C100 M35 K9 RGB R0 G115 B183 </td> <td>  Green Pantone 3255 U CMYK C75 Y40 RGB R0 G177 B170 </td> <td>  Green Pantone 381 U CMYK C40 Y100 RGB R175 G202 B11 </td> </tr> </table>	 Blue Pantone 2935 C CMYK C90 M50 K20 RGB R0 G94 B165	 Blue Pantone 3005 U CMYK C100 M35 K9 RGB R0 G115 B183	 Green Pantone 3255 U CMYK C75 Y40 RGB R0 G177 B170	 Green Pantone 381 U CMYK C40 Y100 RGB R175 G202 B11
 Blue Pantone 2935 C CMYK C90 M50 K20 RGB R0 G94 B165	 Blue Pantone 3005 U CMYK C100 M35 K9 RGB R0 G115 B183	 Green Pantone 3255 U CMYK C75 Y40 RGB R0 G177 B170	 Green Pantone 381 U CMYK C40 Y100 RGB R175 G202 B11	

취업성공패키지 BI 적용 사인 디자인	
사인 A _ 비례	
사인A	적용예시
사인 B _ 비례	
사인B	적용예시
사인 C _ 비례	
사인C	적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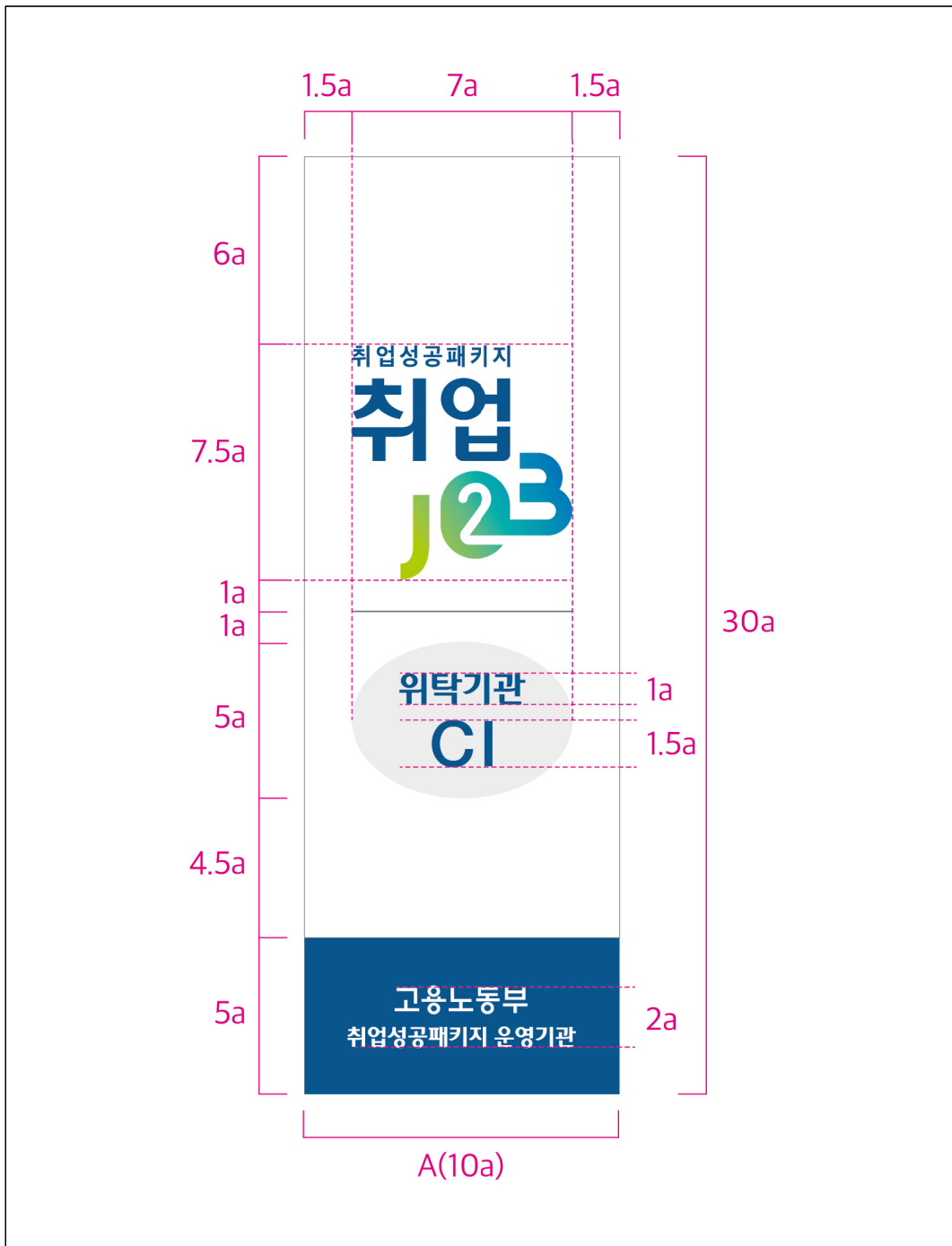
<사인 A 비례>



<사인 B 비례>



<사인 C 비례>



IV 민간위탁사업 지도 · 점검

1. 추진 개요

- 민간위탁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질 높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에서는 동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 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됨
 - 필수서비스를 폐지하고 위탁기관이 참여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되, 아래와 같이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에 대한 최소 요건 설정 후 엄격하게 모니터링
- 단계별 서비스 기간 : 1단계(3~4주) → 1.5(2~4주)* → 2단계(8개월 내 6월간) → 3단계(3개월)** → 사후관리(3개월)
 - * 상담사와 참여자의 협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단계 생략 가능
 - ** 청년층의 경우,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청년층으로서 취업역량평가 점수가 58점(C등급)이상인 자는 1단계를 1주 이상으로 단축운영 가능하되,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취업역량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참여자와 협의 후 위탁기관 담당자의 판단하에 1단계 기간 단축(1주 2회이상 대면상담) 가능
 -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 자격,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의지, 역량과 관계없이 역량평가 점수가 낮은 상황을 고려
- 단계별 서비스 주기(횟수)
 - 1단계 : 최소 3회 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다만 1주 이상 단축운영시 2회이상 대면상담 서비스 제공
 - 1.5단계 운영시 : 최소 2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단계 : 월 1회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3단계 : 월 1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간 : 월 1회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2. 점검 추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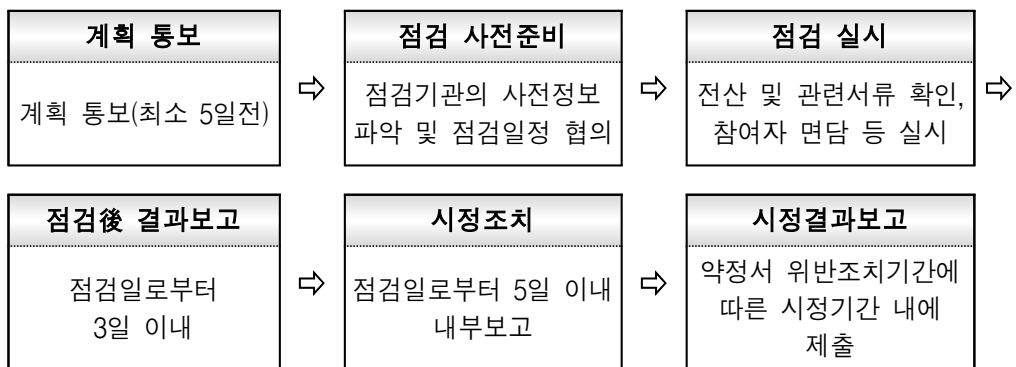
2.1. 점검 주기

- 정기 지도점검은 반기별 1회(년 2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점검 실시
 - 각 고용센터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2. 점검방법

- 점검은 위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사전계획 수립 후 실시하되 2인 1조로 실시
- 점검은 위탁대상자의 일부(3% 내외 무작위 표본 추출)를 선정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되
 - 전산시스템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르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확대 점검 실시

2.3. 점검 절차(정기점검)



3. 중점 점검 사항

- 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제공 주기(횟수) 준수 여부
 - 전산상 입력된 서비스의 허위 기록 여부 등 확인
 - 집단상담프로그램 적정 운영 여부
 - 출결관리 적정 여부, 프로그램 운영요건 준수여부 등 확인
 - 민간위탁사업자 요건 확인
 - 자격요건, 인적요건, 시설요건, 프로그램 요건 등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서식 32>의 민간위탁기관 점검표 활용

4. 점검결과 조치 및 기준

- (조치기준)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부록 12)에 따라 조치하되, 점검 결과는 전산 입력(본부 보고 생략)
-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에 대한 조치 기준
 - i) 점검결과 부정수급액 및 부당인출액이 200만원 이상 이면 즉시 약정해지
 - ii) 점검결과 부정수급액 및 부당인출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 ①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액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
 - ②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 및 부당인출액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경고
 - iii)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탁수수료를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인출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수수료 전액 반환 조치(i) 또는 (ii)와 병행 조치

〈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환수 대상 부정수급·부당인출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거나 인출한 경우 부정수급·부당인출에 해당

구분	환수 대상 부정수급·부당인출
개별 상담 관련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산에 기재 ▪ 1단계 대면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면상담한 것으로 허위 기재 ▪ 상담자격이 없는 업무지원자 등이 담당자 휴가, 교육 중 대체 상담 실시
집단 상담 관련	▪ 집단상담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수수료 수령 ▪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석부 등 허위 작성 ▪ 집단상담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수료기준인 80% 미만으로 참여한 사람을 수료한 것으로 관리 ▪ 실시기관에서 집단상담을 운영하면서 계획된 운영시간보다 단축 운영 (수료기준 80%와 관계 없음) ▪ 전담자가 아닌 업무지원자 등 비전문가가 집단상담 실시
기타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V

민간위탁사업 평가

※ '17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계획은 별도 지침 시달 ('17.2월 중)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편 집	고용서비스정책관	장 신 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권 진 호
	기술서기관	박 종 일
	사무관	장 중 서
	사무관	양 도 식
	주무관	강 현 경
	주무관	박 주 원

■ 전 화 (044)202-7379

■ 인 쇄 문중기획 (044)858-8580